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969-000009-01

2022-0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연구

성남시의료원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CONTENTS

00 요약문

0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목적 17
3. 연구내용 및 방법 18

02 국내외 재활의료 제도 및 정책 현황

1.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제도 21
2.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정책 35
3. 국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67

03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 및 이용현황

1. 재활의료 자원현황 83
2. 재활의료 이용현황 105

CONTENTS

04 **성남시의료원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1. 원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125
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대상 현황 141
3. 원내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158

05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1. 성남권 재활의료 현황 종합결과 171
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177
3.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 선행과제 195
4. 결론 및 제언 199

06 **참고문헌**

07 **부록**

CONTENTS

표목차

표 1. 성남권 보건-의료-복지영역 재활 관련 자원 ···· 4
표 2.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현황 (2021) ····· 15
표 3. 제7장 이학요법료의 항목별 시행자 및 상대가치점수 ····· 26
표 4.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항목 ····· 27
표 5.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권장기능 (3단계) ····· 30
표 6.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신형익 등, 2022) · 33
표 7.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신명희, 2017) ····· 33
표 8.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경과 ····· 35
표 9.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 40
표 10. 재활의료기관 수가체계 단계별 추진계획 ····· 42
표 11. 재활의료기관 수가종류 및 적용기준 ····· 43
표 12.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 (KRIC) ····· 44
표 13. 재활의료기관 사업대상 재활손상대분류 (KRIC) ····· 45
표 14. 통합재활기능평가 40개 항목 ····· 46
표 15.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 47
표 16. 2021년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 48
표 17. 전체 중증도별 퇴원 또는 재입원 환자수 및 비율 ····· 51
표 18. 2020년 재활의료기관의 재택복귀 및 재입원율 (26개소) ····· 51
표 19.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기관별 역할 (예시) ····· 56
표 2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대상자 분류 기준 58

CONTENTS

표목차

표 2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현황 ····· 62
표 22. 보건소 CBR 사업실적 결과 (2018년) ····· 64
표 23. 경상남도 보건소 CBR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66
표 24. 일본 및 한국 보건의료체계 현황 비교 ····· 67
표 25. 일본 병상기능 구분 ····· 68
표 26.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단계별 제공형태 ····· 69
표 27.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적용질환군 및 입원 한도기간 ····· 71
표 28.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 수가 구분 ····· 72
표 29. 캐나다 및 한국 보건의료체계 현황 비교 ····· 73
표 30. 캐나다 시기별 재활서비스 제공 구분 ····· 74
표 31. 캐나다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17개 질환군 ··· 76
표 32.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효과 ····· 79
표 33.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2) ····· 84
표 34. 성남권 재활관련 시범사업 등 지정의료기관 현황 (2022) ····· 86
표 35. 성남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2022) ····· 89
표 36. 성남권 재활의료인력 현황 (2022) ····· 90
표 37.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당 평균 치료인력 (2022) ····· 91

CONTENTS

표목차

표 38. CBR 대상자 군별 서비스 분류 ····· 92
표 39. 성남권 CBR 실시기관 수, 등록장애인 수 및 CBR 사업 목표 대상자 수 (2021) ····· 93
표 4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 및 기능 ·· 96
표 4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2021) ····· 97
표 42. 노인복지시설 구분 및 종류 ····· 98
표 43.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현황 (2021) ··· 99
표 44.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 100
표 45.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 100
표 46.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 101
표 47.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 101
표 48.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 102
표 4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 102
표 5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 103
표 5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 104
표 52. 재활의료 수가 구분 ····· 105
표 53. 국내 재활의료 청구 현황 (2021) ····· 107
표 54. 재활의료 이용환자수 (2017-2021) ····· 108
표 55. 재활의료 총사용량 (2017-2021) ····· 109
표 56. 재활의료 청구진료금액 (2017-2021) ····· 110
표 57. 재활치료 수가코드 목록 ····· 113
표 58. 인구당 재활환자수 (2020) ····· 116
표 59. 재활환자수 (추정) (2020) ····· 116

CONTENTS

표목차

표 60. 재활환자 중 전문재활치료환자 비율 (2020)117
표 61. 재활입원 의료기관 종별 분포 (2020) ····· 118
표 62. 재활 퇴원환자 재택복귀율 (2020) ····· 119
표 63. 전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상병코드 ····· 120
표 64. 변수 정의 ····· 125
표 65. 치료구분별 처방코드 목록 ····· 126
표 66. 환자특성별 재활치료환자수 (`20-`22) ····· 128
표 67. 환자특성별 재활치료건수 (`20-`22) ····· 129
표 68. 환자특성별 환자당 재활치료건수 (`20-`22) 129
표 69. 치료실별 재활환자수 (`20-`22) ····· 130
표 70. 치료실별 재활치료건수 (`20-`22) ····· 131
표 71. 치료실별 환자당 평균 치료건수 (`20-`22) ····· 132
표 72. 치료실별 환자 대기현황 (2022.11월 4째 주 기준) ····· 133
표 73.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20~`22) ·· 134
표 74. 치료실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20~`22) ····· 135
표 75. 보험유형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20~`22) ····· 137
표 76. 처방코드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상위10위 현황 (`20-`22) ····· 138
표 77. 변수 정의 ····· 142
표 78. 사업대상자 기본 특성 ····· 144

CONTENTS

표목차

표 79. 성별 현황 ····· 145
표 80. 연령대별 현황 ····· 145
표 81. 의료보장 유형별 현황 ····· 146
표 82. 월 가구소득 수준별 현황 ····· 146
표 83. 보험유형별 월가구소득수준별 현황 ····· 147
표 84. 가구형태별 현황 ····· 148
표 85. 입원 현황 ····· 149
표 86. 기저질환 현황 ····· 150
표 87. 건강생활습관 현황 ····· 150
표 88. 퇴원 시 처방약 현황 ····· 151
표 89. 환자 활동상태 현황 ····· 151
표 90. 돌봄제공자 현황 ····· 152
표 91. 장애등록 현황 ····· 153
표 92. 장기요양보험 등록 현황 ····· 154
표 93. 퇴원 후 거주지 현황 ····· 155
표 94.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 ····· 155
표 95.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현황 ····· 156
표 96. 기관별 케어플랜 연계 현황 ····· 157
표 97.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내용 ····· 159
표 98. 의견조사 응답자 특성 ····· 160
표 99. 의견조사 응답결과_(1)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161
표 100. 의견조사 응답결과_(2) 재활의료 중요성에 관한 사항 (계속) ····· 163

CONTENTS

표목차

표 101. 의견조사 응답결과_(2) 재활의료 중요성에 관한 사항 ····· 164
표 102. 의견조사 응답결과_(3)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계속) ····· 165
표 103. 의견조사 응답결과_(3)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 166
표 104. 의견조사 응답결과_(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계속) ····· 167
표 105. 의견조사 응답결과_(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연계경험 있는 경우) (계속) ···· 167
표 106. 의견조사 응답결과_(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 168
표 107. 지역자원의 구분 및 유형 ····· 178
표 108.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체계에서 재활 관련 권고사항 ····· 179
표 109. 성남권 보건-의료-복지영역 재활 관련 자원 ····· 181
표 110.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제시방향 ····· 184
표 111.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개요 ····· 185
표 112.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다직종·다학제 팀 역할 ····· 187
표 113.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진료지원협력센터 역할 ····· 188

CONTENTS

표목차

표 114.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역할 (회복기 단계) · 190
표 115.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역할 (유지기 단계) · 191
표 116. 보건소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역할 192
표 117. 취약계층 돌봄·요양 제공기관 및 재가서비스 ····· 193
표 118. 재활분야 병상수급 분석결과 ····· 195
표 119. 보건복지부 재활 관련 시범사업 정책 ····· 196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성남권 재활의료 연계 및 협력기관 유형 …… 6
그림 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 7
그림 3.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 …… 9
그림 4.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 13
그림 5.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지출 (2006 ~ 2015) …… 14
그림 6. 연구수행체계 …… 18
그림 7.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모형 …… 22
그림 8. 급성기 또는 만성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단계 …… 22
그림 9.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공수준 …… 23
그림 10. 재활 관련 행위급여 목록 …… 24
그림 11. 현행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 31
그림 12. 장애 발생 후 시기에 따른 재활의료 개입 32
그림 13.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호승희 등, 2017) 34
그림 14.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운영체계 …… 38
그림 15.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항목 …… 39
그림 16. 재활의료기관 2단계 수가체계 …… 42
그림 17.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분류모형 45
그림 18. 재활의료기관 재활환자 점유율 현황 …… 49
그림 19. 재활의료기관 청구 의료비 현황 …… 50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0. CBR 매트릭스 보건소 활용 ····· 53
그림 21. 보건소 CBR 사업 담당인력 ····· 56
그림 22.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흐름도 ····· 60
그림 2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홍보안내 리플렛 ····· 61
그림 2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의료기관 연계 절차 ····· 61
그림 25.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70
그림 26. 일본 퇴원 후 재활치료체계 ····· 72
그림 27.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치료체계 · 77
그림 28.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치료 현황 79
그림 29.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요양종별 비율 (%) ····· 83
그림 30.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서비스 체계도 ···· 88
그림 31. 성남권 서비스 유형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현황 (2022) (개소) ····· 88
그림 3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 94
그림 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현황 ····· 95
그림 34. 재활의료 청구현황 중 전문재활 구성비 (2021) ····· 107
그림 35. 재활의료 이용환자수 (2017-2021) ····· 108
그림 36. 재활의료 총사용량 (2017-2021) ····· 109
그림 37. 재활의료 청구금액 (2017-2021) ····· 110
그림 38. 수가코드별 환자수 상위 10순위 환자구성비 (일반재활) ····· 111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39. 수가코드별 환자수 상위 10순위 환자구성비 (전문재활) ····· 112
그림 40. 재활치료환자 특성 (전체, '20-'22) ····· 128
그림 41. 치료실별 재활환자 구성비 ('20-'22) ····· 130
그림 42. 치료실별 재활치료건수 구성비 ('20-'22) ····· 131
그림 43. 치료실별 환자당 평균 치료건수 ('20-'22) ····· 132
그림 44. 원내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 134
그림 45. 원내 치료실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 135
그림 46. 원내 보험종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 137
그림 47. 연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상위 10위 현황 (입원) ····· 139
그림 48. 연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상위 10위 현황 (외래) ····· 139
그림 49. 연도별 재활환자수 ····· 140
그림 50. 연도별 재활치료건수 ····· 140
그림 51. 연도별 환자당 평균 재활치료건수 ····· 140
그림 5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념도 ····· 141
그림 53. 보험유형별 월가구소득수준별 현황 (%) · 147
그림 54. 활동수준별 퇴원 후 돌봄제공자 현황 (%)152
그림 55. 등록장애인 중 장애구분별 현황 (명) ····· 153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56. 연령대별 장기요양보험 등록 현황 (%) … 154
그림 57. 의료보장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 (%) …… 156
그림 58. 재활형 의료기관 기준 충족 현황 (개소) · 171
그림 59. 재활의료 청구현황 중 전문재활 구성비 (2021) …… 173
그림 60. 원내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 174
그림 61. 성남권 재활의료 연계 및 협력기관 유형 183
그림 6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 194
그림 63.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 …… 198

/00/

요 약 문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현재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진전과 함께 질병패턴이 만성질환 및 신체기능 저하 증상을 가진 환자의 증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에 따라 재활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팽창하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재활서비스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발병률 및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뇌졸중은 질환 특성상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반신마비·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장애가 지속될 수 있는 질병으로 중증도에 따라 집중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여 환자를 조기에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현재는 재활치료의 공급부족과 시스템 정비 부족으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충분한 입원 치료기간을 갖지 못하고 타병원으로 옮겨다니는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시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과 퇴원 후에 지역사회 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활한 자원연계 시스템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총 45개소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45개소 중 성남권에 위치한 재활의료기관은 3개소에 불과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적절한 재활의료체계를 재활치료-회복기 재활의료-사회복귀라는 연속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라고 했을 때, 이를 연계하는 업무는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나 기관이 속한 지역의 특징,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등에 따라 수행과정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1] 이에 따라 성남권의 재활의료 지역역량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보다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및 협력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1) 김태연·이강식.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에서의 의료사회복지업무 현황 : 사례연구. 재활복지 2021;25(2):57-78.

02 주요 연구결과

가 성남권 보건-의료-복지영역 재활 관련 자원

□ 지역단위에서 재활연계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급성치료 단계, 기능회복 단계, 사회복귀 단계별로 시군구의 보건-의료-복지자원을 탐색하여 연속·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지역사회 기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표 1. 성남권 보건-의료-복지영역 재활 관련 자원

영역	기관유형	개소	기관내용
의료 영역	1) 성남권 재활 관련 의료기관※	160	•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입원 및 외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환경, 지역 보건의료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의·논의체계 구축 ※ (성남권 재활 관련 의료기관) 한 기관이 여러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집계되었음
	- 종합병원, 병·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29	
	- 재활의료기관	3	
	- 재활인증의료기관	6	
	- 장애인건강주치의병원	22	
	2) 지역의사회(성남,광주,용인,하남)	4	
보건 영역	1)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역 장애인의 재활 등 서비스 제공, 복합사례환자 유형의 통합관리, 지역사회 연계 업무 관련 교육, 기관 간 협력활동 지원 등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 및 지역연계 서비스 제공, 6가지 영역별 세부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상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사업 및 신체활동 지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운영	1	
	2) 성남권 CBR 사업수행 보건소	8	
	-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1	
	-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1	
	-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1	
	- 하남시 보건소	1	
	-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1	
	-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1	
	-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1	
	- 광주시 보건소	1	
	3) 성남권 건강생활지원센터	1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경기도 광주)	1	

영역	기관유형	개소	기관내용
복지 영역	1) 성남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15	•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장애인 등록 및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창구 • 돌봄 및 요양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 시설입소 지원 및 제공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지역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노인 일상생활 지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및 심신장애의 경우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활동 지원 • 장기요양수급자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성남시 수정구	17	
	- 성남시 중원구	11	
	- 성남시 분당구	22	
	- 하남시	14	
	- 용인시 기흥구	15	
	- 용인시 처인구	12	
	- 용인시 수지구	11	
	- 광주시	13	
	2) 성남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9	
	- 장애인복지관	6	
	- 주간보호시설	25	
	- 생활이동지원센터	4	
	- 수어통역센터	4	
	3) 성남권 노인복지생활시설	2,169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15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7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1,695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42	

나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기관 유형

□ 성남권 내 재활의료 자원 및 이용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과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및 원내 제공자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토대로 재활환자가 보건-의료-복지 영역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기관의 유형을 목록화함.

그림 1. 성남권 재활의료 연계 및 협력기관 유형

다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체계의 방향은 시범사업 참여 및 기관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시기별 성남권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재활 관련 다직종·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자의 치료, 연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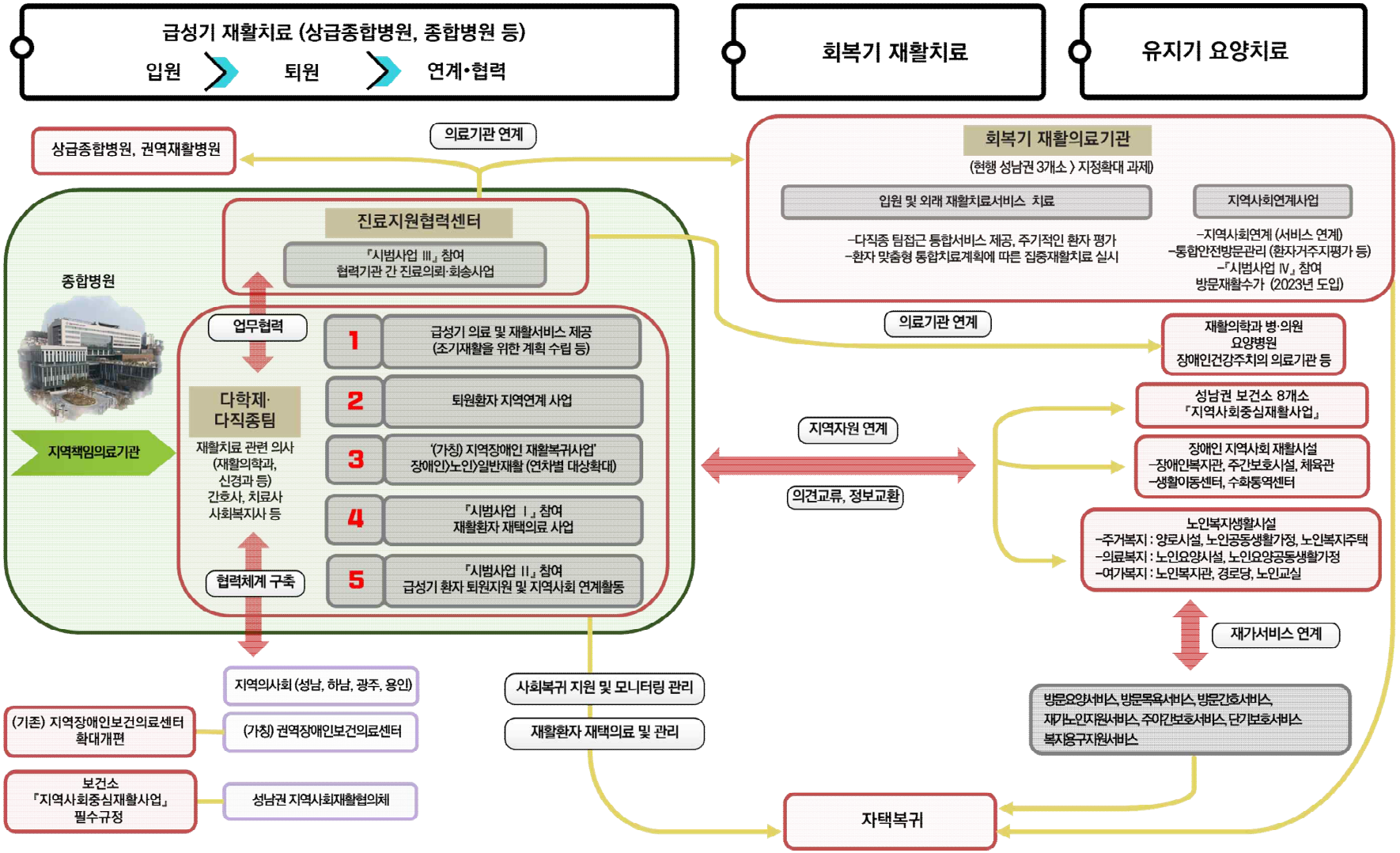

그림 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라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 선행과제

□ 재활의료 자원의 연계 및 협력모형을 지역 내 원활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선행과제가 있음.

□ 첫 째, 조기재활-집중재활-지속재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남권 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및 연계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성남권 내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3개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추가지정하여 퇴원 후 집중 재활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재활관련 사업으로 이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권역단위의 네트워크 체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 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재활환자에 대한 포괄적 평가 및 팀 접근 치료계획 수립을 통해 전반적인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촉진수단으로 재활 관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 재활 관련 다직종·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집중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셋 째,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협의체 참여를 통해 기관 간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야 함.

- 성남권 내 재활환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 수집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단체들간 정보공유, 연계 모니터링 루트를 점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적 확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성남권 재활의료기관 추가 지정 및 운영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진료권 내 추가 지정·운영 (※ 전체 45개 재활의료기관 중 성남권은 3개소 (분당구 2개소, 용인시 1개소))
	연계 중심기관의 인프라 확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을 지역 시군구 단위로 확충 (※현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단위로 기능변경)	재활서비스 연계 중심기관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확충하여 운영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가칭) 지역장애인 재활복귀사업' (기존 지·장·보 역할)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기존 지·장·보 역할은 기능을 권역단위로 상향조정
질적 개선	재활의료 관련 시범사업의 적극 참여	시범사업 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범사업 Ⅱ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시범사업 Ⅲ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시범사업 Ⅳ 『방문재활수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시행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 후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협조를 통해 사업참여 여부 결정 -재택의료 시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지역사회연계활동 : 국공립병원 등 대상 -진료의뢰·회송사업 : 의뢰·회송하는 협력 요양기관 -방문재활수가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해당
	다직종·다학제 팀접근 통합관리 체계로 개선	다직종·다학제 재활인력 팀 구성	다직종·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환자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
환자·기관 정보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활 관련 연구 활성화 및 지원	중진료권 내 재활환자 추계 및 서비스 수요도 측정	중진료권 내 재활청구 현황 등을 통한 일반 및 전문재활치료 환자수 추계, 인구기반 조사, 행정자료 등 건강상태 기반으로 재활서비스 필요도 추정 연구 활성화 및 지원
	재활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진료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자원의 분포 (지역별 제공자원의 편차 확인), 시군구별 연계 가능한 공공 및 민간자원 정보 등록 및 모니터링, 장애인등록통계·주민등록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자료원을 통한 DB 구축
	지역사회재활의료협의체 활성화 (보건소 CBR 사업)	보건소 단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수)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지침서 20쪽)	지역 공공 및 민간단체들과의 정보공유, 자원관리, 연계 모니터링 등

그림 3.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

/01/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0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현재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진전과 함께 질병패턴이 만성질환 및 신체기능 저하 증상을 가진 환자의 증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등록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등록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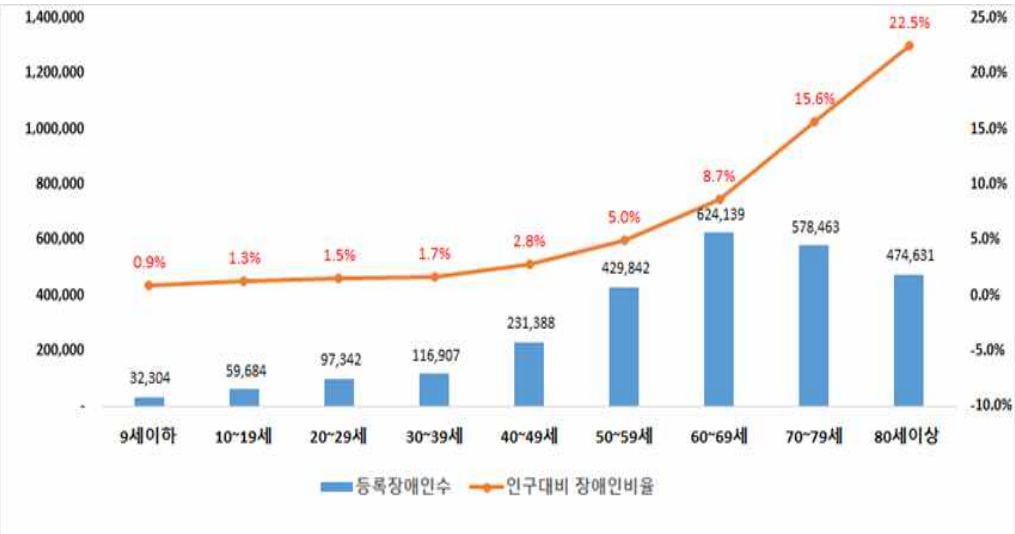

그림 4.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등록장애인 통계 발표』. 2022.4.19.

□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에 따라 재활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팽창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재활서비스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2)]

- 최근 선행연구[3)]에 따르면 치료적 재활서비스 지출은 10년간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증가함. 비록 치료적 재활서비스 의료비 비중은 전체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4.9%로 그 수요가 매우 증가함.
- 이는 전문물리치료 영역 중에서도 특정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정현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제보고서. 2019.
3) 신지영, 유명순.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분석. 보건사회연구 2022;42(1):106-124.

연 도	연간 의료비 총액		치료적 재활서비스 전체	
	억 원	%	억 원	%
2006	4,529	100.0	112	2.5
2007	5,310	100.0	134	2.5
2008	5,881	100.0	144	2.5
2009	6,699	100.0	163	2.4
2010	7,356	100.0	179	2.4
2011	7,873	100.0	193	2.4
2012	8,305	100.0	205	2.5
2013	8,869	100.0	217	2.4
2014	9,592	100.0	240	2.5
2015	10,289	100.0	252	2.5
연평균 증가율	9.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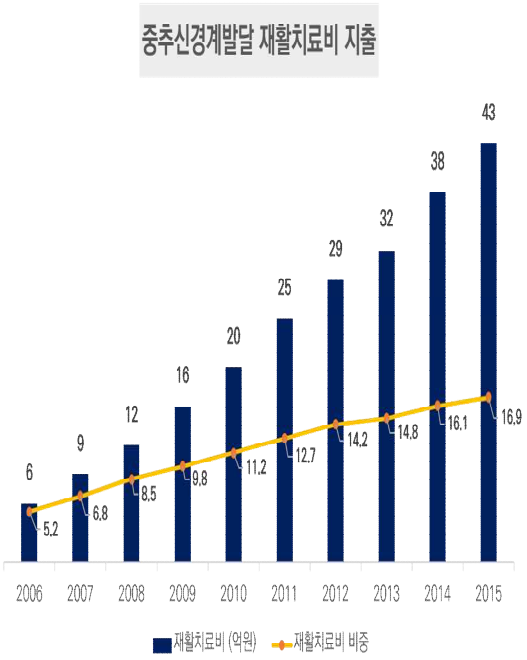

그림 5.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지출 (2006 ~ 2015)

자료출처 : 신지영, 유명순.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분석. 보건사회연구 2022;42(1):106-124.[4)]

□ 또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의 발병률 및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뇌졸중은 질환 특성상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반신마비·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장애가 지속될 수 있는 질병임.

□ 질환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 손상의 경우 대개 수술, 처치 후 6개월 이내, 최대 1년까지를 회복시기로 보고 이 시기 집중재활을 제대로 할 경우 손상 이전 기능의 80~90%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하고 이 회복시기의 재활치료는 삶의 질과 진료비 지출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됨.[5)]

□ 즉, 급성기 환자의 치료 후 중증도에 따라 집중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여 환자를 조기에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6)] 그러나 실제로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4) ① 치료적 재활서비스 :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물리치료 영역과 의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비물리치료 영역을 합한 서비스
②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비 비중 : 전체 치료적 재활서비스 지출 중 차지하는 구성비를 의미함.
5) 신명희.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와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2017;11(5):7-11.
6) 김태연·이강식.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에서의 의료사회복지업무 현황 : 사례연구. 재활복지 2021;25(2):57-78.

결과, 현재 재활치료를 제공받는 비율은 12.7%에 그쳤으며, 재활치료의 충분 수준도 54.8점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남.

□ 특히 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관리는 환자 및 가족의 일차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퇴원 후 가정으로 돌아온 대부분의 환자들이 합병증 및 재발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어 퇴원 후 후유증 관리 및 환자가 이용하는 재활치료 자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연계하기 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7)]

표 2.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현황 (2021)

구 분		사 례 수		현재 재활치료 여부		받고 있는 재활치료 충분정도
				예	아니오	
		명	%	%	%	100점 평균(점)
전 체		1,002	100.0	12.7	87.3	54.8
환자 연령	40대 이하	100	10.0	14.0	86.0	57.1
	50대	170	17.0	15.3	84.7	52.6
	60대	267	26.6	13.1	86.9	52.1
	70대	328	32.7	11.9	88.1	58.8
	80대 이상	137	13.7	9.5	90.5	51.5

자료출처 : 백남종. 권역거점병원-지역병원-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ICT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 지속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편익 분석. 질병관리청 학술연구 용역보고서. 2021. 재구성.

□ 이렇게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의 공급부족과 시스템 정비 부족으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충분한 입원 치료기간을 갖지 못하고 타병원으로 옮겨다니는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시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퇴원 후에 지역사회 내 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연계시스템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

□ 현행 재활의료를 들여다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병원에서 수술 및 처치 후 상태가 어느정도 안정되기까지 재활치료를 시행 후 대부분 집으로 퇴원하는 양

7) 김원석·정윤선·백남종 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재활치료 현황 및 사회복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기초조사 - 중간분석 주요결과 -. 주간 건강과 질병 2020;13(42):3009-3026.

상임.[8] 실제로 급성기 이후 전문재활시설이 부족하여 환자의 기능상태에 맞는 입원 및 외래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고,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도 부족함.[9]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총 45개소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45개소 중 성남권에 위치한 재활의료기관은 3개소[10]에 불과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하며 고령화와 같은 인구환경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역자원 접근이 취약한 대상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적절한 재활의료체계를 재활치료-회복기재활의료-사회복귀라는 연속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라고 했을 때, 이를 연계하는 업무는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나 기관이 속한 지역의 특징,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등에 따라 수행과정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11] 이에 따라 성남권의 재활의료 지역역량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보다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및 협력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8) 신명희.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와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2017;11(5):7-11.
9) 이호승·정민예.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이용현황과 재활서비스 개선방안.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21;29(2):1-14.
10)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성남 분당구), 분당베스트병원 (성남 분당구), 린병원 (용인 수지구)
11) 김태연·이강식.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에서의 의료사회복지업무 현황 : 사례연구. 재활복지 2021;25(2):57-78.

0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의료 관련 지역자원 및 연계현황을 파악하여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인하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성남권 재활의료 관련 지역자원을 파악함.
-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재활치료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연계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수행함.
- 셋째, 성남권 재활 관련 지역자원을 연결한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을 제안함.

03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재활의료 관련 제도·정책 및 선행연구 고찰

-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수가체계 등에 대한 제도를 검토함.
-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중심 재활의료 정책을 검토함.
- 국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현황을 파악함.

□ 재활의료 관련 지역자원 공급현황 및 의료이용 확인

-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기관, 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확인함.
- 재활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서비스 수요를 확인함.

□ 재활의료서비스 연계현황 파악 및 의견조사 수행

- 성남시의료원 진료부서 협조를 통해 재활의료서비스 치료현황 분석을 수행함.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식' 검토를 통해 성남권 지역자원 연계 현황을 조사함.
- 원내 재활의료 제공자(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인프라 확충 및 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제안

- 성남권 재활 관련 지역자원과 전달체계를 반영한 성남권 지역자원 연계방안과 기관 간 협력모형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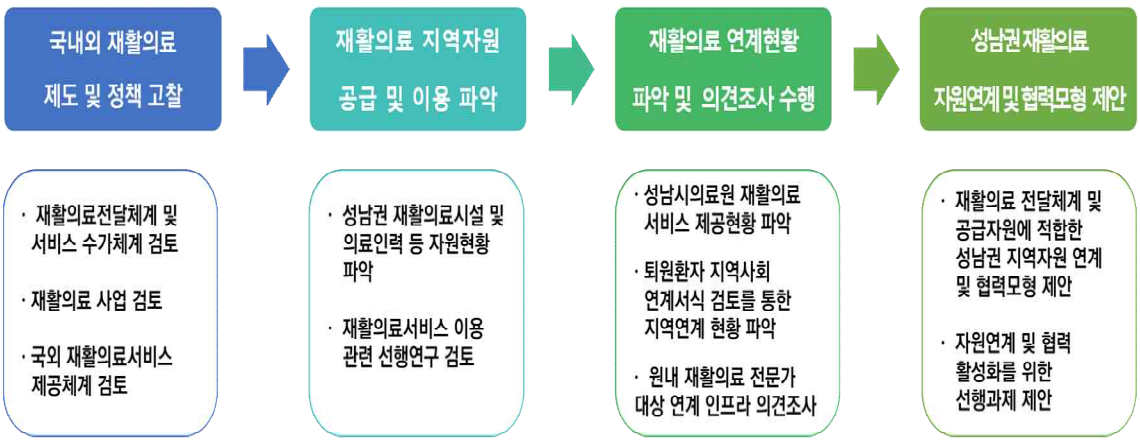

그림 6. 연구수행체계

/02/

국내외 재활의료 제도 및 정책 현황

1.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제도
2.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정책
3. 국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01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제도

가 재활의료 정의 및 모형

□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정의한 재활(Rehabilita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12)]

> 재활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건강상태를 가진 개인의 신체기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중재 활동"이라고 정의함.
> *"a set of interventions designed to optimize functioning and reduce disability in individuals with health conditions in interaction with their environment"*

□ 다시 말해 재활이란 어린이, 성인 또는 노인이 일상생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 직장, 취미생활이나 가족들의 케어와 같은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능력, 시각 및 청각능력, 식사 및 이동활동 등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통증을 해결하고 신체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둠.[13)]

□ 이처럼 재활의료의 중심 개념인 장애로부터의 회복은 WHO에서 2001년 발표한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서 정의하는 건강과 장애에 대한 개념과 일치함.[14)]

- ICF 모델에서는 그림과 같이 신체구조과 기능(예: 하반신 마비상태, 배뇨기능 저하, 삼킴기능 저하 등), 활동(예: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등), 참여(예: 쇼핑하기, 외출하기, 약챙겨먹기, 교육, 직업활동 등)를 포괄한 총체적인 상태가 인간의 기능상태(Functioning)로 규정함.
- 이러한 기능상태는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소(예: 가족의 지지, 경제적 여건, 의료제도 등) 및 개인적 요소(예: 종교, 신념 등)와 지속적으로 연관되면서 변화한다는 것이 ICF 모델임. 즉, 인간의 기능상태(Functioning)란 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 참여 등의 총합으로 나타는 것이며 환경 및 개인인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임.

12)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Rehabilitatio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rehabilitation)
13)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Rehabilitation.
14)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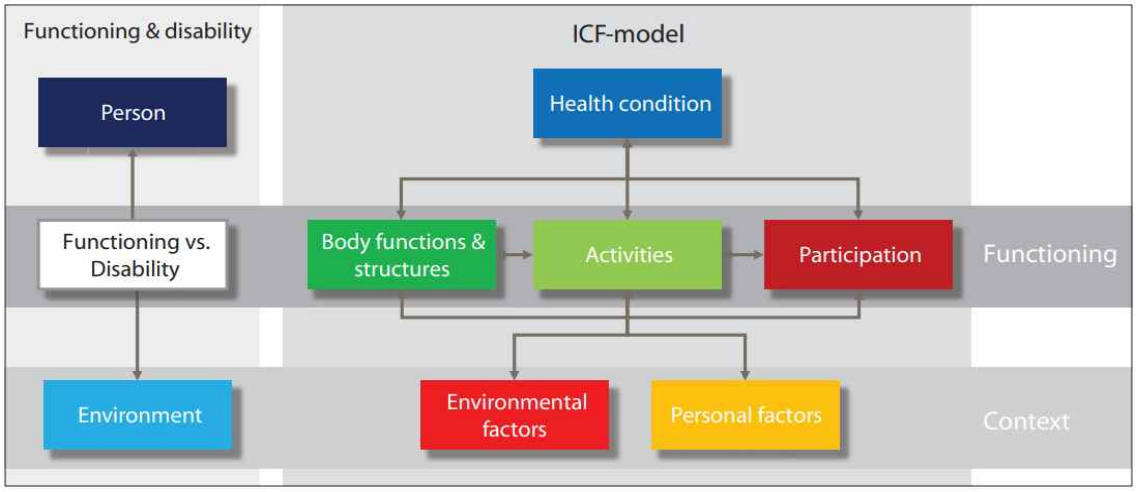

그림 7.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모형

자료출처 : Gutenbrunner C, Nugraha B. Chapter 2:Rehabilitation-2.1 Rehabilitation as health strate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2019;2(5):15-18.

□ 우선 의료서비스에서 재활의료란 모든 단계에서 개입이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뇌졸중, 심근경색이나 외상(척수손상, 다중외상)의 경우 급성기에 적절한 재활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후 독립적 생활과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아급성기 또는 회복기 시기를 거쳐 만성장애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택으로 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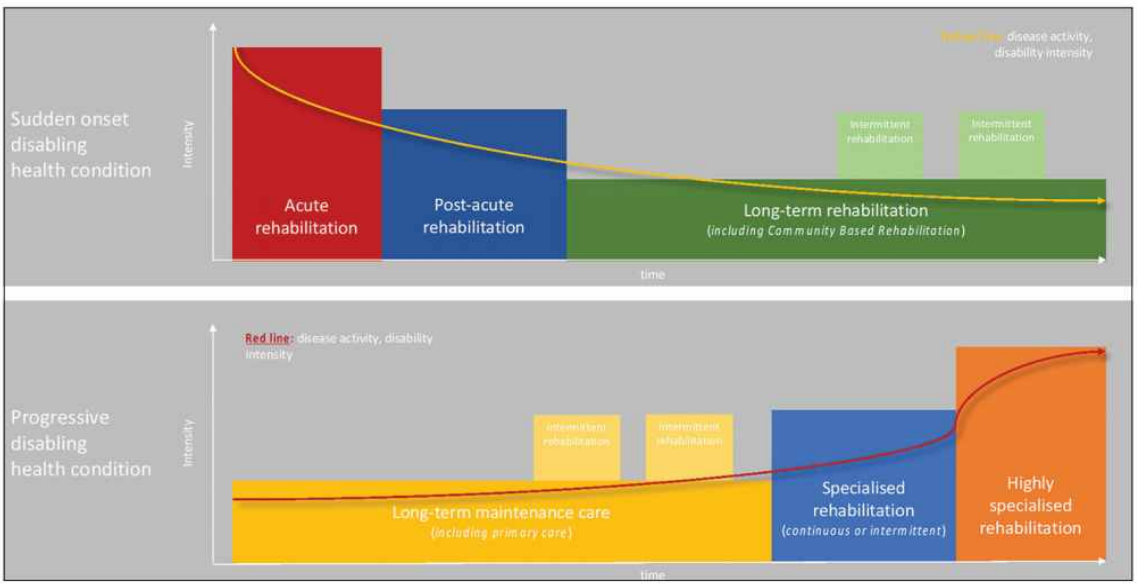

그림 8. 급성기 또는 만성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단계

자료출처 : Gutenbrunner C, Nugraha B. Chapter 2:Rehabilitation-2.1 Rehabilitation as health strate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2019;2(5):15-18.

15) Gutenbrunner C, Nugraha B. Chapter 2:Rehabilitation-2.1 Rehabilitation as health strate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2019;2(5):15-18.

□ 재활의료에서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는 재활서비스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 제공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임.[16)]

- 만성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및 동료의 일상적 지원이 중요함. 또한 기본적인 장애관리는 CBR 담당자(지역사회재활 담당자)로 케어가 가능함. 이때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요구와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의뢰가 가능해야 함. 환자의 기본적인 재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개입도 필요함.
- 보다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학제 전문가 재활팀 또는 숙련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필요함. 이 때 단계별 재활목표를 설정하고, 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활계획수립 및 조정을 시행하며, 포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대부분의 경우 급성, 아급성, 만성기 단계의 재활의료서비스는 다학제 전문가 재활팀을 구성함.
- 그 외에도 중환자실의 재활치료, 척수손상, 다발성 외상 또는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를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 때 고도로 전문화된 재활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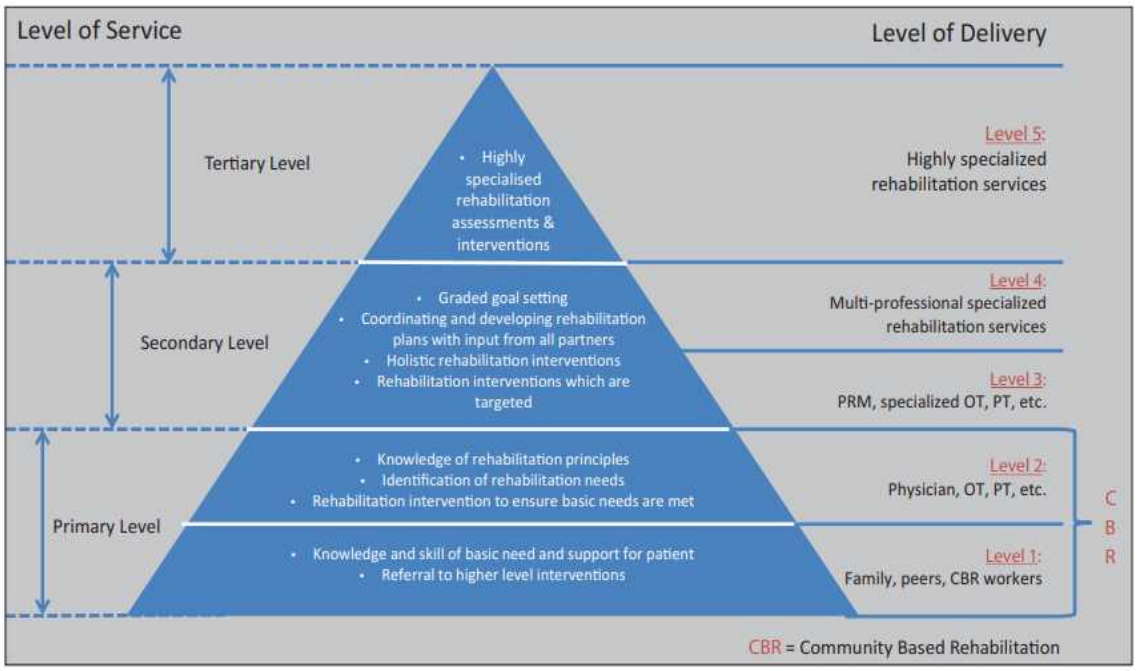

그림 9.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공수준

자료출처 : Gutenbrunner C, Nugraha B. Chapter 2:Rehabilitation-2.1 Rehabilitation as health strate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2019;2(5):15-18.

16) 자료출처 : Gutenbrunner C, Nugraha B. Chapter 2:Rehabilitation-2.1 Rehabilitation as health strate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2019;2(5):15-18.

나 국내 재활의료서비스 수가체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재활 관련 급여 목록은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은 다른 진료과와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며, 주로 재활의료서비스와 관련되는 수가항목은 '제7장 이학요법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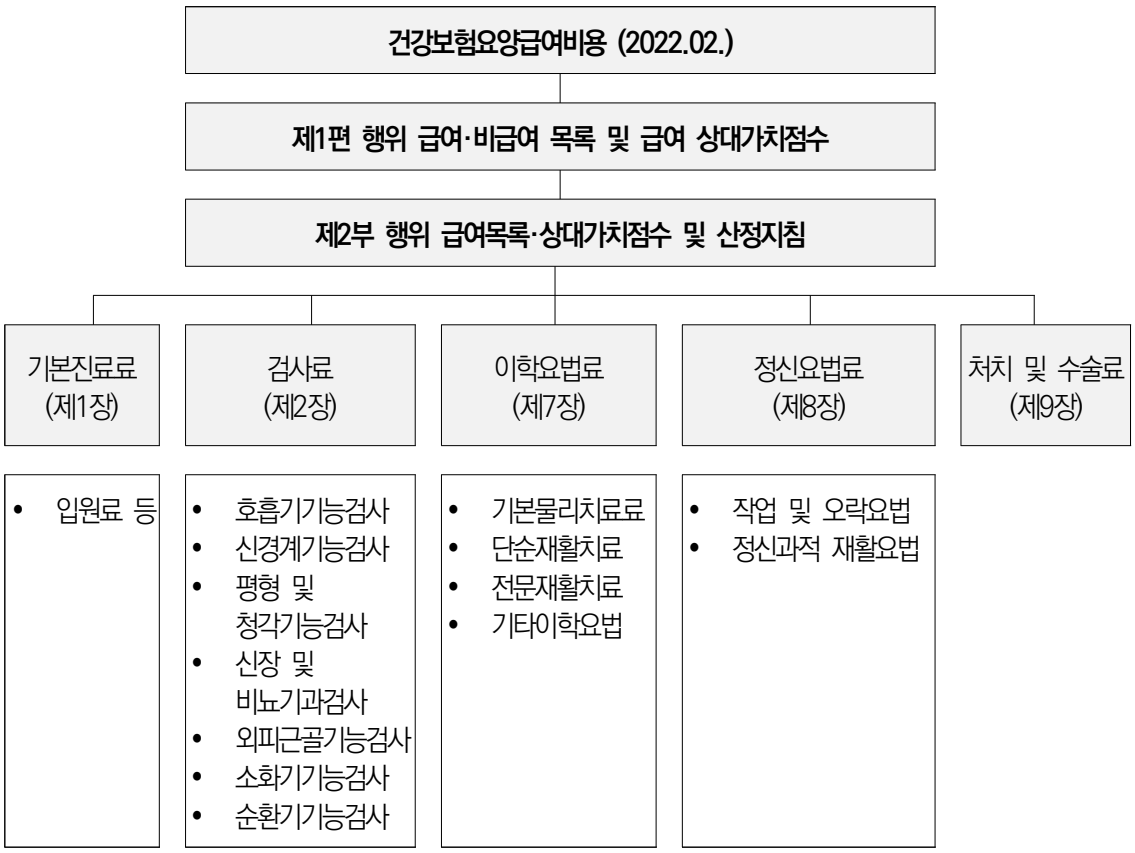

그림 10. 재활 관련 행위급여 목록

자료출처 : 정형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2019. 재구성

□ ‘제7장 이학요법료’는 주로 재활의학과 업무 영역에 해당함.[17)]

-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는 크게 검사, 평가, 치료서비스로 구성됨.
- 검사료의 적용을 받는 검사 및 평가 항목 외에 치료적 성격의 재활서비스는 이학요법료의 적용을 받는데 ‘제7장 이학요법료’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물리적 기제를 사용하는 치료
②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기능훈련이나 재활을 위한 치료
③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기능훈련이나 재활을 위한 치료
④ 제4절 기타이학요법료 : 일부 항목만 재활서비스 관련

□ 이학요법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18)]

- 첫 째,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은 항목별 서비스 제공자가 명확히 구분됨. 이학요법료 제1절~제3절에 해당하는 총 48개의 항목 중 물리치료사 영역은 36개(75.0%), 의사 영역은 3개(6.3%), 작업치료사 영역 6개(12.5%), 사회복지사 영역은 3개(6.3%)로 특히 물리치료사의 비중이 높은 편임.
- 둘 째,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로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는 전문재활치료로 갈수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셋 째, 영역별로 행위산정 기준이 달리 적용됨. ‘기본물리치료료’는 모든 의사의 처방이 가능하지만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처방이 가능함.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로 범위가 좁혀짐. 즉, 전문재활치료로 갈수록 재활치료에 대한 처방도 전문가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넷 째, 전문재활치료 항목 중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 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해당 항목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허 이외의 특정 자격 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항목임.

17) 신지영, 유명순.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분석. 보건사회연구 2022;42(1):106-124.
18) 신지영, 유명순.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분석. 보건사회연구 2022;42(1):106-124.

표 3. 제7장 이학요법료의 항목별 시행자 및 상대가치점수

이학요법료 구분	시행자 (항목수)	수가코드	내용	상대가치점수 (점)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물리치료사 (10개)	MM010	표층열치료	9.20
		MM015	표층열치료_심층열치료와 같은 날 동시 실시	4.60
		MM011	한냉치료 콜드팩	9.98
		MM012	한냉치료 냉동치료	14.38
		MM020	심층열치료	13.11
		MM030	자외선치료	5.51
		MM070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40.83
		MM080	간섭파 전류치료	40.83
		MM090	맛사지치료(1일당)	52.99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58.46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의사 (1개)	MM161	운동점차단술(근육당)	370.21
	물리치료사 (18개)	MM042	파라핀욕(1일당)	25.11
		MM041	수치료(1일당)_증기욕치료	48.16
		MM043	수치료(1일당)_정규욕조치료	79.05
		MM049	수치료(1일당)_대조욕치료	84.08
		MM044	수치료(1일당)_회전욕치료(1)수, 족, 지	73.04
		MM042	수치료(1일당)_회전욕치료(2)전신	82.55
		MM046	수치료(1일당)_하버드 탱크 치료	112.78
		MM170	유속치료(1일당)	43.82
		MM051	간헐적 견인치료_경추견인	74.68
		MM052	간헐적 견인치료_골반견인	74.88
		MM060	전기자극치료_마비근 치료	61.48
		MM061	전기자극치료_근력강화 치료	61.48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 치료(1일당)	60.99
		MM102	운동치료(1일당)_복합운동치료	91.49
		MM103	운동치료(1일당)_등속성 운동치료	102.29
		MM190	압박치료(1일당)	67.00
		MM20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135.00
		MX121	이온삼투요법(1일당)	79.34

이학요법료 구분	시행자 (항목수)	수가코드	내용	상대가치점수 (점)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의사 (2개)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	77.92
		MM132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_동시2부위이상	122.74
	물리치료사 (8개)	MM047	풀치료_보행풀치료	245.93
		MM048	풀치료_전신풀치료	385.71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228.59
		MM120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226.09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85.84
		MM290	호흡재활치료(1일당)	83.67
		MM301	재활기능치료_매트 및 이동치료	185.62
		MM302	재활기능치료_보행치료	177.42
	작업치료사 (6개)	MM111	작업치료_단순작업치료	53.30
		MM112	작업치료_복합작업치료	104.50
		MM113	작업치료_특수작업치료	151.28
		MM11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1일당)	151.13
		MX141	연하장애재활치료	182.63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91.27
	사회복지사 (3개)	MM141	재활사회사업_개인력조사	198.42
		MM142	재활사회사업_사회사업상담	121.62
		MM143	재활사회사업_가정방문	415.96

자료출처 : 신지영 등 연구(2022) 재인용. (자료 : 호승희 외(2011)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을 재구성)

□ ‘제2장 검사료’의 ‘제3절 기능검사료’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함.

표 4.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항목

구분		항목
제3절 기능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호흡 기능검사
		코통기 기능검사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
		철조법
		흡기 0.1초 구강폐쇄압측정
		최대흡기 및 호기구강압측정 등

구분		항목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검사	신경학적 척도검사
		나-611 근전도검사	F파 신경전도 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나-613 기타 신경전도검사	지각 및 기억력 검사
		나-614 뇌파검사	벤더도형검사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뇌유발전위검사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지속적국소뇌혈류량측정	베일리 영아발달측정
		지능검사	중증근무력증 약물검사
		인성검사	역동적 가족 그림검사
		치매척도검사	그림좌절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신경행동학적 인지기능검사
		수술중신경생리추적감시	미세전극기록 등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	
		기능적 대뇌 피질 지도화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언어청각검사, 소음 환경 하 어음인지력 검사, 평형기능검사	
		나-633 평형기능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나-634 청력검사	전정유발근전위검사
		F6370 유소아 청력검사	자동평형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와우전기자극사
		전기와우도검사	인공와우조절검사
		청성 뇌간반응 역치검사	보청기조절검사
	신장 및 비뇨기검사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복막투석효율검사
		요역동학 검사	혈로 혈류량 측정술
		방광내압측정	요도 내압 측정
		신우내압측정검사	요류 측정
		신기능검사	냉수방광검사
		복막평형검사	
	외피, 근골기능검사	도수근력검사	등속성 운동기능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경직진자검사
		조직압의 측정	
	소화기능검사	연하장애평가	직장수지검사
		항문, 직장내압검사	대장통과시간측정법

구분		항목
		기본식도내압검사 위정도
		보행성식도산도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자율신경계이상 검사-기립경사테이블검사 심호흡시심박동검사

□ ‘제8장 정신요법료’의 재활 관련은 ‘NN040 작업 및 오락요법’과 ‘NN090 정신의학적 재활요법’으로 작업치료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하였을 때 산정함.

다 국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1.1 재활의료전달체계 현황

□ 의료전달체계(Healthcare Dlivery system)란, 보건의료체계의 하위체계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임.[19)]

표 5.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권장기능 (3단계)

구분	의료기관 종별	권장기능		근거법
		외래/입원	경증/중증	
1단계	의원급	외래	경증	의료법 제3조의1
2단계	병원급 (종합병원 포함)	입원	경증	의료법 제3조의2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 대상 의료행위	의료법 제3조의3
	전문병원		특정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의료법 제3조의5
3단계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의료법 제3조의4

자료출처 :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병원에서 수술, 처치 후 상태가 어느정도 안정되기까지 재활치료를 시행 후 자택으로 퇴원함. 반면 지속적인 입원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원하여 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기도 함.[20)]

- 재활의료공급 주체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발병 초기 급성기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치료와 함께 시술위주의 진료 및 조기 집중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재활병원에서는 장기목표 설정과 기능회복을 위한 통합재활치료가, 재활의학과의원과 요양병원에서는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유지를 위한 보존적 재활치료와 외래 재활치료를 시행함.[21)]

19)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20) 신명희.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와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2017;11(5):7-11.

□ 이렇듯 의료기관별, 환자시기별로 서로 다른 목적의 재활의료 공급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행 재활의료 제공체계는 이러한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과 투입되는 재활의료의 양에 비하여 질이 떨어지는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 지적되고 있음.[22)]

- 대표적으로 아급성기(회복기)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재활의료기관 수가 부족하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급성기 환자가 회복기에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유지기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부적절한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재활환자가 한 기관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2-3개월 간격으로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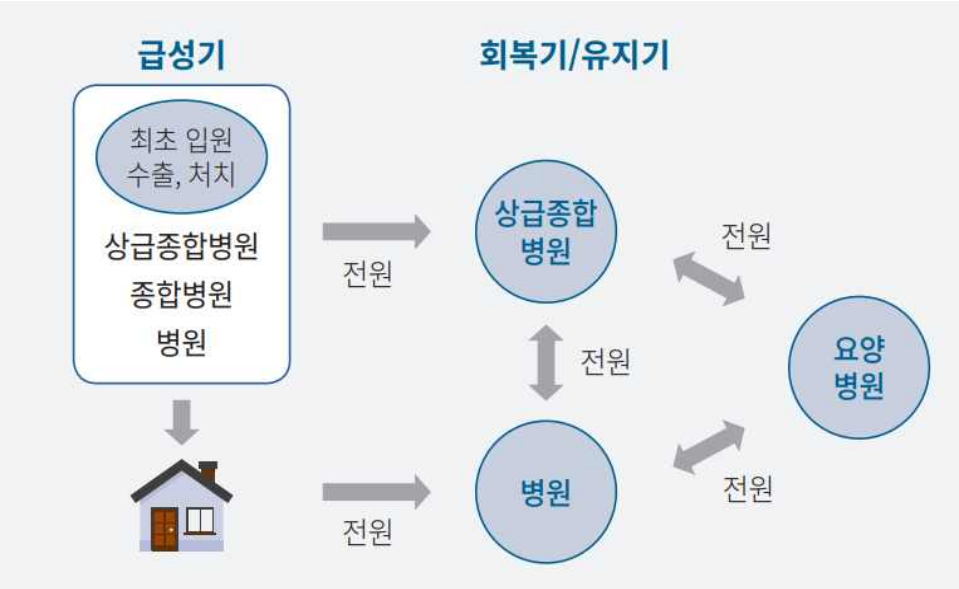

그림 11. 현행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자료출처 : 신명희.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와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2017;11(5):7-11.

□ 이 밖에도 재활환자의 중증도를 낮게 적용하여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환자 입원을 제한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재활의료 수가는 종합병원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활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만성기를 책임져야 할 재활의학과의원도 시설과 인력에 비하여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재활치료가 아닌 통증치료에 몰두하고 있음.[23)]

21) 권범선. 재활의료 공급체계와 전달시스템.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60-863.
22) 권범선. 재활의료 공급체계와 전달시스템.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60-863.
23) 권범선. 재활의료 공급체계와 전달시스템.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60-863.

1.2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

□ 현행과 같은 재활의료전달체계의 부재는 환자에게는 기능회복 저하, 장애고착, 장기 입원기간의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일으키는 비효율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앞으로 재활의료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절하게 재활의료가 개입되어야 하는 시기에 따라 영역별로 중점을 두는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급성기부터 유지기까지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함.

- 장애가 발생한 이후 일정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인 신체기능은 회복되지만 회복속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완만함. 초기 재활치료 때 최대한의 치료가 투입되어야 신체적인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음.
- 완만한 회복기 시기에는 기능회복과 기능적응을 위한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가정과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함. 유지기는 주로 가정에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받고 경우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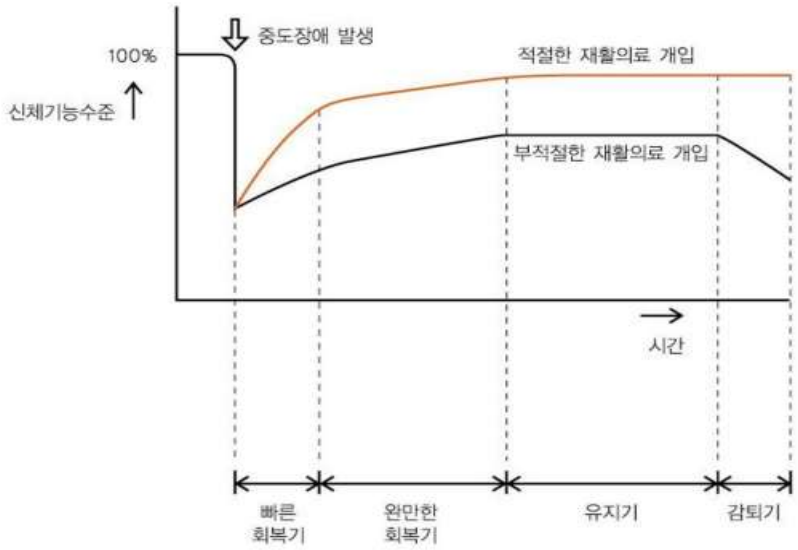

그림 12. 장애 발생 후 시기에 따른 재활의료 개입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활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전달체계가 정착되어 빠른 회복기는 급성기

재활에, 완만한 회복은 아급성(또는 회복기) 재활에, 유지기(또는 장기요양)는 유지기 재활로 확립하는 방향을 제시함.

- 급성기, 유지기 재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시함. 선행연구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바, 아급성기(또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급성기 및 유지기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임. 재활의료기관을 확대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집중재활 및 기능회복을 담당할 것을 제안함.

표 6.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신형익 등, 2022)

시기	급성기	아급성기	유지기
기간	수일-수주	수주-수개월	수개월-수년
재활의료의 목적	신체기능의 회복 〉 일상생활동작의 회복 합병증 방지 비사용 증후군 예방	일상생활동작의 회복 ≥ 신체기능의 회복 사회복귀	일상생활동작의 회복 사회활동 참여 촉진 비사용 증후군 예방
국내 공급기관 예시	급성기병원 재활의학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에서의 재활치료 외래기반 재활치료 주간재활센터(낮병원)에서의 재활치료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복지관에서의 재활서비스

표 7.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신명희, 2017)

시기	급성기 재활	회복기 재활	유지기재활
목적	초기 재활 - 환자 안정, 합병증 최소	집중 재활 - 기능향상, 사회복귀	보존적 재활 - 기능 유지, 적응
대상	- 의학적 상태 불안정 - 초기 합병증 방지 - 기능회복 시작, 기능호전 - 고난이도, 특수 재활	- 의학적 상태 안정 - 기능회복 지속 - 신체기능 호전가능 - 전문 재활치료	- 장애고착으로 기능호전가능성 낮음 - 단순 재활치료
수행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지역재활인프라
기간	발병 후 3주~1개월	발병 후 1~6개월	발병 후 6개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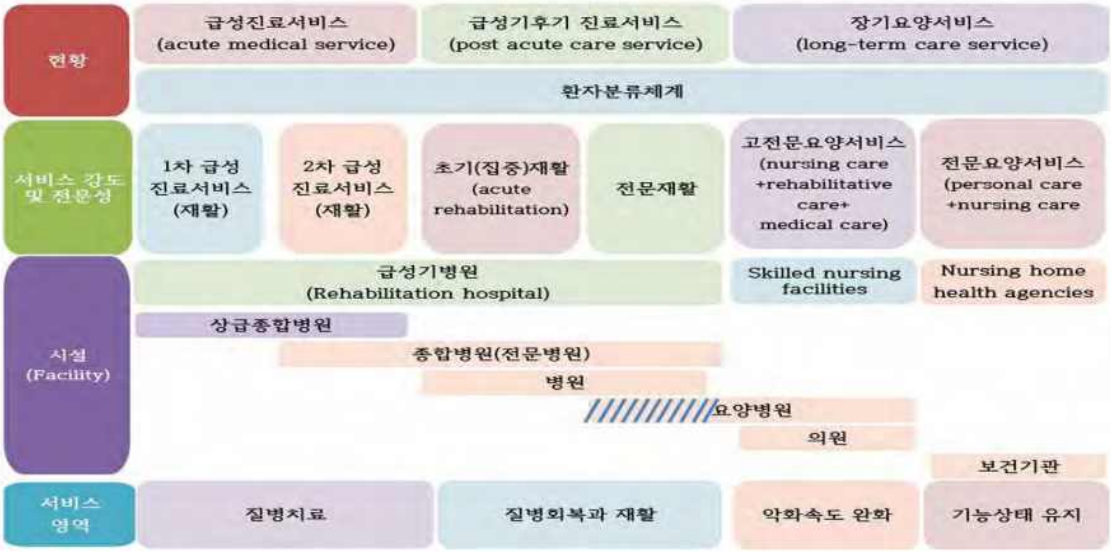

그림 13.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호승희 등, 2017)

02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정책

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사업

1.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재활의료기관이란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함. 2017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고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추진됨.

□ 재활의료기관 정책은 집중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부재해 장기입원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입원료 체감제로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소위 '재활난민' 현상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정책임. 특히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병원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회복기 재활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현행의 재활의료전달체계에서 재활의료기관이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게 됨.[24)]

□ 즉,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의 목적은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집중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표 8.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경과

일 자	경 과 내 용
2015.1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17.08.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017.10. ~ 2020.02.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시작 : 7개소 (1,500병상) ➜ 15개소 (2,800병상)

24) 신명희.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와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2017;11(5):7-11.

일 자	경 과 내 용
2018.12.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019.08.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령 •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
2020.02.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수가개선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020.03.	•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본사업 시행 : 26개소 ➜ 45개소 (2020.12. 19개소 추가지정, 7,000병상 규모)
2022.08.	•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1.2 법적근거 및 운영체계

1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건강법)	
제3조 (정의)	제5호.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제6호.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18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인력 ·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건강법)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19.8.30.)	장애인건강권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고시함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엄무를 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제2조) •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제5조) •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평가대상 기간,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 기준의 완화, 회복기 재활환자 및 구성비율, 상대평가의 기준 등 (제7조 내지 제18조)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 운영체계

□ 재활의료기관 사업의 운영체계 및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

① 지정평가 분야 :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및 운영,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대상환자 및 기준 설정

② 수가 및 기준분야 : 수가 개발(수가 개선 등을 위한 요양기관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수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 청구 및 전산 관리

③ 분류체계 분야 : 재활의료기관 환자 구성 비율 등에 활용하는 재활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개선, 재활환자평가 항목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재활의료기관 : 회복기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재활치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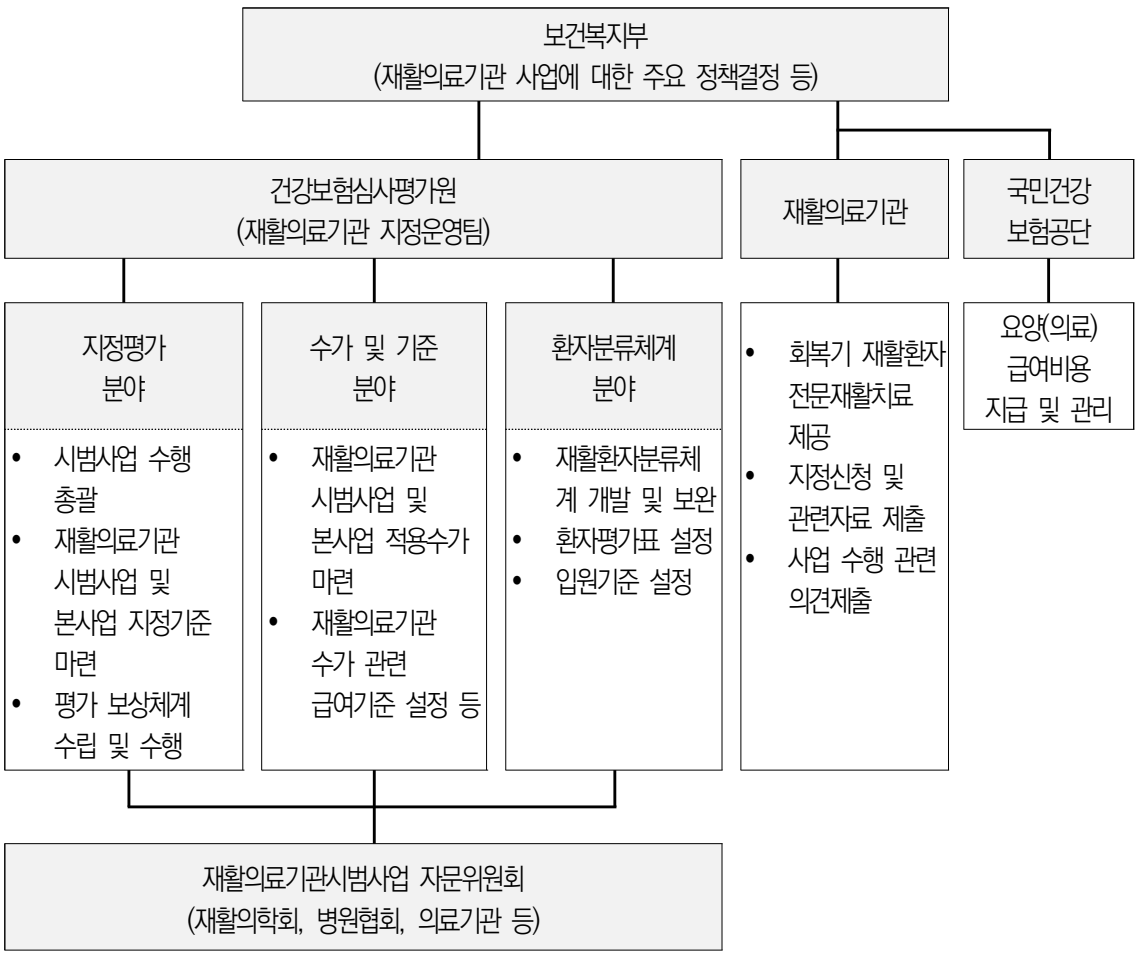

그림 14.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운영체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침. 2017.10.

1.3 사업대상

1 지정기준

□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임. 재활의료기관이 담당하는 환자군은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회복기 재활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임.

□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영역은 크게 3가지임.

-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진료량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이어야 함.
- 의료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근해야 함.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하며 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정함.

그림 15.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항목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 자료. 2022.8.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2020년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이후 최근 2022년 8월 2기 재활의료기관이 공고됨.

□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요약·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9.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내 용</th></tr>
<tr><td>필수 진료과목</td><td>• 재활의학과 설치 (2021.1.1. 기준)</td></tr>
<tr><td>진료량</td><td>•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량이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상
(입원환자 연인원수 14,356명 이상)
• 의료기관별 다음의 질병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연인원수를 산출함
<table>
<tr><th colspan="6">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th></tr>
<tr><td>1</td><td>B603</td><td>기타 척수질환 및 손상</td><td>14</td><td>B656</td><td>기타 신경계 운동장애</td></tr>
<tr><td>2</td><td>B610</td><td>편마비</td><td>15</td><td>B657</td><td>기타 퇴행성 운동장애</td></tr>
<tr><td>3</td><td>B620</td><td>뇌성마비</td><td>16</td><td>B811</td><td>수두증</td></tr>
<tr><td>4</td><td>B641</td><td>파킨슨병</td><td>17</td><td>B681</td><td>뇌내출혈(ICH)</td></tr>
<tr><td>5</td><td>B642</td><td>비정형 파킨슨</td><td>18</td><td>B682</td><td>지주막하출혈(SAH)</td></tr>
<tr><td>6</td><td>B643</td><td>이차 파킨슨증</td><td>19</td><td>B683</td><td>정맥혈전증에 의한 비출혈성 뇌졸중</td></tr>
<tr><td>7</td><td>B644</td><td>알츠하이머 병</td><td>20</td><td>B684</td><td>허혈성 뇌졸중 및 기타 비출혈성 뇌졸중</td></tr>
<tr><td>8</td><td>B645</td><td>기타 인지 장애</td><td>21</td><td>B601</td><td>사지마비</td></tr>
<tr><td>9</td><td>B651</td><td>떨림증</td><td>22</td><td>B602</td><td>하반신 마비</td></tr>
<tr><td>10</td><td>B652</td><td>근긴장이상</td><td>23</td><td>B750</td><td>신경질환 후유증</td></tr>
<tr><td>11</td><td>B653</td><td>근간대성경련</td><td>24</td><td>I730</td><td>근골격계 장애의 추후관리</td></tr>
<tr><td>12</td><td>B654</td><td>실조증</td><td>25</td><td>I760</td><td>기타 근골격계 질환</td></tr>
<tr><td>13</td><td>B655</td><td>기타 유전성 운동장애</td><td></td><td></td><td></td></tr>
</table>
• 2021.1.1.~12.31.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함</td></tr>
<tr><td>의료기관 인증</td><td>•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기간 동안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인증평가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전까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td></tr>
<tr><td>인력 기준</td><td>•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 전문의 등 1인당 환자수
<table>
<tr><th>인력</th><th>기준</th></tr>
<tr><td>전문의</td><td>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재활의학과 및 유관진료과목 전문의*)</td></tr>
<tr><td>간호사</td><td>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td></tr>
<tr><td>물리치료사</td><td>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내 용</th></tr>
<tr><td></td><td>
<table>
<tr><th>인력</th><th>기준</th></tr>
<tr><td>작업치료사</td><td>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td></tr>
<tr><td>사회복지사</td><td>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td></tr>
</table>
※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적용
</td></tr>
<tr><td>시설 및 장비 기준</td><td>
• 병상수: 60병상 이상
• 4개 필수시설 :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 시설 면적: 병상 당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이 3.5㎡ 이상
</td></tr>
<tr><td>환자구성비</td><td>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table>
<tr><th colspan="2">대상 환자군</th><th>대상 질환</th><th>입원시기</th><th>적용기간</th></tr>
<tr><td rowspan="2">중추 신경계</td><td>가</td><td>(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td><td rowspan="2">발병 또는 수술후 90일내</td><td rowspan="2">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td></tr>
<tr><td>나</td><td>(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td></tr>
<tr><td rowspan="3">근골격계</td><td>다-1</td><td>(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td><td>발병 또는 수술후 30일내</td><td>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td></tr>
<tr><td>다-2</td><td>(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td><td>발병 또는 수술후 60일내</td><td>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td></tr>
<tr><td>라</td><td>하지부위 절단</td><td>발병 또는 수술후 90일내</td><td>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td></tr>
<tr><td>그 외</td><td>마</td><td>비사용 증후군</td><td>발병 또는 수술후 90일내</td><td>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td></tr>
</table>
• 환자구성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1기 2차 재활의료기관은 ‘21년 7월부터 12월 중 환자구성 비율이 40% 도달한 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평균 환자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코로나19 관련 치료전담병원 및 코호트 격리기관은 운영(격리)기관과 종료 후 3개월을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
</td></tr>
</table>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공고문. 2022.8.30.

2 수가체계

□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체계는 3단계에 걸쳐 모형을 변화하여 적용 중임.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제1기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관에 적용하던 1단계 시범수가를 고도화하여 2단계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음. 향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가 및 급여기준으로 개선할 예정임.

표 10. 재활의료기관 수가체계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17.10.~'20.02.	'20.03.~'23.02.	'22년 이후 예정
수가	•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 통합계획관리료 •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1단계 수가 • 재활치료료 개선 • 지역사회연계료 신설 •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신설	성과기반 차등보상 도입기반 마련
대상기관	「재활의료기관 시범기관」 '17.10.~'17.12. : 7개소 '18.01~'20.02. : 15개소	「재활의료기관」 '20.03.~'20.12. : 26개소 '21.01~'23.02. : 45개소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설명회 자료 재구성.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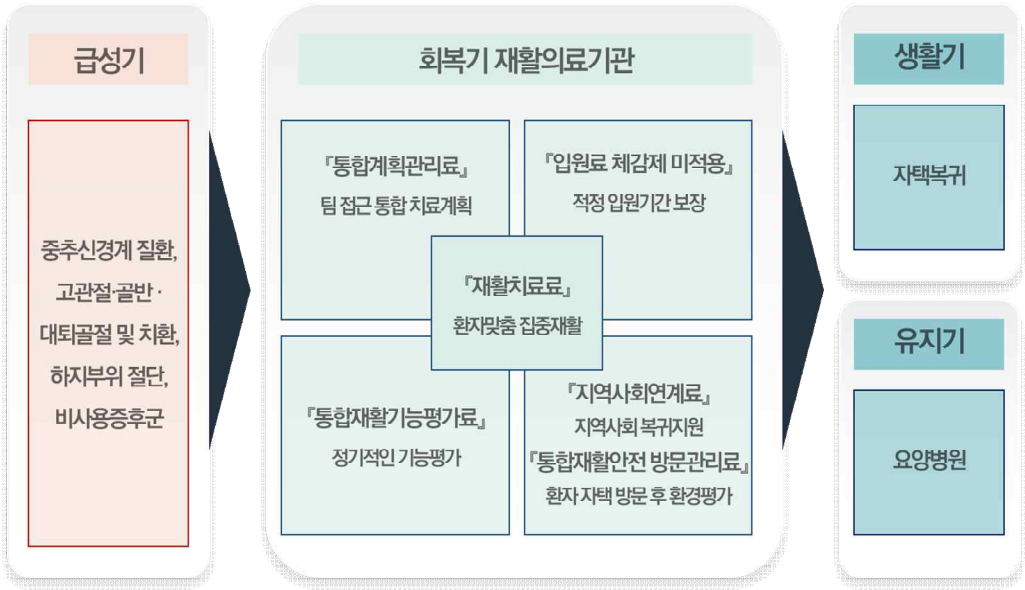

그림 16. 재활의료기관 2단계 수가체계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설명회 자료 재구성. 2020.

□ 재활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수가종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1. 재활의료기관 수가종류 및 적용기준

수가 구분	수가 내용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 목적 : 대상 질환별 적정 입원기간을 보장하여 환자가 집중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가적용 : 입원적용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미적용 - '시행령 별표2 제5호' (입원료 본인부담률 상승)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 대상 본인부담률 가산하여 금액을 부담함
통합계획관리료	• 목적 : 다직종의 팀 접근 통합서비스로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 수가적용 : 재활의학과 전문의 외 다양한 직종이 모여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시 산정함 - 참여인력수, 초회/재회, 퇴원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수가차등 - 입원기간 중 3회 이내 산정, 최소 30일 간격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목적 :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환자 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및 관리 • 수가적용 :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산정 - 중추신경계 :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이내 산정, 월1회 -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 입원적용기간 내, 월1회
재활치료료	• 목적 : 재활치료 항목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집중재활 치료를 실시 • 수가적용 - 15분 시행 시 1회 산정, 1일 최대 16회(4시간) 이내 산정
지역사회연계료	• 목적 : 집중 재활치료 후 장애관리 등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 • 수가적용 - 기관내활동 : 기관내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기관 연계 - 현장방문활동 : 환자(보호자)와 함께 거주지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 방문하여 연계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 목적 : 환자가 퇴원 후 거주할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개보수 및 돌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거 및 생활(돌봄) 환경 평가 등 환자의 자택복귀를 지원 • 수가적용 : 사회복지사 및 재활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인력이 환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산정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설명회 자료 재구성. 2020.

3 환자분류체계

□ 재활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는 재활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증도 또는 기능상태의 차이를 반영한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임.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KRPG)를 개발함.[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의무기록 조사를 거쳐 2015년 우리나라 최초로 급성기 이후 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함. 이 때 뇌·척수 손상중심의 현행 분류모형에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하여 KRPG 버전 1.1 개발을 완료함.

□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란 집중재활치료[26)]를 받은 입원환자를 손상의 원인질환, 연령 및 기능상태 등을 이용하여 임상적 및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환자분류체계를 말함. KRPG 분류는 집중재활을 받게 된 원인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때 원인질환은 임상적으로 유사한 그룹인 24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KRIC)로 분류됨.[27)]

표 12.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 (KRIC)

KRIC 번호	KRIC 명칭	KRIC 번호	KRIC 명칭
KRIC01	뇌졸중	KRIC13	하지 관절치환
KRIC02	외상성 뇌손상	KRIC14	하지 절단
KRIC03	비외상성 뇌손상	KRIC15	주요 다발성 골절
KRIC04	퇴행성 뇌질환	KRIC16	척추 골절 및 질환
KRIC05	외상성 척수손상	KRIC17	기타 질환
KRIC06	비외상성 척수손상	KRIC18	류마티스성 관절염
KRIC07	뇌척수 중복손상	KRIC19	기타 근골격계 질환
KRIC08	발달지연	KRIC20	심장질환
KRIC09	뇌성마비	KRIC21	호흡질환
KRIC10	기타 중추신경계질환	KRIC22	비사용 증후군
KRIC11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KRIC23	화상
KRIC12	골반대퇴골절	KRIC24	신생물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의 이해 발표자료. 2019.

25) 한영숙.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활용. HIRA 정책동향 2017;11(5):37-48.
26) 집중재활치료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제2절 사-116(운동치료) 및 제3절 전문재활치료
27) 한영숙.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활용. HIRA 정책동향 2017;11(5):37-48.

□ 재활환자분류체계 분류과정 및 모형은 다음과 같음.[28)]

- (1단계) 원인질환에 따라 재활손상대분류(KRIC)로 분류
- (2단계) KRIC별 의미있는 분류변수(연령, 인지기능,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운동·감각기능, 중증도)에 따라 분류[29)]
- (3단계) 최종 질병군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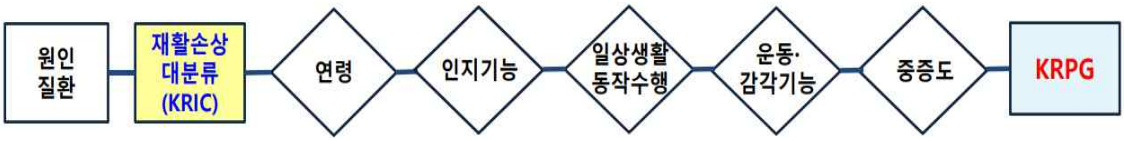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분류모형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 및 재활환자 평가 발표자료. 2022.08.

□ 재활의료기관은 원인질환이 사업대상 재활손상대분류(KRIC)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재활기능평가의 각 항목을 평가하여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에 따라 분류함.

- 통합재활기능평가표는 총 40항목으로 일반정보, 의학적정보, 기능평가정보, 재활간호서비스정보, 재활치료정보, 재활요구도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시기별(입원시, 입원중, 퇴원시) 제출하는 항목이 각각 다르고, 잘환군별 제출해야 하는 기능평가 항목이 각기 다름.

표 13. 재활의료기관 사업대상 재활손상대분류 (KRIC)

KRIC 번호	KRIC 명칭	KRIC 번호	KRIC 명칭
KRIC01	뇌졸중	KRIC12	골반대퇴골절
KRIC02	외상성 뇌손상	KRIC13	하지 관절치환
KRIC03	비외상성 뇌손상	KRIC14	하지 절단
KRIC05	외상성 척수손상	KRIC15	주요 다발성 골절
KRIC06	비외상성 척수손상	KRIC22	비사용 증후군
KRIC07	뇌척수 중복손상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 및 재활환자 평가 발표자료. 2022.08.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 및 재활환자 평가 발표자료. 2022.08.
29) 현재 중증도 분류는 미적용으로 KRPG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에 적용 예정임.

표 14. 통합재활기능평가 40개 항목

구분	세부항목	
일반정보 (15개 항목)	요양기관기호	평가구분/ 작성자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형태/ 직업유무
	최초입원일/ 요양개시일/ 발병일	퇴원일/ 퇴원사유/ 퇴원후 동거인 유무
의학적정보 (5개 항목)	재활손상대분류/ 재활손상그룹	입원 시 동반질환
	원인질환	입원 후 합병증
기능평가정보 (10개 항목)	인지기능(K-MMSE)	버그균형척도(BBS)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K-MBI)	척수독립성지수(SCIM)
	근력(MMT)	척수 손상부위 및 등급(ASIA Scale)
	경직(MAS)	기능적 보행지수(FAC)
	관절가동범위(ROM)	평가일(기능평가를 완료한 마지막 일자)
재활간호 서비스 (1개 항목, 19개 세부)	의식상태/ 언어장애	기관절개관 관리 유무/ 욕창 발생 유무
	연하·영양상태/ 영양관련 루 관리 유무	드레싱/ 체위변경/ 특수목욕 시행 유무
	배뇨/ 배변 관련 루 관리 유무	낙상 발생 유무/ 통증관련 처치 유무
	신경인성 방광관리/ 신경인성 장관리 유무	행동증상(문제행동)
	네뷸라이저/흡인/산소요법 또는 인공호흡기	
재활치료정보 (5개 항목)	재활치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재활치료계획	타 병원 기능평가정보
	통합계획관리	
재활요구도 정보 (4개 항목)	재활치료분야 (22개 세부)	재활치료장비 (7개 세부)
	재활치료강도 (그룹/ 1:1치료)	재활의학적 검사 (8개 세부)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 및 재활환자 평가 발표자료. 2022.08.

1.4 운영 및 성과현황

1 보건복지부 지정 제1기 재활의료기관 운영현황

□ 2020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기 기관으로 2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 19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총 45개 기관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임.

표 15.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간	지역	의료기관 명칭			
2020.3.1. ~ 2023.2.28.	서울	1	국립재활원		
		2	서울재활병원		
		3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4	제니스병원		
		5	청담병원		
	부산	6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7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8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9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대구	10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11	남산병원
	인천	12	미추홀병원	13	브래덤병원
	광주	14	호남권역재활병원		
	대전	15	다빈치병원		
	경기	16	국립교통재활병원	19	분당러스크재활병원
		17	로체스터재활병원	20	일산중심재활병원
		18	린병원	21	휴앤유병원
	강원	22	강원도 재활병원		
	충북	23	씨엔씨푸른병원	24	첼로병원
	충남	25	천안재활병원		
	제주	26	제주권역재활병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보건의료〉 의료기관정책.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

□ 성남권(성남시·용인시·광주시·하남시) 재활의료기관으로는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용인린병원 총 3개소가 운영 중임. 2022년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공고가 게시되었으며, 운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임.

표 16. 2021년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간	지역	의료기관 명칭	
2021.1.1. ~ 2023.2.28.	부산	27	메드윌병원
		28	워크재활의학과병원
		29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	30	의료법인 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31	의료법인 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32	의료법인 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광주	33	광주365재활병원
		34	우암병원
	대전	35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36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경기	37	베데스다병원
		38	분당베스트병원
		39	연세마두병원
		40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충북	41	아이엠병원
	충남	42	SG삼성조은병원
	전북	43	드림솔병원
	경북	44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45	의료법인 희원 래봄병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보건의료〉 의료기관정책.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

2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현황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본사업 기간 동안의 현황 및 추이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심평원 연구에서 제시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후 환자비율, 의료비, 입원일수 등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정사업에 대한 성과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함.

연구명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원 : 심평원 청구자료(2017.1~2020.10)와 통합재활기능평가표(2017.10~2021.6) 활용 연구대상자 : 2단계 시범사업 기간(2020.3.~2020.10.)동안 입원 및 회복기 재활수가 코드가 1번 이상 적용된 환자

□ 재활의료기관의 재활환자 점유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10월 이후 명세서 건 및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러나 전체 입원 환자 대비 재활환자의 비율은 2017년 10월 31.2%, 2018년 1월 55.2%로 증가하다 본사업 진입 후 2020년 50.7%, 2021년 35.6%로 감소함.
- 1차 시범사업에 7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8개소가 추가되고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 45개소로 확대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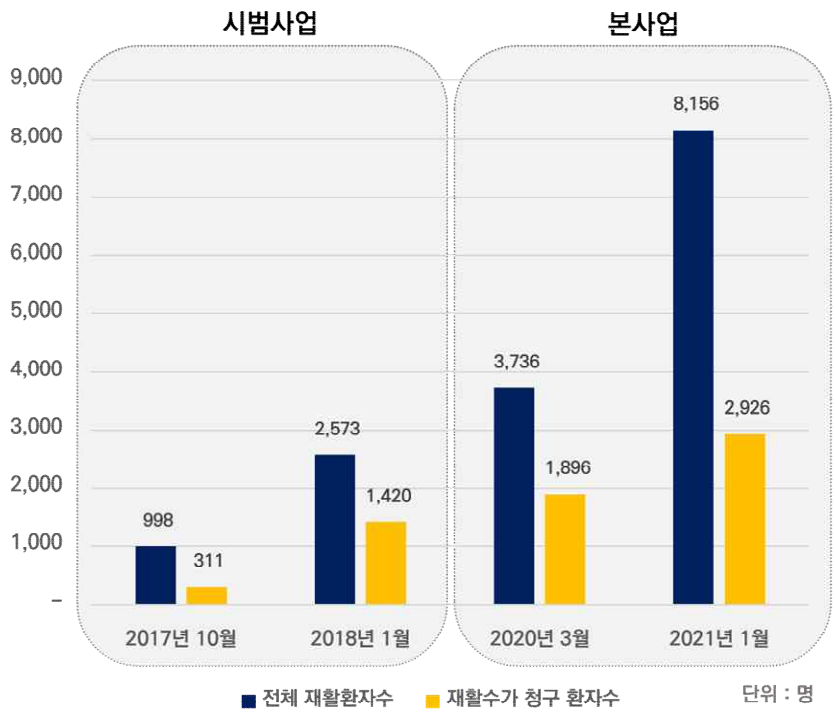

그림 18. 재활의료기관 재활환자 점유율 현황

□ 재활의료기관의 청구 의료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4월 45개 재활의료기관 전체 의료비 명세서 의료비는 456.8억 원이고 이 중 재활환자의 총 의료비는 253.4억 원(51.5%)임. 재활환자 총 의료비 중 회복기 재활수가 청구비용은 100.4억 원(39.6%)임.
- 2020년 3월 본사업 시작 시점의 전체 의료비 명세서는 228.6억 원으로, 재활환자 의료비는 54.5%, 회복기 재활수가 청구비용은 34.3%로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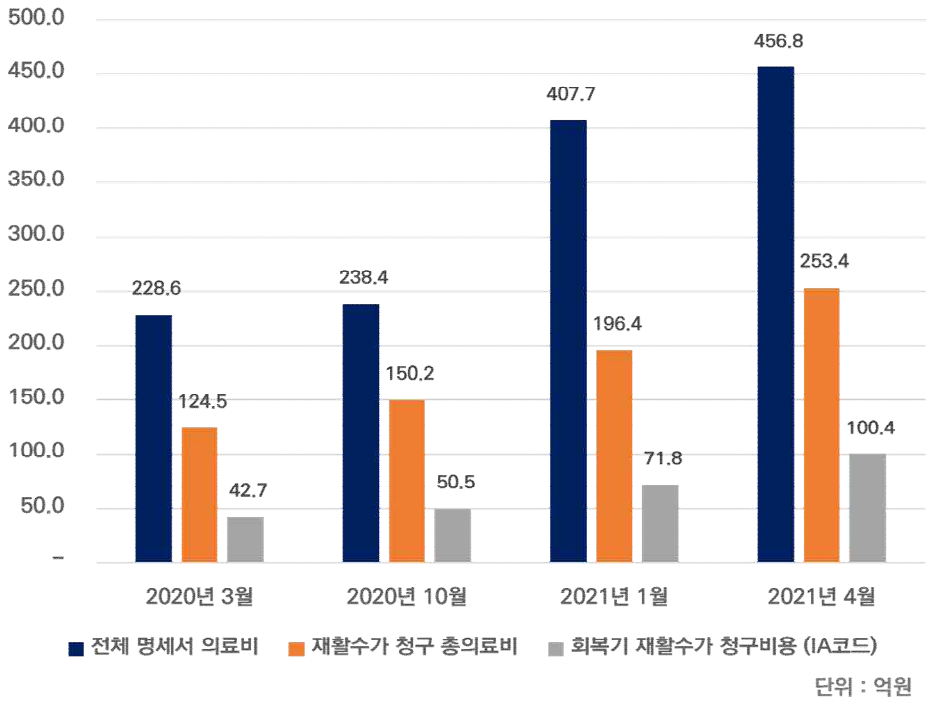

그림 19. 재활의료기관 청구 의료비 현황

주 1) IA 코드 : 재활치료료, 통합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료,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통합기능재활평가표를 활용한 중증도별 퇴원 및 재입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퇴원의 경우 집으로 퇴원하는 경우와 요양시설로 퇴원하는 경우로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병·의원, 종합병원(상급포함)으로 퇴원한 경우 재입원한 것으로 정의함.
- 중증도 정보가 있는 환자는 총 8,038명이었고 전체 환자를 기준으로 62.0%는 시설 또는 집으로 퇴원한 것으로 나타남.
- 중증도별 환자군 중 재입원을 살펴본 결과 최중증인 경우가 86.0%로 가장 높았으며 경증인 경우가 21.2%, 중증이 57.1%로 재입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함.

표 17. 전체 중증도별 퇴원 또는 재입원 환자수 및 비율

구분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합계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퇴원	집	1,394	78.3	2,759	66.1	697	39.8	45	13.4	4,895	60.9
	시설	10	0.6	26	0.6	53	3.1	2	0.6	91	1.1
재입원		377	21.2	1,387	33.2	1,000	57.1	288	86.0	3,052	38.0
합계		1,781	100.0	4,172	100.0	1,750	100.0	335	100.0	8,038	100.0

□ 2020년 본사업 이후 26개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후 재택복귀율과 재입원율을 추정한 결과임. 시범사업 전 전체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율은 42.7%(3,208명)에서 2단계 시범사업 후 54.5%(1,115명)로 증가함. 또한 [가-마] 모든 군에서 30일 내 타 의료기관의 재입원율이 감소하였음.

표 18. 2020년 재활의료기관의 재택복귀 및 재입원율 (26개소)

단위 : 명

구분		가	나	다	라	마	합계
2단계 시범사업 전	재택복귀	2,382	467	337	1	21	3,208
	재입원	3,494	557	199	4	46	4,300
합계		5,876	1,024	536	5	67	7,508
2단계 시범사업 후	재택복귀	715	95	281	2	22	1,115
	재입원	701	73	137	2	18	931
합계		1,416	168	418	4	40	2,046

주 1) 가. 중추신경계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중추신경계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다. 근골격계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라. 근골격계 : 하지부위 절단
마. 비사용증후군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30]

1.1 사업목표 및 사업영역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일명 CBR(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총체적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일컫음.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장애인 중, 보건의료 미충족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건 행태를 개선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공공조직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의뢰
  ②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③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기관 등에서 의뢰되는 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소로 연계되는 예비 장애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를 지원함.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협력으로 대상자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
  ②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대상자의 사회참여 증진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개념의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음.

- CBR 개념의 시작은 1978년 알마아타 선언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에서 기원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훈련」[31]하는 내용을 담은 CBR 매뉴얼을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됨.
- 이후 2003년 헬싱키 권고를 수용하면서 CBR 접근방식이 변화함. CBR을 “일반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 빈곤 감소, 기회평등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서비스 전달에서 지역사회 개발로 방식을 변경함. 즉,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30)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서」를 기반으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안내서」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을 통합함.

31) 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후 2004년 CBR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틀이 개발됨.[32)]

- CBR 매트릭스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건강, 교육, 생계. 사회적욕구, 역량강화로 구성됨. 앞의 4가지 영역은 핵심서비스 영역에 관한 것이며, 역량강화는 장애인·가족·지역사회에 대한 것임.
- 5가지 영역들은 새로운 CB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 기본적인 틀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CBR 프로그램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등 광범위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영역과 요소의 실행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우선순위, 자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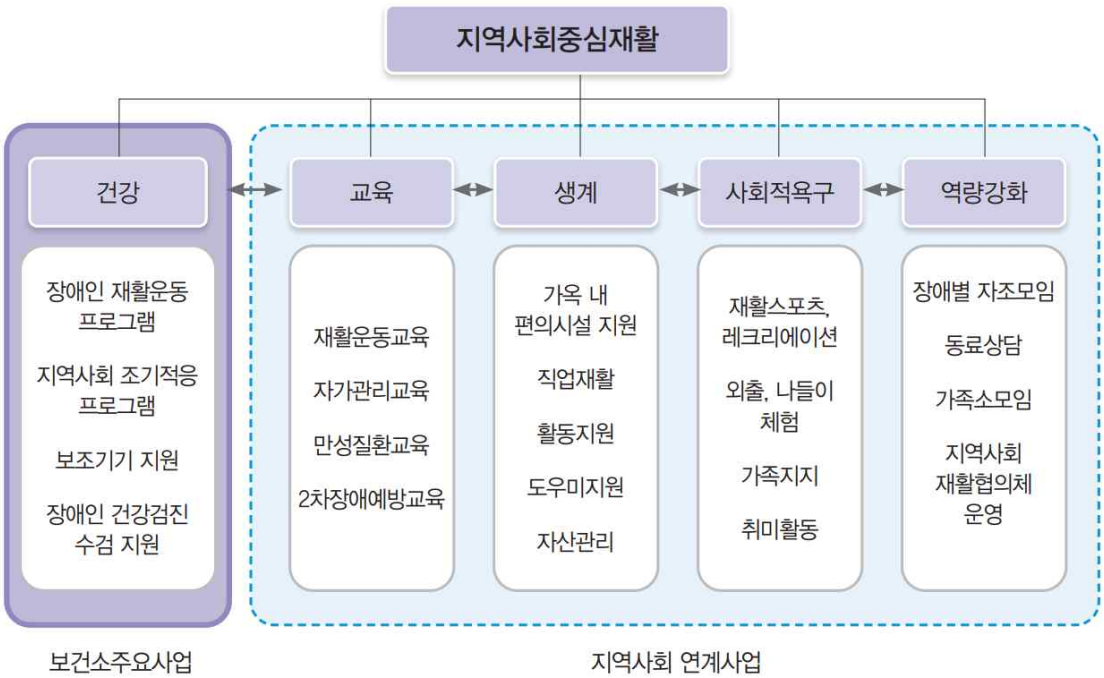

그림 20. CBR 매트릭스 보건소 활용

32) 삼육대학교. 지역사회중심 포괄개발을 위한 「WHO CBR 가이드라인」 번역본. 2010.

1.2 법적근거 및 운영체계

1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 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2 담당 인력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직제상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이 원칙이며, 기본인력과 연계인력으로 구성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통합건강증진사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함.

- 기본인력은 재활사업 담당공무원 1명, 재활전담인력 1명 이상으로 구성함.
- 연계인력은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함.
- 직제상 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기능형'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본인력과 연계인력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을 구성함.

3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조직된 민관협력 협의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방향 논의
-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강화
-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단체, 지역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됨.

구 성	담 당		인 원	자 격 기 준	담 당 업 무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팀	기본 인력	재활 사업 공무원	1명	정규적 업무 수행을 위한 재활사업 담당자 지정	•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 • 재활전담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등
		재활 전담 인력	1명 이상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내소자 관리 •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포함)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 지원 등
	연계 인력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자문, 재활 평가, 관리계획 지시 및 팀원 교육 등 수행 • 팀원 중 1명은 내소 장애인 관리 담당으로 지정 • 내소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은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재가 맞춤형 재활관리 제공 •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전체 주기적인 사례관리회의(서비스 계획 점검 등)

그림 21. 보건소 CBR 사업 담당인력

표 19.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기관별 역할 (예시)

기 관 명	역 할
○○○보건소	• 재활협의체 회의 준비, 방문재활서비스, 사례기록지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례당사자 연계
○○시립병원	• 가정의학 전문의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연계
○○재활병원	• 재활협의체 자문, 재활전문의 진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보험공단○○지사	• 사례당사자 연계
○○ 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재활 사례 의뢰 등
○○주거시설	• 장애인 거주 시설, 자원봉사 연계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학문적 조언, 방문재활 사례기록지 연구 사업 공동 진행 등
○○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당사자 입장 전달 등

4 지역자원과의 연계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

- **대상자**: 재활욕구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진 자
- **사업내용**: 보건소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 **세부사업**:
  - 보건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례관리 요구도 사정 ▶ 보건소에서 사례관리 대상 장애인의 의뢰 ▶ 지역센터는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파악 (의료문제, 건강보건관리, 교육 및 훈련 등) ▶
  - 제공 프로그램별 팀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 대상자 관리진행 및 종료 여부 결정 ▶ 결과회송

자문 의료 기관

- **대상자**: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수행 (※ 자문의사 지정 : 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지정)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회의)
  - 재활실무 교육

전국 보조 기기 센터

- **역 할**: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기능형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으로 연계하여 팀접근 회의를 통한 대상자 발굴·연계
- **연계내용**:
  - 대상자 발굴
  - 보조기기 서비스:보조기기 개조·제작, 구매 전 체험, 보조기기 유지관리 (점검, 수리, 세척)
  - 보조기기 교육 :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보조기기 사용/훈련 교육

지역 내 기타기관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등 행정지원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등
- 의료기관 : 재활치료, 훈련의뢰 등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등

자원봉사자

-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연계함으로써 재활훈련이 가능하게 함
- 신체위생, 재활훈련, 정서지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1.3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법적등록장애인 및 예비장애인[33]임. 지역사회에서 예비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 5%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확보하고 이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강화군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특히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①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등록장애인

②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예비장애인)

③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등록장애인

2 대상자 군 분류기준

□ 장애인 대상 측정도구 평가를 통해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를 하되,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시 군 분류 조정이 가능함.

표 2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대상자 분류 기준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기준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기준	기능평가(MBI) 49점 이하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미만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이상	기능평가(MBI) 75점 이상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33) 예비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3 대상자 군 분류기준

연번	서비스 구분	군분류		세부 프로그램 (예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1	건강관리 서비스	필수	선택	① 배뇨 · 배변관리 ② 욕창 · 피부관리 ③ 영양관리 ④ 구강관리 ⑤ 통증관리 ⑥ 연하관리 ⑦ 호흡관리 ⑧ 만성질환관리 ⑨ 기타
2	재활훈련 서비스	필수	선택	① 재활운동교육 ② 일상생활동작훈련 ③ 관절구축예방교육 ④ 2차장애예방교육 ⑤ 생활안전교육 ⑥ 기타
3	사회참여 서비스	선택	선택	① 외출/나들이/체험 ② 동료상담/자조모임 ③ 스포츠/레크레이션 ④ 가족소모임 ⑤ 기타
4	자원연계 서비스	필수	선택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 의료기관과 연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 자활센터와 연계 ⑥ 장애인단체와 연계 ⑦ 행정기관과 연계 ⑧ 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 장애인 운전 지원 ⑪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 건강검진 지원 ⑭ 기타
5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필수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 기타
6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① 프로그램 소개 ② 나를 이해하기 ③ 일상생활 동작관리 ④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⑤ 건강관리 운동 ⑥ 투약·영양·삼킴장애관리 ⑦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⑧ 마무리

4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은 초기면접부터 종결까지 퇴원과정과 퇴원직후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로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직업재활이나 진로, 건강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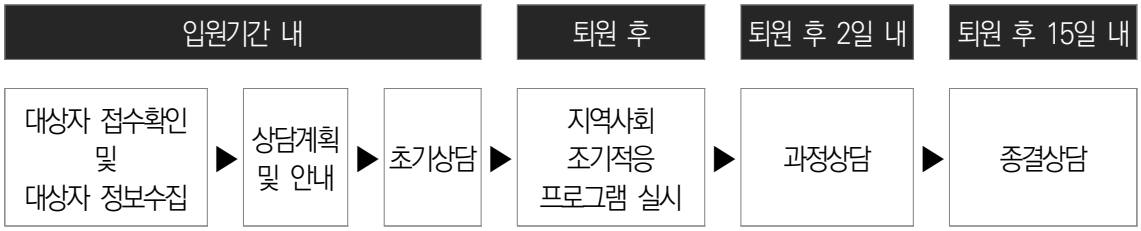

그림 22.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흐름도

5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는 보건의료관련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함임.

□ 사례관리 대상자는 중증도가 심하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순 의뢰 및 서비스 제공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타부서(기관)으로 대상자 의뢰기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재활욕구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인 경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희망복지 지원단	• 대상자 상담 및 평가 시 건강관련 문제 이외에 폭력 등 안전문제,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에 관한 문제 등 복지관련 복합적 문제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문을 지원
	방문건강 관리사업	• 재가 장애인 중 방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부서로 의뢰 및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2년 방문건강관리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그림 2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홍보안내 리플렛

그림 2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의료기관 연계 절차

1.4 운영현황 및 사례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현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운영주체는 전국구 보건소로 2022년 기준 전국 256개소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의 보건소는 212개소, 그 외 지역은 44개소임.

- 성남권 사업운영 보건소는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용인시 기흥구·처인구·수지구, 광주시, 하남시로 총 8개소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재활의료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고 있음.

표 2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현황

지 역	보 건 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 (25개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울재활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대전광역시 (5개소)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강원도 (18개소)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보건의료원, 홍천군, 화천군보건의료원, 횡성군	강원도재활병원
전라북도 (14개소)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보건의료원,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보건의료원, 순창군보건의료원, 전주시, 정읍시, 장수군보건의료원, 진안군	원광대학교병원
경상남도 (20개소)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보건의료원,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마산, 창원시진해, 창원시창원,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16개소)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진구, 해운대구	동아대학교병원

지 역	보 건 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천광역시 (10개소)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인하대학교병원
경기도 (46개소)	가평군,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남양주풍양,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단원, 안산시상록수, 안성시, 안양시동안, 안양시만안,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보건의료원, 오산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송탄, 평택시평택,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동부, 화성시동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6개소)	서귀포시동부, 서귀포시서귀포, 서귀포시서부, 제주시동부, 제주시서부, 제주시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충청북도 (14개소)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상당, 청주시서원, 청주시청원, 청주시흥덕, 충주시	충북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5개소)	동구,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전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8개소)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상북도 (25개소)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구미, 구미시선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보건의료원,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보건의료원, 칠곡군,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경북권역재활병원
울산광역시 (5개소)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세종시	-
충청남도 (16개소)	계룡시,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청양군보건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홍성군	-

지 역	보 건 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라남도 (22개소)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보건의료원, 광양시, 구례군보건의료원,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보건의료원,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성과현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최근 실적현황은 다음과 같음.[34)]

- 2018년부터는 전체 보건소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보건소는 정기 및 부정기로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를 분류하여 재활기록지를 작성·관리함. 정기 및 부정기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는 약 11만 명이며 서울은 전체 CBR 사업대상자의 약 13%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음.
-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서울, 경기도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구성함. 협의체의 세부 구성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순으로 높았으며 보조기기 센터의 참여가 가장 낮았음. 특히 서울의 경우 4.2%에 불과함.
-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서울의 경우 관리대상자 14,839명 중 약 1,900명으로 13% 내외에 불과함. 의뢰활동에서는 서울에서 지역 내 기관의 연계,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연계병원의 퇴원관리 상담활동은 10% 미만으로 보고됨.

표 22. 보건소 CBR 사업실적 결과 (2018년)

실적구분	전체	서울	경기도
1. 보건소 관리 대상자 현황 (명)	114,262	14,839	-
1.1. 정기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45,100	5,590	-
1.2. 부정기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69,162	9,249	-
2.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현황 (개, %)			
2.1. 보건소 수 (A, 개)	250	24	41
2.2. 협의체 구성 보건소 수 (B, 개)	227	24	33

34) 김준성 등. 장애인의 조기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나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실적구분	전체	서울	경기도
2.3. 구성률 (B/A, %)	90.8	100.0	80.5
3.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세부구성 현황 (%)			
3.1. 의료기관 참여분율	82.8	87.5	84.8
3.2. 교육기관 참여분율	67.0	41.7	51.5
3.3. 행정기관 참여분율	85.9	87.5	87.9
3.4. 사회복지기관 참여분율	94.7	95.8	90.9
3.5. 보조기기센터 참여분율	23.3	4.2	27.3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명)			
4.1. 건강증진 프로그램	25,518	3,973	-
4.2. 재활치료 프로그램	16,044	1,918	-
5. 보건소 연계 및 의뢰 활동현황 (명)			
5.1.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7,661	1,398	-
5.2. 조사 및 연구사업	1,966	343	-
5.3.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61,236	4,305	-
5.4.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의뢰	31,501	4,442	-

자료출처 : 김준성 등. 장애인의 조기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주 1)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인원은 실인원임.
주 2) '5. 보건소 연계 및 의뢰 활동현황' 인원은 연인원임.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사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CBR 연계사업에 대한 경상남도 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35)]

> 조사대상 : 경상남도 전체 시·군 20개소 보건소
> 조사기간 : 2020년 1월 3일 ~ 2020년 1월 17일
> 조사직종 : 보건소 CBR 사업 담당자 20인
> (간호사 5인, 물리치료사 10인, 작업치료사 2인, 기타 직종 3인)

- 보건소 CBR 사업 담당자에게 주된 업무를 설문한 결과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보건소 CBR 사업과 연계가 잘 되는 지역사회 기관 및 조직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장 높은 46.9%였으며, 다음으로 시·군·구 행정기관,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

35) 이해인, 박정선, 최수향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인식도와 중요도 연구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2020;12(2):25-35.

의료센터가 그 뒤를 이음.

-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전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각각 55%로 높았음.
-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협력 내용으로는 기관과의 연계 및 교육지원이 각 2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더불어 CBR 사업의 활성화 과제로는 업무 매뉴얼 개발과 공식적인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응답함.

표 23. 경상남도 보건소 CBR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사업 수행현황	응답	인식도 및 중요도 조사 결과	응답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	100.0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리사업 중요도	-
1.1.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14.5	3.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전달체계 구축	55.0
1.2.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14.5	3.2.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55.0
1.3. 방문재활	13.7	3.3. 자조모임·참여형 동아리 참여지원	50.0
1.4. 기타 7개 프로그램	57.3	3.4. 장애 건강주치의 연계, 상담·양성	50.0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연계기관	100.0	4. 보건소-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력내용	100.0
2.1. 장애인복지관	46.9	4.1. 보건의료-복지 자원(기관) 연계	20.6
2.2. 시·군·구 행정기관	15.6	4.2. 교육지원	20.6
2.3.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5.6	4.3. 통합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지원	14.7
2.4. 기타 3개 기관	21.9	4.4. 기타 6개 협력 사항	44.1
		5. 보건소 CBR 사업 지원 활성화 과제	100.0
		5.1. 업무 매뉴얼 개발	40.0
		5.2. 관련 조직의 공식적인 연계망 형성	30.0
		5.3. 기타 3개 과제	30.0

자료출처 : 이해인, 박정선, 최수향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인식도와 중요도 연구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2020;12(2):25-35.

주 1) '3.1, 3.2' 조사응답은 관리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한 결과임.

주 2) '3.3, 3.4' 조사응답은 관리사업의 중요도가 '대체로 중요하다'로 응답한 결과임.

03 국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가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1 일본 보건의료체계 개관

□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형의 사회보험체계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공존함.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일본 및 한국 보건의료체계 현황 비교

구 분			세부영역	일본	대한민국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현황	1	보건의료인력 (인구천명당)	활동 의사수	2.5	2.4
			면허소지 의사수	3.9	2.9
			활동 간호사수	11.8	7.2
	2	기관 및 병상자원 (인구천명당)	의료기관수(개)	8,300	94,865
			전체 병상수	13.0	12.4
			공공병상비율	28.7	1.30
	3	연간입원일수	연간입원일수(일)	-	19.1
	4	연간외래횟수	외래진료횟수(회)	12.6	16.9
의료전달체계	1	전달체계	진료의뢰서 필요유무	O	O
	2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정책결정	보험자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운영책임	보험자 (직장건강보험(조합관장 및 협회관장), 지역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조달체계	보험료 및 국고보조	보험료 및 정부지원
건강보장체계	1	관리운영체계	의료보장방식	사회보험	사회보험
	2	대상 및 자격관리	대상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건강보험 (보험가입자 97.2% +의료급여대상자 2.8%) 민간보험
			자격관리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구 분			세부영역	일본	대한민국
급여체계	1	병원비 지불	병원비 지불방법	환자 일부 본인부담 이송비 등 현금제공	본인부담률 따른 진료비 지불
	2	보장범위 및 보장비율	급여범위	진찰,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등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등
			보장률(%)	84.2	63.8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연구원〉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주요국 건강보험제도 비교 템플릿 요약.
주 1) 보건의료인력 국가별 수치는 2018년 기준임.
2) 기관 및 병상자원 : 일본은 전체 2018년 기준값, 대한민국은 의료기관수(2019년), 병상수(2018년), 공공병상수(2017년) 기준임.
3) 연간입원일수 및 연간외래횟수 : 일본은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임.

1.2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분류체계

□ 일본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의 시작은 1963년 재활의학회 창립 이후로 재활의학 전문의 제도는 1981년 도입됨. 2001년 9월 '의료제도 개혁시안'을 통해 병상기능을 명확화, 중점화로 명시하고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함.[36)37)]

표 25. 일본 병상기능 구분

구 분	내 용
고도급성기	• 급성기의 환자에게 상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진료밀도가 특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
급성기	• 급성기의 환자에게 상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
회복기	• 급성기를 지난 환자에게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기능 • 특히 급성기를 경과한 뇌혈관질환이나 대퇴골경부골절 등의 환자에게 ADL 향상이나 재택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능(회복기·재활치료 기능)
만성기	•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기능 •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중증의 의식장애를 포함), 근육위축 환자 또는 난치병 환자 등을 입원시키는 기능

자료출처 : 박수경 등.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19.

36) 김수연·김소중·신용일. 해외 재활의료전달·공급체계.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75-884.
37) 박수경 등.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19.

□ 일본의 재활의료서비스는 급성기, 회복기 및 만성기(유지기) 형태로 구분함.[38)]

- 급성기 재활의료서비스는 급성기 병원과 일반병상에서의 급성기 재활의료 및 간호를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질병 발병 후 1~3주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함.
-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는 재활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회복기 재활, 팀 접근 방법에 의해 재활간호 및 개호 등의 서비스가 1~4개월(최대 6개월) 기간동안 이어짐.
- 유지기(생활기) 재활의료서비스는 입원-입소시설 서비스로 의료보험 또는 개호보험 적용 요양병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함.

표 26.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단계별 제공형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재활의료 제공 형태</th></tr>
<tr><td>급성기 재활</td><td colspan="5">• 급성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의료서비스를 의미함
• 급성기 재활의 내용은 조기이상과 철저한 질병증후군에 대한 예방으로, 향후 급성기 병원은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 부분임
• 2주간 정도의 입원기간에 일상활동(ADL) 미자립 상태와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한 뇌혈관질환, 두부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을 치료함
• 이러한 환자를 선택적으로 모아 입원을 시켜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운영 기능</td></tr>
<tr><td>회복기 재활</td><td colspan="5">• 일상생활 미자립 정도에 따라 집중적인 서비스로 개선 가능한 뇌혈관질환, 두부손상, 척수손상 등의 대표적인 질환을 관리
• 회복기 재활병동의 특징은 ① 입원환자를 회복기 재활을 요하는 환자로 제한, ② 입원목적으로서 일상활동동작(ADL) 향상, 가정복귀 지원 등, ③ 입원기간은 180일 이내로 제한함</td></tr>
<tr><td>만성기 재활
(유지기 재활)</td><td colspan="5">• 재택과 시설로 구분되어 개호요양형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의료서비스는 병원급보다는 1차 의료수준의 요양형 시설에서 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상당부문은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도 특징임
<table>
<tr><th>구분</th><th>종류</th><th>제공기관</th><th>의료보험</th><th>개호보험</th></tr>
<tr><td rowspan="3">재택</td><td>통원(주간의료기관) 재활의료</td><td>진료소(의원)/병원</td><td>O</td><td></td></tr>
<tr><td>방문재활의료</td><td>진료소/병원/
개호노인보호시설</td><td>O</td><td>O</td></tr>
<tr><td>방문간호</td><td>진료소/병원/방문간호기관</td><td>O</td><td>O</td></tr>
</table></td></tr>
</table>

38) 김수연·김소중·신용일. 해외 재활의료전달·공급체계.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75-884.

구 분	재활의료 제공 형태				
	구분	종류	제공기관	의료보험	개호보험
		주간시설 재활의료	진료소/병원/ 개호노인보건시설		O
		단기입소 재활의료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O
	시설	입원재활의료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O
		입소재활의료	개호노인보건시설		O

자료출처 :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주 1) 개호보험 : 일본의 개호보험이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층의 간병과 돌봄을 위해 도입된 보험제도로 우리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목적이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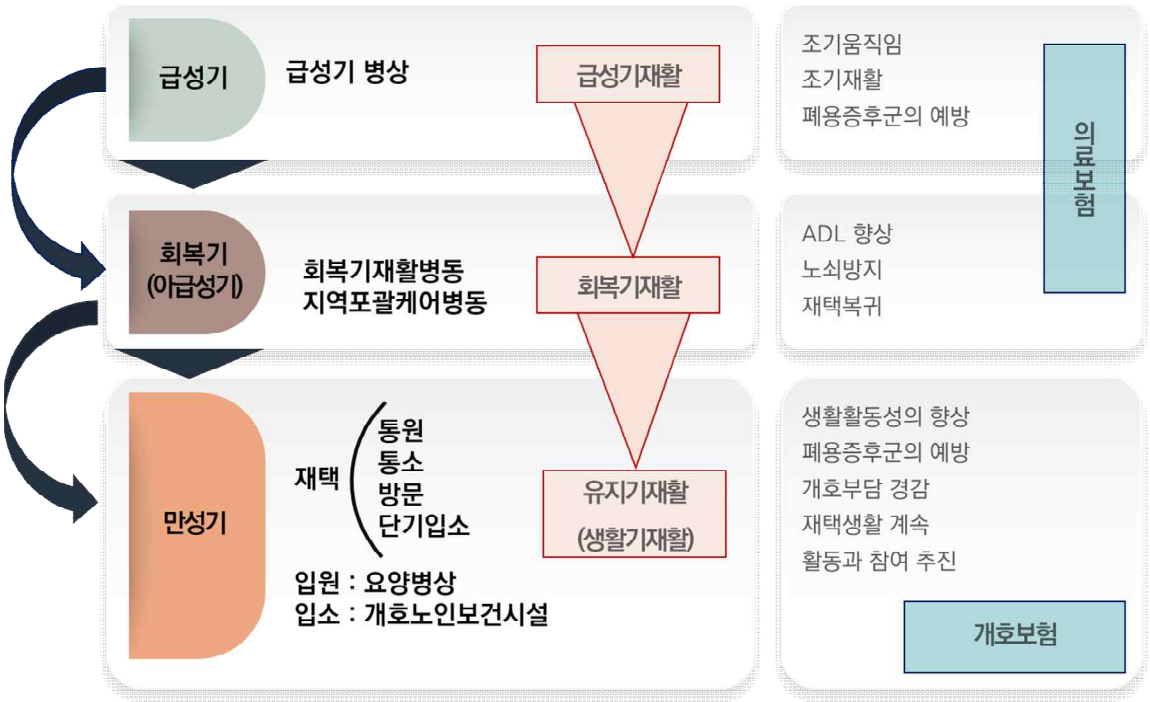

그림 25. 일본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자료출처 : 박수경 등.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19.

1.3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 2000년 개호보험을 시행하면서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신설함.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는 급성기 환자가 급성기를 마친 후 아급성기 내지 회복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개호보험의 요개호자가 되지 않고 재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39)]

□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는 인력, 중증환자 비율, 실적 등에 따라 병동을 6개 단계의 시설로 구분하여 입원료를 차등 지급함.[40)]

-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발병 2개월 이내에 재활병동에 입원함.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1일 3시간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음.
- 휴일 재활치료, 환자의 퇴원시 사회복귀 비율, 입원시 중환자의 비율의 성과에 따른 수가에 가산을 줌.

표 27.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적용질환군 및 입원 한도기간

연번	관련 질환	발병 후 입원 가능기간	입원 한도기간
1	•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두부외상, 지주막하출혈 션트 수술 후, 뇌종양, 뇌염, 급성뇌증, 척수염, 다발성 신경염,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 또는 수술 후 보장구 장착훈련이 필요한 상태 등	2개월 이내	150일
2	• 고차 뇌기능 장애를 동반한 중증 뇌혈관 장애, 중증 경추손상	2개월 이내	180일
3	• 두부 외상을 포함한 다발성 외상 발병 또는 수술 후	2개월 이내	180일
4	• 대퇴골, 골반, 척추, 고관절, 슬관절 2지 이상 다발성 골절 발병 또는 수술 후	2개월 이내	90일
5	• 외과수술 또는 폐렴 등의 치료 시, 침상 안정에 의한 비사용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수술 후 또는 발병 후 (비사용 증후군 진단 일부터 적용)	2개월 이내	90일
6	• 대퇴골, 골반, 척수, 고관절, 슬관절의 신경, 힘줄, 인대 손상 후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 이후 상태	1개월 이내	60일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39) 정형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2019.
40)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 회복기 재활병동의 수가는 입원료와 재활치료를 묶어 지불하고 예외적인 가산수가를 종합하여 보상하고 있음. 입원료 수가는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12개의 기준을 달성한 경우 산정을 달리함.

표 28.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 수가 구분

연번	재활병동 수가 구분	연번	재활병동 수가 구분
1	재활의학과 의사	7	관리영양사
2	간호·간호보조	8	입원시 중증환자
3	전속 물리치료사	9	중증환자 회복률
4	전속 작업치료사	10	재택복귀율
5	전속 언어치료사	11	실적지수
6	사회복지사	12	데이터 제출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 회복기 재활병동을 퇴원한 이후로는 3개월간 1일 6단위(120분)까지의 외래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2019년 기준 일본 전역에 통소재활(외래재활) 사업소는 7,926개소, 방문재활 사업소는 4,565개소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개호보험 재원에 의하여 재활치료가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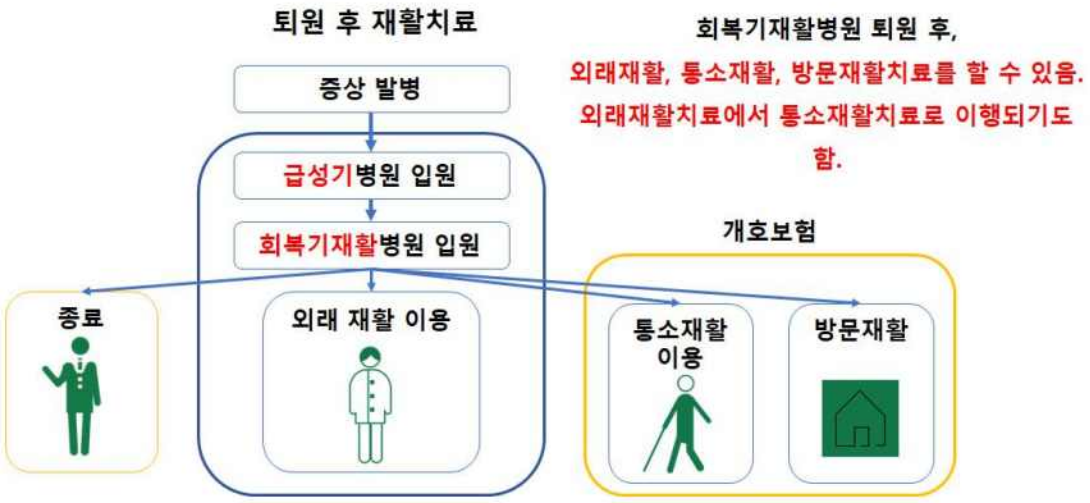

그림 26. 일본 퇴원 후 재활치료체계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나 캐나다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1 캐나다 보건의료체계 개관

□ 캐나다는 13개의 자치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로 분류되며 각 주 및 준주별로 독자적인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함.[41)]

- 13개의 준주정부는 단일지불자이자 보험자로서 보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메디케어' 방식을 준용함.
- 캐나다는 보건법을 통해 피보험자의 지불능력이 아닌 의학적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해당 거주지역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음.

표 29. 캐나다 및 한국 보건의료체계 현황 비교

구 분			세부영역	캐나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현황	1	보건의료인력 (인구천명당)	활동 의사수	2.7	2.4
			면허소지 의사수	2.9	2.9
			활동 간호사수	10.9	7.2
	2	기관 및 병상자원 (인구천명당)	의료기관수(개)	715	94,865
			전체 병상수	2.6	12.4
			공공병상비율	2.5	1.30
	3	연간입원일수	연간입원일수(일)	7.5	19.1
	4	연간외래횟수	외래진료횟수(회)	6.7	16.9
의료전달체계	1	전달체계	진료의뢰서 필요유무	O	O
	2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정책결정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운영책임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조달체계	조세(70%),민간(30%)	보험료 및 정부지원
건강보장체계	1	관리운영체계	의료보장방식	국가보건서비스	사회보험
	2	대상 및 자격관리	대상	국가보건서비스 (주, 준주정부) : 전국민	건강보험 (보험가입자 97.2% +의료급여대상자 2.8%) 민간보험

41) 이얼 등.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체계 에 관한 연구 -온타리오주 법령을 중심으로-. 2020.04.

구 분			세부영역	캐나다	대한민국
			자격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체계	1	병원비 지불	병원비 지불방법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민간보험	본인부담률 따른 진료비 지불
	2	보장범위 및 보장비율	급여범위 보장률(%)	메디케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제외:치과,안과,의약품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등 63.8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연구원〉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주요국 건강보험제도 비교 템플릿 요약.
주 1) 보건의료인력 국가별 수치는 2018년 기준임.
2) 기관 및 병상자원 : 캐나다는 전체 2018년 기준값, 대한민국은 의료기관수(2019년), 병상수(2018년), 공공병상수(2017년) 기준임.
3) 연간입원일수 및 연간외래횟수의 국가별 수치는 2018년 기준임.

1.2 캐나다 재활의료서비스 분류체계[42)]

□ 캐나다에서는 급성기 관리로 최대한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는 것을 강조함. 뇌졸중의 경우 입원 2일 후 의학적으로 안정되고 치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이 가능하다면 바로 재활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급성기 병상에서 재활 병상 또는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한 대기기간은 2일 이내임.

표 30. 캐나다 시기별 재활서비스 제공 구분

구 분	내 용
급성기	• 재활전문병원, 일반병원의 재활병동(유니트),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병상 • 급성기 관리는 최대한 조기에 시행함을 강조
아급성기	• 온타리오 주 - 입원재활 : 정기재활, 회복기재활 - 외래재활 : 조기에 지역사회로 퇴원을 하여 외래를 통하여 재활센터에서 집중적인 치료
만성 (유지기)	• 온타리오 주 -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 방문재활치료, 일차진료의, 복지서비스 제공, 입원의뢰 등 - Complex Continuing Care - Long Term Care Home

자료출처 :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42)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 캐나다는 2007년부터 환자분류체계인 CMGs(Casemix groups)[43]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th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라는 비영리기관을 통해 국가적 단위의 재활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재활보고시스템(National Rehabilitation Reporting System, NRS)를 운영하고 있음.[44]

- NRS에 포함되는 조사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행정자료, 건강특성, 활동수준, 참여수준의 5가지로 구분됨.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주거상태 등

② 행정자료 :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재원기간, 자원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입퇴원을 위한 대기기간 및 서비스 제공자 유형

③ 건강특성 : 진단명, 합병증 등

④ 활동 및 참여수준 : 신체기능회복(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에 의한 기능상태 및 인지기능 등의 활동 및 참여수준

□ NRS는 17개의 RCG(Rehabilitation Client Group)으로 구성되는데 입원시 연령,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사용하여 환자입원 에피소드를 83개 RPG(Rehabilitation Patient Group)로 분류함. 환자 퇴원시에는 환자의 재원기간·RPG·재활비용가중치를 바탕으로 입원비용을 산출함.

□ 캐나다 재활의료체계에서 아급성기 상태에서는 재활병동(유니트) 또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함. 2019-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RCG를 분석한 결과 입원 당시에는 신체기능회복(FIM) 점수가 46.9점, 퇴원 당시는 68.5점로 상승한 결과를 보여줌. 그러나 이후 일차 의료기관에서 지역기반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가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없음.

43) CMGs는 각 질병별 응급입원환자에 대한 의료활동, 비용, 병원자원의 사용이나 환자의 재원기간 등을 측정하고 표준화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개발됨.

44)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표 31. 캐나다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17개 질환군

연번	질환군
1	뇌졸중 (stroke)
2	뇌기능장애 (Brain Dysfunction)
3	신경계 질환 (Neurological Conditions)
4	척수손상 (Spinal Cord Dysfunction
5	사지절단 (Amputation of Limb)
6	관절염 (Arthritis)
7	통증 (Pain Syndromes
8	정형외과계 질환 (Orthopedic Conditions): 고관절부 골절 (hip fracture), 전고관절 대치술 (hip replacement), 슬관절 치환술 (Knee replacement
9	심장질환 (Cardiac Conditions)
10	호흡기 질환 (Pulmonary Disorders
11	화상 (Burns)
12	선천적 장애 (Congenital Deformities)
13	기타 장애 (Other Disabling Impairments)
14	다발성 손상 (Major Multiple Trauma)
15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	쇠약 (Debility)
17	의학적 복합상태 (Medically Complex)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1.3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의료전달체계[45][46]

□ 캐나다 온타리오 주 보건 및 장기요양부(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서 61개 병원에 대한 입원재활 치료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온타리오 주는 2000년 6월 뇌졸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예방, 치료, 재활로 범주화하고 체계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함.

□ 온타리오 주의 재활치료체계의 비전은 뇌졸중을 감소시키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미션은 뇌졸중 예방, 관리, 회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임.

- 재활치료체계의 기반은 교육, 평가, 연구 및 의학적 표준화된 절차로 구축되어 예방, 급성기 관리, 지속적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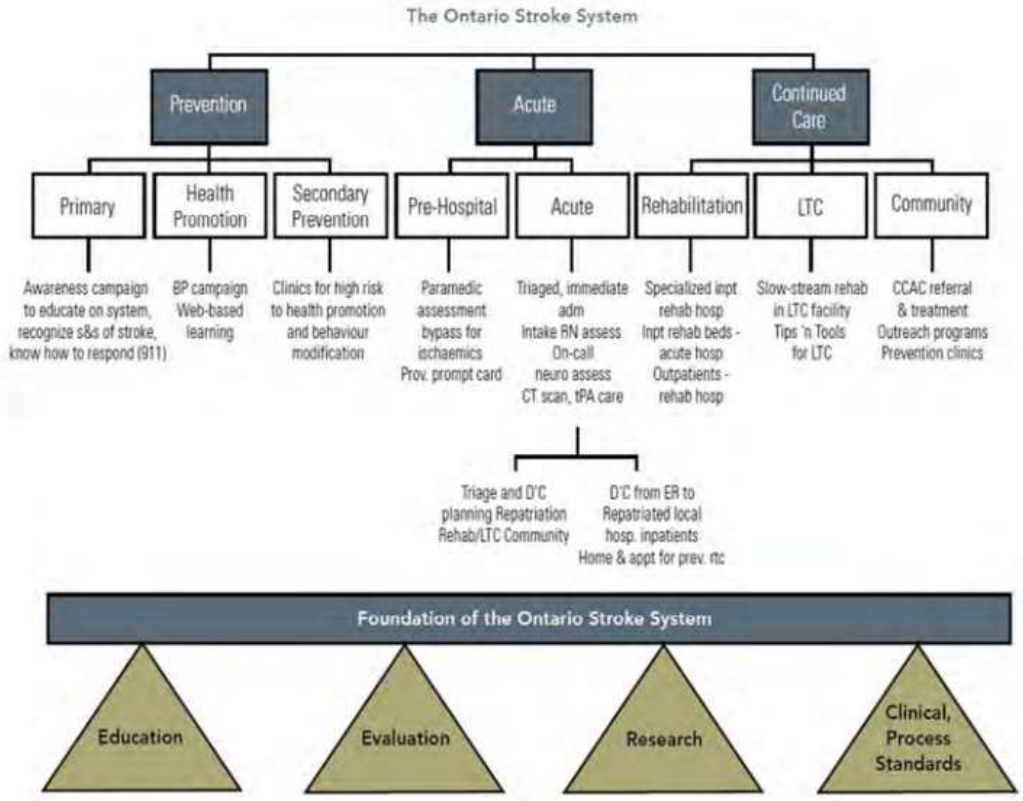

그림 27.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치료체계

자료출처 :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45)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46)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치료체계는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 사망률과 발생률을 줄이고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9개의 권역 뇌졸중 센터, 18개 지역 뇌졸중 센터와 43개 뇌졸중 예방센터를 운영함.

□ 온타리오 주에서 급성기 관리와 입원재활 이후 건강증진, CCAC(Community Care Access Centre), 외래 클리닉, 예방, CCC(Complex Continuing Care), Long Term Care Home 단계로 넘어감.

- CCAC(Community Care Access Centre)는 2021년부터 'Home and Community Care Support Service'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온타리오 주에 42개소가 존재함. 각 센터에서는 사례관리자의 구체적인 평가 하에 방문재활치료, 일차 진료의, 복지서비스 제공, 입원의뢰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증상이나 상태별로 방문재활의 횟수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 제시됨.
- CCC(Complex Continuing Care)는 복합지속치료로 캐나다의 보건 및 장기요양부 주관으로 제공됨. 이는 재활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내 지정 병상으로 설치되며 국내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 즉,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가능하지 않는 치료서비스를 장기간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함.

□ 2016년 온타리오 심장 네트워크와 뇌졸중 네트워크가 통합된 CorHelath Ontario 정부지원 민간단체가 출범하면서 뇌졸중 재활치료 현황을 분석한 총조사(Census)를 발간함.

- 2019~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환자가 입원재활까지 8일이 소요되고, 30%의 환자가 하루 평균 69분의 재활치료를 받으며 34%의 환자가 가정에서의 재활치료를 받고 9회의 방문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징은 입원재활보다 방문재활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경증의 경우 입원재활보다는 가정에서의 방문재활서비스를 더 활용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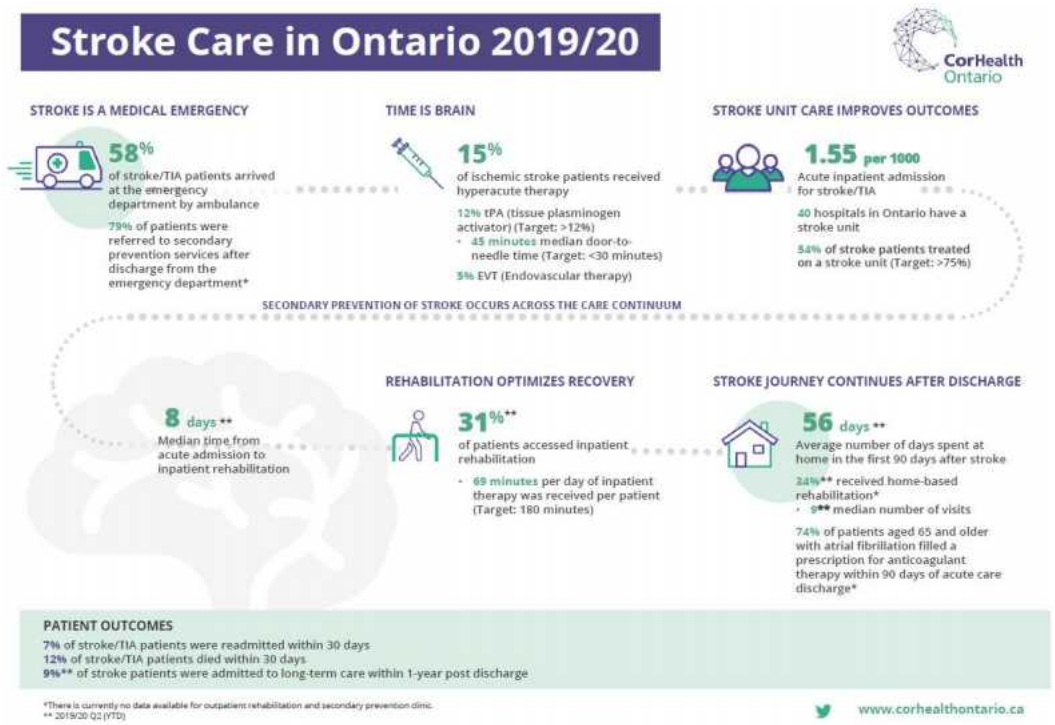

그림 28.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치료 현황

자료출처 :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 선행연구에 따른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뇌졸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기관간 치료결과 효과 차이는 없다는 결과도 나타남.

표 32. 캐나다 온타리오 주 뇌졸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효과

선행연구	연구내용
Morik K. (2013)	• 2001년 1월 ~ 2010년 12월 자료 • 급성뇌졸중 또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대상 전달체계 시행 전후 효과 평가 • 뇌졸중 센터에서 관리를 받은 환자 증가 (40%➜46.5%) • 장기요양시설 퇴원율 감소 (16.9%➜14.8%) • 출혈성 뇌졸중 환자 30일 사망률 감소 (38.3%➜34.4%) • 허혈성 뇌졸중 환자 30일 사망률 감소 (16.3%➜15.7%)
Ruth E. (2015)	• 병상수 Large(〉202)에 비해 병상수가 small(〈126) 인 경우 7일 내 사망률 발생 비율이 1.47배 높고, 30일 내 사망률은 1.37배 높음.
Olivia L.L. (2015)	• 지역뇌졸중센터 및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치료결과 비교

선행연구	연구내용
	• 치료와 처치를 받는데 지역센터가 더 오래 걸렸으며 대기시간도 더 길었음. 급성기 치료에 대한 센터의 관리와 인식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법이 필요함.

자료출처 :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03/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 및 이용현황

1. 재활의료 자원현황
2. 재활의료 이용현황

01 재활의료 자원현황

가 성남권 재활 의료자원

1.1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재활치료의 특성에 따라 급성기 재활치료, 회복기(아급성기) 재활치료, 유지기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급성기 및 아급성기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외래 기반으로 재활치료를 제공함.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기능 유지를 위한 만성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성남권 내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9개소로 종합병원급 이상 11개소, 병원급 32개소, 한방병원 13개소, 요양병원 42개소, 재활의학과 의원 31개소로 요양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의원의 경우 표시과목이 재활의학과인 기관으로 한정하였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등 치료인력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규모를 확인하였음.

그림 29.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요양종별 비율 (%)

표 33.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2)

단위 : 개소, %

구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의원	합계
성남권	개소	11	32	13	42	31	129
	%	8.5	24.8	10.1	32.6	24.0	100.0
성남시 수정구		2	4	-	6	3	15
성남시 중원구		1	2	1	2	5	11
성남시 분당구		4	7	3	6	10	30
하남시		-	8	3	6	4	21
용인시 기흥구		2	4	4	10	2	22
용인시 처인구		2	3	2	7	1	15
용인시 수지구		-	3	-	5	5	13
광주시		-	1	-	-	1	2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찾기, 2022,3/4 기준
주 1)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정의: (병원급 이상) 물리치료실 1개 이상 설치 및 물리치료사가 있는 기관
(의원) 표시과목이 재활의학과인 의원

□ 정부 및 공단 등에서는 재활의료의 전문성 확보 및 보상체계 마련 검토 등을 위해 재활의료 관련 시범사업 및 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남권 내 지정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의료기관이 중복 지정된 경우가 있음.

1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은 재활의료체계 확립 등을 위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2020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함.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 중 지정함.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45개소로, 성남권 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3개소임.

2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음. 해당 사업은 뇌혈관질환 환자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의료적 · 지역사회 자원)와 연계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전국 6개 권역에 49개 의료기관(급성기 의료기관 13개소, 연계의료기관 36개소)이 참여 중임.

□ 성남권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성기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1개소이며, 경기권역 연계의료기관 중 성남권에 위치한 기관은 총 2개소임.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능력 상실률 최소화 및 직업복귀 촉진하고자 인력·시설·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전국 14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성남권 내 재활인증의료기관은 6개소임.

표 34. 성남권 재활관련 시범사업 등 지정의료기관 현황 (2022)

구분	개소수	기관명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3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린병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1	급성기 의료기관	분당서울대병원
		연계 의료기관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6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린병원	

자료출처 :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배포일 2020.12.11.
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실시, 배포일 2020.12.23.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재활인증의료기관현황(2022.1.1.기준)

1.2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건강 주치의 1단계 시범사업('18.5.~'20.5.)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20.6.~'21.9.29.)을 시행하였으며, 장애인과 의료기관의 참여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확대 방안을 포함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21.9.30.~).[47]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도록 함. 일반건강관리서비스는 진료과목의 제한이 없으나,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음.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2021.9.

□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임.

□ 서비스 영역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구분되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 관리,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검진바우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47)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2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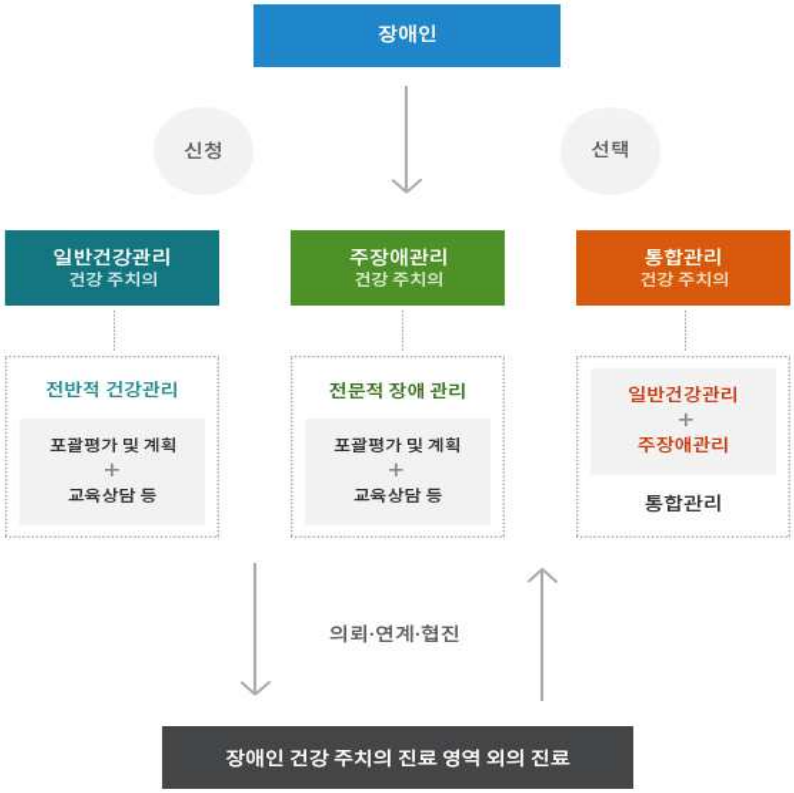

그림 30.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서비스 체계도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은 전국 609개, 경기도 115개, 성남권 22개가 있음.

- 성남권 22개 의료기관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재활의학과인 의료기관은 8개 기관이며 주로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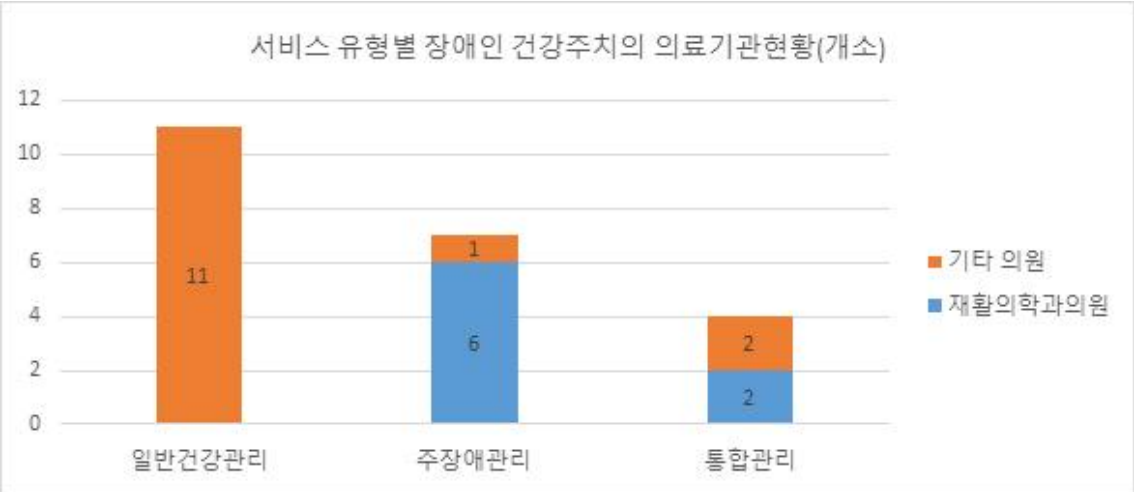

그림 31. 성남권 서비스 유형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현황 (개소)

표 35. 성남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2022)

단위 : 개소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총합계
성남권	11	7	4	22
성남시 수정구	-	1	-	1
성남시 중원구	1	-	-	1
성남시 분당구	3	2	1	6
하남시	1	2	2	5
용인시 기흥구	2	-	1	3
용인시 처인구	2	-	-	2
용인시 수지구	2	1	-	3
광주시	-	1	-	1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수집 2022.12.13.)

1.3 재활의료인력

□ 재활의료인력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를 들 수 있음. 성남권 내 재활의료인력에 대한 직종별 현황을 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59명, 물리치료사 2,274명, 작업치료사 532명, 의료사회복지사 172명이었음.

표 36. 성남권 재활의료인력 현황 (2022)

단위 : 명

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성남권	159	2,274	532	172
성남시 수정구	16	233	51	28
성남시 중원구	6	148	10	6
성남시 분당구	67	685	178	37
하남시	20	323	79	11
용인시 기흥구	17	266	74	48
용인시 처인구	5	144	16	19
용인시 수지구	17	226	67	10
광주시	11	249	57	13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기관현황, 2022,3/4 기준

□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 평균 재활 치료인력 현황을 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수는 1.2명, 물리치료사는 8.9명, 작업치료사는 3.9명, 의료사회복지사는 0.9명였음.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급 이상 또는 요양병원 등 필수인력으로 규정된 기관 중심으로 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기관당 평균이 1명 이하로 나타남.

□ 지역별 차이를 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최소 0.3명에서 최고 3.0명으로 나타났고, 물리치료사는 최소 3.6명에서 최대 45.0명으로 편차가 컸음. 작업치료사는 최소 0.8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나타났고, 의료사회복지사는 최소 0.3명에서 최대 1.3명이었음. 기관당 평균 재활의료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시였는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적고, 규모가 큰 전문재활병원 영향으로 기관당 평균이 높게 나타남.

표 37.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당 평균 치료인력 (2022)

단위 : 명/개소

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수[1)]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성남권	1.2	8.8	3.8	0.9
성남시 수정구	1.0	7.1	3.2	1.1
성남시 중원구	0.5	5.3	0.8	0.3
성남시 분당구	2.3	13.7	6.0	1.3
하남시	0.8	8.1	3.7	0.4
용인시 기흥구	0.6	6.3	2.5	1.3
용인시 처인구	0.3	3.6	1.0	0.5
용인시 수지구	1.3	8.3	5.1	0.8
광주시	3.0	45.0	20.0	1.0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찾기, 2022,3/4 기준
주1)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성남권 재활 보건자원

1.1 보건소

□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운영 중이며,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및 지역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비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프로그램은 보건소 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전문의 무료진료, 재활장비 대여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나들이 행사, 후천적 장애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8. CBR 대상자 군별 서비스 분류

구분	군 분류		세부프로그램(예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건강관리서비스	필수	선택	배뇨·배변관리, 욕창·피부관리, 영양관리, 구강관리, 통증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재활훈련서비스	필수	선택	재활운동교육, 일상생활동작훈련, 관절구축예방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사회참여서비스	선택	선택	외출/나들이/체험, 가족소모임 등
자원연계서비스	필수	선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활센터, 보조기기센터, 행정기관 등과 연계
자기역량서비스	선택	필수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나를 이해하기,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우리지역 자원 활용하기 등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22.

□ 사업 목표 대상자 수는 지역사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중 5% 수준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며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위의 기준에 따르면 성남권의 등록 장애인 10만명 중 사업대상자 수는 약 5천명 정도이며 지역별로 사업대상자 수는 평균 630명 수준임.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는 전국 254개소, 경기도 116개소, 성남권 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표 39. 성남권 CBR 실시기관 수, 등록장애인 수 및 CBR 사업 목표 대상자 수 (2021)

구분	CBR 실시기관 수 (보건소) (개소)	등록장애인 수 (명)	CBR 사업 목표 대상자 수 (명) (등록장애인의 5%)
성남권	8	101,885	5,094
성남시 수정구	1	11,053	553
성남시 중원구	1	11,022	551
성남시 분당구	1	14,022	701
하남시	1	11,832	592
용인시 기흥구	1	14,583	729
용인시 처인구	1	13,253	663
용인시 수지구	1	9,157	458
광주시	1	16,963	848

자료출처 : 1) CBR 실시기관(보건소)수 : 보건복지부 등.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22.
2) 등록장애인 수: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2021.12. 기준)

1.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장애인건강권법」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주요기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는 중앙(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3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선정 계획. 2022.6.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3개소가 지정되었고[48],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14개소가 운영 중임. 경기도는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임.

- 향후 지역별로 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등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9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그림 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현황

자료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48) 헬스코리아뉴스.「복지부,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신규 공모」. 2021.4.12.

다 성남권 재활 복지자원

1.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쉼터, ⑥ 피해장애아동 쉼터, ⑦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됨.

□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등 총 9종으로 시설의 기능은 아래와 같음.

표 4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 · 취미 ·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 미술 ·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등 자료에서 확인한 2020년 기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1,500여개 시설이 있으며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순으로 기관수가 많았음.

-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함으로 시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음.

□ 성남권은 전체 39개 기관으로 성남시 및 용인시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의 수가 많았음. 광주시는 장애인 복지관이 전무하였고,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는 시별로 한 개소씩 있었음. 기타 시설로는 성남시에 점자도서관 1개소, 용인시에 재활치료시설 5개소를 운영 중임.

표 4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2021)

구분	전체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체육관	수어통역 센터	생활이동 지원센터	기타*
전국	1,519	258	797	28	199	164	73
경기도	264	38	143	4	32	31	16
성남권	39	6	25	-	4	4	6
성남시	15	2	10	-	1	1	1
하남시	6	1	3	-	1	1	-
용인시	13	3	8	-	1	1	5
광주시	6	-	4	-	1	1	-

*기타 시설 : 점자도서관(19개소),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1개소), 수련시설(1개소), 재활치료시설(52개소)
성남권 기타시설 현황 : 점자도서관 성남시 1개소, 재활치료시설 용인시 5개소
자료출처 :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2020.12월 말 기준)

□ 장애인 체육관으로 등록된 시설이 성남권에는 전무하였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성남시 1개소, 광주시 2개소로 3개소를 찾아볼 수 있었음.

-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광주시 성분도복지관(체육관), 광주시 SRC재활체육관

1.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제공서비스 특성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지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는 이용자들을 24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보호하는 생활시설의 종류로 볼 수 있고, 그 외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시설의 종류로 볼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사업개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

표 42. 노인복지시설 구분 및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기관, 주(야)간보호서비스기관, 단기보호서비스기관, 방문목욕서비스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복지시설의 주이용자로 볼 수 있는 노인인구수는 성남권에 약 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며, 장기요양수급자는 약 4만명 수준임.

표 43.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현황 (2021)

구분	총인구수	노인인구수	노인인구비율	장기요양수급자수
전국	51,638,809	8,851,033	17.1	1,097,462
경기도	13,565,450	1,881,464	13.9	223,611
성남권	2,715,832	385,222	14.2	40,835
성남시 수정구	235,988	39,127	16.6	3,817
성남시 중원구	210,777	35,249	16.7	3,700
성남시 분당구	484,183	63,715	13.2	7,258
하남시	320,087	41,540	13.0	4,250
용인시 기흥구	441,742	59,908	13.6	4,972
용인시 처인구	260,198	39,724	15.3	6,369
용인시 수지구	375,568	50,631	13.5	4,738
광주시	387,289	55,328	14.3	5,731

자료출처 :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21.

1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됨.

표 44.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5명 ~ 9명 이하)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0세대 이상)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보면 전국 352개소에 약 15,000명이 이용하고 있음. 성남권은 15개소 시설에 3천여 명이 입소하고 있음. 성남권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가 7개소로 시설수는 가장 많지만 용인시는 대규모 단지의 노인복지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3개소에 입소인원이 가장 많게 나타남.

표 45.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주
전국	352	15,414	209	7,574	107	614	36	7,226
경기도	117	6,409	70	2,444	33	210	14	3,755
성남권	15	3,183	5	780	3	31	7	2,372
성남시	7	838	1	10	1	21	5	807
하남시	2	280	1	60	-	-	1	220
용인시	3	2,041	1	694	1	2	1	1,345
광주시	3	24	2	16	1	8	-	-

*입소인원 현원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됨.

표 46.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보면 전국 5,725개소에 약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음. 성남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217개소로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음. 성남권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가 123개소, 입소인원 4천여 명으로 관련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입소인원
전국	5,725	170,997	3,844	156,114	1,881	14,883
경기도	1,926	55,079	1,315	50,272	611	4,807
성남권	217	7,782	156	7,300	61	482
성남시	46	1,722	31	1,601	15	121
하남시	19	605	14	580	5	25
용인시	123	4,279	88	3,993	35	286
광주시	29	1,176	23	1,126	6	50

*입소인원 현원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나이가 60세 이상(경로당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됨.

표 48.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면 전국 약 6만 9천개소이며,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성남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1,600여 개로 지역별로는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순으로 시설이 많음.

표 4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전국	69,005	398	67,316	1,291
경기도	10,082	62	9,863	157
성남권	1,695	11	1,678	6
성남시	394	6	384	4
하남시	150	1	149	-
용인시	860	3	855	2
광주시	291	1	29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4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로 구분됨.

표 5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기능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약 7천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인원은 15만 명 정도임. 성남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242개소로 약 5천여 명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성남권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가 시설 개소 및 이용인원이 가장 많았고,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가 그 뒤를 이음.

표 5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2021)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전국	7,212	153,644	2,656	49,645	2,321	47,665	73	363
경기도	1,555	27,779	575	9,436	510	10,361	8	50
성남권	242	5,087	87	1,400	76	1,831	-	-
성남시	73	1,831	27	656	24	565	-	-
하남시	40	525	14	119	14	314	-	-
용인시	108	2,235	37	405	34	885	-	-
광주시	21	496	9	220	4	67	-	-

구분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전국	1,596	12,198	95	967	86	4,800	385	38,006
경기도	371	1,632	22	120	28	2,276	41	3,904
성남권	61	394	3	50	6	583	9	829
성남시	15	128	1	20	1	-	5	462
하남시	10	3	-	-	1	-	1	89
용인시	29	84	1	-	4	583	3	278
광주시	7	179	1	30	-	-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

02 재활의료 이용현황

가 국내 병원급이상 재활의료 청구 현황

□ 국내 재활의료 관련 진료비는 이학요법료로 적용을 받으며 이학요법료는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제4절 기타이학요법료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물리치료료는 대부분 물리적 기제를 사용하는 치료적 모달리티(modality)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재활치료료와 전문재활치료료는 기능훈련이나 재활을 위한 치료들로 구성되어 있음. 기타 이학요법료는 일부 항목만이 재활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음[49].

표 52. 재활의료 수가 구분

구분 (수가코드수)	행위 산정 기준
기본물리치료료 (10)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단순재활치료료 (19)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전문물리치료료 (20)	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

49) 호승희 등.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1.

구분 (수가코드수)	행위 산정 기준
	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 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2년 2월판.

□ 국내 치료적 재활의료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학요법료 중 기본, 단순,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된 수가현황으로 한정하여 현황을 살펴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1.1월~12월, 심사년월: 2021.1월~2022.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2019년 진료분부터 서면, DRG 청구건 제외

- 청구금액은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공단 청구비용으로 급여 및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임.
- 총사용량(또는 총실시횟수)은 1회투여량 X 1일 실시횟수 X 총실시횟수(투여일수)으로 정의함.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수진자가 진료과목, 치료종류 등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음

- 기본물리치료료 및 단순재활치료료는 일반재활의료로, 전문재활치료료는 전문재활의료로 재정의하였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재활의료이용 환자수는 약 1,112만 명으로 이 중 9%가 전문재활의료를 이용한 환자였음.

- 재활의료 청구 환자수는 수가코드별 진료과목별 실환자수를 합산한 인원이므로 한 환자가 여러 종류의 재활의료를 이용한 경우와 여러 진료과에서 재활의료를 이용한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음.

□ 재활의료 총사용량은 117,566천 건이었으며 이 중 42.1%가 전문재활의료 이용건이었음. 재활의료 청구진료금액은 1조 362억 원이었고, 이 중 80.7%가 전문재활의료 청구금액이었음.

□ 전문재활의료 이용환자수는 전체 재활의료 이용자 중 일부이나 환자당 재활의료이용건수는 평균 49.6건, 청구금액은 평균 83만원 수준으로 일반재활보다 월등히 높았음.

표 53. 국내 재활의료 청구 현황 (2021)

구분	환자수 (명)	총사용량 (천건)	청구진료금액 (천원)	환자당 총사용량 (건)	환자당 청구진료금액 (원)
일반재활의료	10,127,640	68,037	199,834,872	6.7	19,732
전문재활의료	999,221	49,530	836,443,289	49.6	837,095
전체	11,126,861	117,566	1,036,278,161	10.6	93,133
전문재활비율(%)	9.0	42.1	80.7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통계 재구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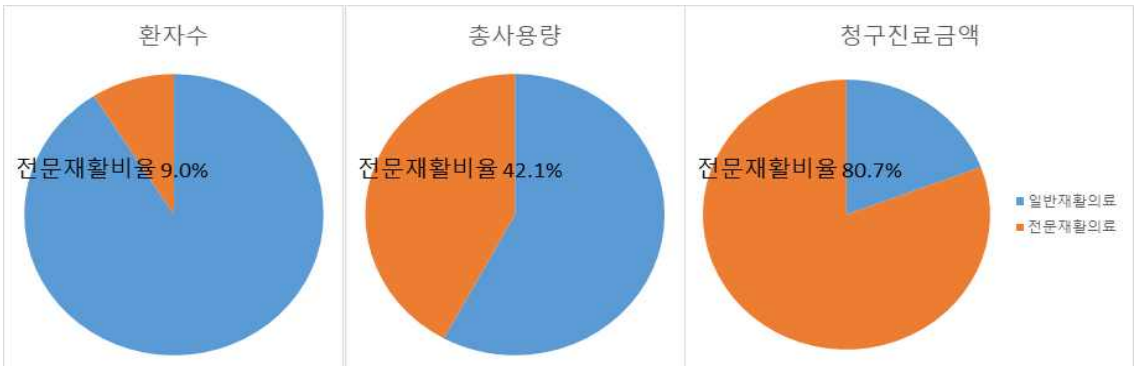

그림 34. 재활의료 청구현황 중 전문재활 구성비 (2021)

□ 재활의료이용 환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연평균 -2.4% 감소하였음.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환자수가 증가하였다가 2020년 이후는 감소하였음. 전체 환자 중 전문재활 이용환자 비율은 약 9%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림 35. 재활의료 이용환자수 (2017-2021)

표 54. 재활의료 이용환자수 (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율
일반재활(명)	11,156,727	11,320,757	11,473,070	10,362,348	10,127,640	-2.4
전문재활(명)	1,088,852	1,101,067	1,115,688	1,016,330	999,221	-2.1
전체	12,245,579	12,421,824	12,588,758	11,378,678	11,126,861	-2.4
전문재활비율(%)	8.9	8.9	8.9	8.9	9.0	0.2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통계 재구성(2021년)

□ 재활의료 총사용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1.2% 증가하였음.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총사용량 중 전문재활 비율은 42~45%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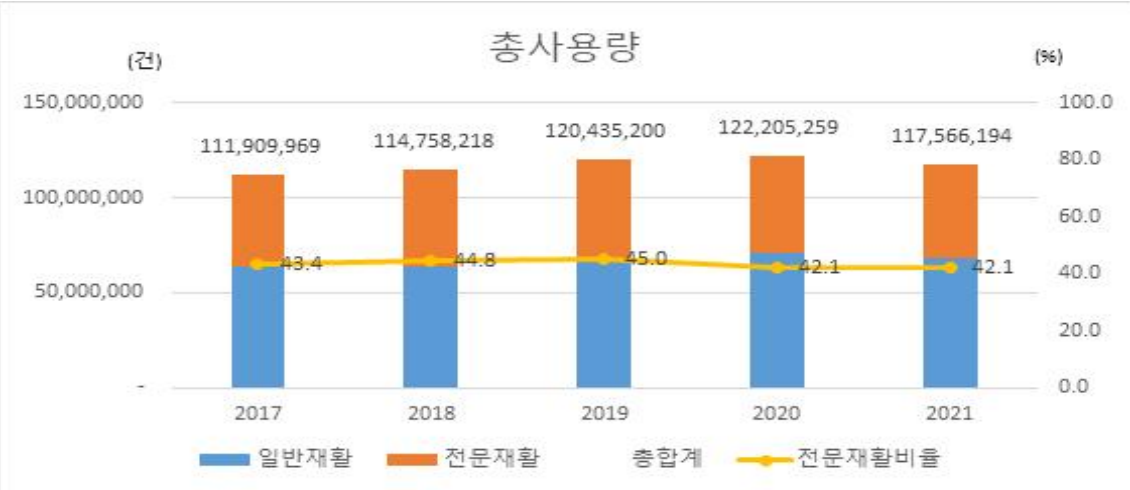

그림 36. 재활의료 총사용량 (2017-2021)

표 55. 재활의료 총사용량 (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율
일반재활 (건)	63,360,939	63,390,496	66,182,046	70,712,529	68,036,687	1.8
전문재활 (건)	48,549,030	51,367,722	54,253,154	51,492,730	49,529,507	0.5
전체	111,909,969	114,758,218	120,435,200	122,205,259	117,566,194	1.2
전문재활비율 (%)	43.4	44.8	45.0	42.1	42.1	-0.7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통계 재구성

□ 재활의료 청구진료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2.4% 증가하였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청구진료금액이 증가하다 2020년 이후로 감소하였음. 청구진료금액 중 전문재활 비율은 80~82% 수준이었음.

- 청구진료금액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가 포함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실제 총진료비보다 과소집계 되었을 수 있음.

그림 37. 재활의료 청구금액 (2017-2021)

표 56. 재활의료 청구진료금액 (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율
일반재활 (천원)	175,499,083	178,808,777	189,715,543	202,746,528	199,834,872	3.3
전문재활 (천원)	765,586,713	823,844,421	887,170,350	856,241,423	836,443,289	2.2
전체	941,085,796	1,002,653,197	1,076,885,893	1,058,987,951	1,036,278,161	2.4
전문재활비율 (%)	81.4	82.2	82.4	80.9	80.7	-0.2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통계 재구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수가 많았던 상위 10대 치료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일반재활의료에서는 MM020(심층열치료), MM015(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080(간섭파전류치료[ICT]), MM070(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10(표층열치료), 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MM101(단순운동치료), MM102(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 MM052(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MM011(한냉치료(콜드팩))순으로 환자가 많았음.
- 전문재활의료에서는 MM105(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31(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MM132(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2부위이상각각실시), MM301(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MM112(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51(기능적전기자극치료), MM113(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302(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MM114(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MX141(연하장애재활치료)순으로 환자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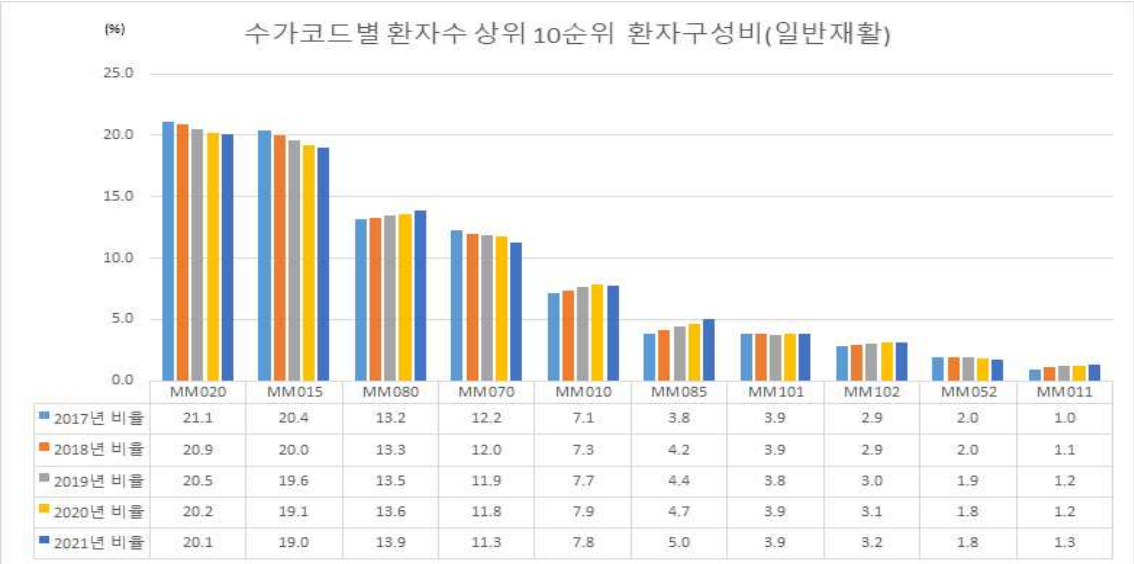

	MM020	MM015	MM080	MM070	MM010	MM085	MM101	MM102	MM052	MM011
2017년 비율	21.1	20.4	13.2	12.2	7.1	3.8	3.9	2.9	2.0	1.0
2018년 비율	20.9	20.0	13.3	12.0	7.3	4.2	3.9	2.9	2.0	1.1
2019년 비율	20.5	19.6	13.5	11.9	7.7	4.4	3.8	3.0	1.9	1.2
2020년 비율	20.2	19.1	13.6	11.8	7.9	4.7	3.9	3.1	1.8	1.2
2021년 비율	20.1	19.0	13.9	11.3	7.8	5.0	3.9	3.2	1.8	1.3

그림 38. 수가코드별 환자수 상위 10순위 환자구성비 (일반재활)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통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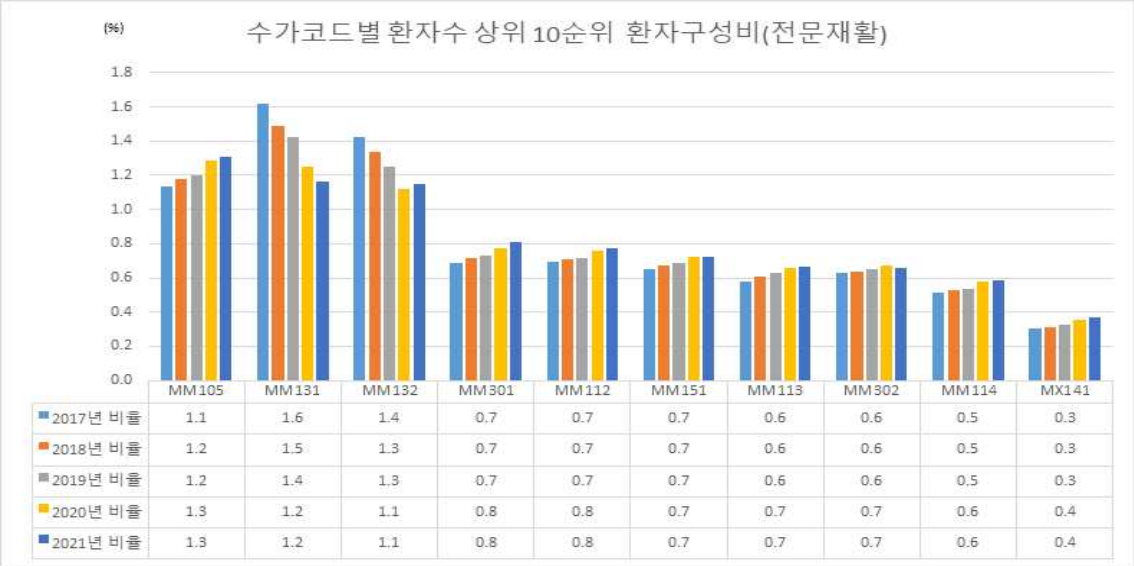

	MM105	MM131	MM132	MM301	MM112	MM151	MM113	MM302	MM114	MX141
2017년 비율	1.1	1.6	1.4	0.7	0.7	0.7	0.6	0.6	0.5	0.3
2018년 비율	1.2	1.5	1.3	0.7	0.7	0.7	0.6	0.6	0.5	0.3
2019년 비율	1.2	1.4	1.3	0.7	0.7	0.7	0.6	0.6	0.5	0.3
2020년 비율	1.3	1.2	1.1	0.8	0.8	0.7	0.7	0.7	0.6	0.4
2021년 비율	1.3	1.2	1.1	0.8	0.8	0.7	0.7	0.7	0.6	0.4

그림 39. 수가코드별 환자수 상위 10순위 환자구성비 (전문재활)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통계 재구성

표 57. 재활치료 수가코드 목록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한글명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사101	MM010	표층열치료
	사101주2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사101-1가	MM011	한냉치료(콜드팩)
	사101-1나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사102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사103	MM030	자외선치료[1일당]
	사104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사104주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사105	MM090	마사지치료[1일당]
	사106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사110	MM042	파라핀욕[1일당]
	사111가	MM041	수치료-증기욕치료[1일당]
	사111나	MM043	수치료-정규욕조치료[1일당]
	사111다	MM049	수치료-대조욕치료[1일당]
	사111라(1)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1일당]
	사111라(2)	MM045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1일당]
	사111마	MM046	수치료-하버드탱크치료[1일당]
	사111-1	MM170	유속치료[1일당]
	사112가	MM051	간헐적견인치료-경추견인
	사112나	MM052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사113가	MM060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사113나	MM061	전기자극치료-근력강화 치료
	사115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사116가	MM102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사116나	MM103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사117	MM161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사119	MM190	압박치료[1일당]
	사120	MM20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서121	MX121	이온삼투요법[1일당]
제3절	사121가	MM047	풀치료-보행풀[1일당]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한글명
전문재활치료료	사121나	MM048	풀치료-전신풀[1일당]
	사122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가	MM111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사123나	MM112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사123다	MM113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사124	MM11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사125	MM120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사126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사127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
	사127주2	MM132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2부위이상각각실시
	사128가	MM141	재활사회사업-개인력조사
	사128나	MM142	재활사회사업-사회사업상담
	사128다	MM143	재활사회사업-가정방문
	사129	MM290	호흡재활치료[1일당]
	사130가	MM301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사130나	MM30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사130나주2	MM304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사131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서141	MX141	연하장애재활치료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2년 2월판.

나 재활환자 특성별 의료이용 현황

□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 지역별 필수의료 현황 파악을 위해 재활환자 특성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였음. 이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성남권 내 재활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지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재활 환자수 : 전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상병으로 의료이용 청구건이 2회 이상 있었던 재활상병자 수
- 재활환자 중 치료환자 비율(%): 재활상병자 중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비율
- 재활 퇴원환자 재택복귀율(%) : 재활치료 퇴원환자 중 퇴원 후 4주(28일)이내 재입원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재활환자수는 성남권이 인구천명당 80.5명으로 전국 평균(94.7명)보다 낮았음.

- 성남권 내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 수지구가 70.2명으로 가장 낮았고, 성남시 중원구가 99.9명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대별로 재활환자수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인구수대비 재활환자가 많았고, 장애여부별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인구수대비 재활환자가 많았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활환자수를 추정해보면 성남권 내 재활환자수는 약 21만 명이며 성남권 내 지역별로 환자수는 성남시 분당구, 광주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순으로 많았음.

표 58. 인구당 재활환자수 (2020)

단위 : 명/1천명

구분	전체	연령대별			장애여부별	
		0-18세	19-64세	65세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전국	94.7	36.6	65.9	270.2	83.4	306.9
경기도	82.8	36.6	61.8	253.6	73.9	284.4
성남권	80.5	37.5	59.9	241.0	72.4	289.7
성남시 수정구	94.1	45.9	66.0	258.9	84.2	298.1
성남시 중원구	99.9	48.0	71.7	268.4	89.3	296.8
성남시 분당구	79.4	36.8	60.0	248.7	72.2	321.6
하남시	72.8	37.1	53.1	229.3	64.6	279.7
용인시 기흥구	71.6	35.3	52.4	227.9	64.4	285.8
용인시 처인구	82.1	34.9	61.9	231.0	72.8	255.9
용인시 수지구	70.2	32.0	50.8	230.5	64.2	314.2
광주시	87.6	41.2	69.5	240.9	79.1	275.7

자료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재구성.

표 59. 재활환자수 (추정) (2020)

단위 : 명

구분	전체	연령대별			장애여부별	
		0-18세	19-64세	65세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전국	4,908,208	300,303	2,314,932	2,295,640	4,102,946	808,076
경기도	1,111,757	85,062	576,445	450,220	950,154	162,030
성남권	216,525	17,751	110,900	87,958	187,477	29,051
성남시 수정구	22,744	1,433	11,355	9,952	19,409	3,336
성남시 중원구	21,591	1,329	11,046	9,228	18,314	3,279
성남시 분당구	38,289	3,227	20,048	15,021	33,814	4,469
하남시	21,363	1,960	10,782	8,615	18,239	3,108
용인시 기흥구	31,564	3,117	15,499	12,932	27,466	4,100
용인시 처인구	21,141	1,501	10,951	8,681	17,795	3,344
용인시 수지구	26,384	2,482	12,675	11,242	23,546	2,853
광주시	33,468	2,680	18,482	12,305	28,912	4,561

자료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재구성.

□ 재활환자 중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성남권은 4.1%로 전국 평균(4.5%)보다 낮았음. 연령대별로는 18세 이하의 전문재활 치료비율이 높았고, 장애여부별로는 장애인의 전문재활 치료비율이 높았음. 성남권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 수정구가 5.1%로 높았고, 성남시 중원구 4.7%,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및 광주시 4.0% 순이었음.

표 60. 재활환자 중 전문재활치료환자 비율 (2020)

단위 : %

구분	전체	연령대별			장애여부별	
		0-18세	19-64세	65세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전국	4.5	7.6	3.3	5.2	3.0	11.9
경기도	3.9	6.9	2.9	4.8	2.6	11.8
성남권	4.1	8.7	2.8	4.7	2.7	12.9
성남시 수정구	5.1	9.8	4.4	5.2	4.0	11.5
성남시 중원구	4.7	10.5	4.0	4.6	3.5	11.3
성남시 분당구	3.6	8.0	2.1	4.6	2.3	13.4
하남시	3.9	7.6	2.8	4.5	2.5	12.2
용인시 기흥구	4.0	8.8	2.3	4.9	2.5	14.5
용인시 처인구	4.0	8.2	2.7	5.0	2.6	11.7
용인시 수지구	3.9	7.4	2.0	5.3	2.4	16.2
광주시	4.0	10.1	3.1	4.0	2.7	12.5

자료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재구성.

□ 성남권 재활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요양병원이 52.7%로 가장 높았고, 의원 19.8%, 병원 16.8%, 종합병원 6.2%, 상급종합병원 4.5% 순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음.

□ 성남권 지역별로도 요양병원 및 의원의 의료이용률이 대부분 높았는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수정구, 광주시는 병원의 의료이용이 높았음.

표 61. 재활입원 의료기관 종별 분포 (2020)

단위 :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전국	5.1	9.5	23.8	55.3	6.2
경기도	3.9	7.6	22.4	56.5	9.7
성남권	4.5	6.2	16.8	52.7	19.8
성남시 수정구	4.0	8.1	21.0	44.7	22.3
성남시 중원구	3.4	7.4	29.8	45.3	14.1
성남시 분당구	7.1	6.2	17.4	63.4	5.9
하남시	3.4	7.8	14.5	57.3	17.1
용인시 기흥구	3.8	4.7	10.7	51.6	29.1
용인시 처인구	3.2	5.6	8.8	54.2	28.2
용인시 수지구	5.5	2.8	13.2	54.6	23.9
광주시	5.1	10.0	26.5	47.0	11.4

자료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재구성.

□ 성남권 재활 퇴원환자의 재택복귀율은 89.8%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90.5%)과도 유사함. 연령대 별로는 18세 이하의 재택복귀율은 64.3%로 낮았고 19세 이상은 90% 이상으로 차이가 있었음. 장애여부별로는 비장애인 94.1%, 장애인 85.2%였음.

□ 성남권 지역별로 보면 편차는 있으나 80%이상의 재택복귀율을 보였음. 18세 이하 재택복귀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성남시 분당구가 85.7%로 높았고, 성남시 수정구 74.2%, 용인시 처인구 69.6%순이었음.

표 62. 재활 퇴원환자 재택복귀율 (2020)

단위 : %

구분	전체	연령대별			장애여부별	
		0-18세	19-64세	65세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전국	90.5	65.3	92.4	91.4	93.6	87.2
경기도	89.2	61.3	92.0	90.5	93.0	85.2
성남권	89.8	64.3	93.3	90.6	94.1	85.2
성남시 수정구	91.8	74.2	94.4	91.8	95.5	86.8
성남시 중원구	91.3	61.9	94.6	91.3	96.6	86.0
성남시 분당구	89.9	85.7	91.5	89.6	93.8	85.4
하남시	89.6	56.5	94.4	89.5	92.8	86.5
용인시 기흥구	89.1	69.6	89.1	91.6	92.8	85.2
용인시 처인구	89.6	52.8	95.3	90.8	93.1	86.3
용인시 수지구	88.3	52.8	96.8	88.8	92.1	84.3
광주시	89.5	58.9	92.5	92.4	96.1	82.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재구성.

표 63. 전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상병코드

구분	KCD 코드	한글명칭
소아 (18세이하)	C71	뇌의 악성 신생물
	G00-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10-G12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20-G26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G35-G37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G40-G41	뇌전증 및 뇌전증지속상태
	G50-G59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G60-G64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70-G73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G80-G83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G90-G99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I60-I69	뇌혈관질환
	P00-P9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R62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T90-T98	손상 중독 ,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
성인 (19세이상)	B91	회색질척수염의 후유증
	C70-C72	수막, 뇌, 척수, 뇌신경 및 기타 중추 신경계통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D33	수막, 뇌, 기타 중추 신경계통 부위의 양성 신생물
	D32-D43	수막, 뇌, 기타 중추 신경계통 부위의 미상의 신생물
	G00-G09	중추 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10-G13	일차적으로 중추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 위축
	G20-G26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G30-G32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35-G37	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G70-G73	근신경 이행부 및 근육의 질환
	G80-G83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G91-G99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I60-I69	뇌혈관 질환
	M05-M14	염증성 다발성 관절증
	M30-M36	전신 결합조직 장애
	M45-M46	강직성 및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구분	KCD 코드	한글명칭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 후 근육골격 장애
	S14	목 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34	복부, 하배부, 골반부위에서의 신경 및 허리 척수의 손상
	S48	어깨 및 팔죽지의 외상성 절단
	S58	아래 팔의 외상성 절단
	S72-S77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손상 (S73.1 엉덩이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제외)
	S78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외상성 절단
	S88	아래 다리의 외상성 절단
	T08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04/

성남시의료원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1. 원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대상 현황
3. 원내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01 원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 성남시의료원에서 재활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치료센터의 치료실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임. 성남시의료원은 2019년 12월 진료를 시작함에 따라 2020년~2022년 연도별 실적 편차가 크므로 해당 기간 3년간 자료를 통합 분석함.

- 치료 처방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치료특성에 따라 구분을 재정의함.
- 실환자수는 치료실별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환자가 진료형태, 치료실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집계됨.

표 64.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재활 구분	전문재활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
	의료급여	급여1·2종, 급여장애인, 행려, 외국인근로자		일반재활	이학요법료 중 기본 및 단순재활치료료
	산재	산업재해, 공무원재해		기타재활	이학요법료 중 기타재활치료료
	자보	자동차보험		비급여재활	도수치료, 언어치료,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기타 행동치료
	일반	일반(보험미적용)			
	기타	의학연구소		기능검사	검사료

표 65. 치료구분별 처방코드 목록

구분	분류	처방코드	한글명칭
일반재활	사101	MM010	표층열치료
	사101주2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사101-1가	MM011	한냉치료(콜드팩)
	사101-1나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사102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사104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사104주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사105	MM090	마사지치료[1일당]
	사106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사110	MM042	파라핀욕[1일당]
	사111라(1)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1일당]
	사112가	MM051	간헐적견인치료-경추견인
	사112나	MM052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사113가	MM060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사115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사116가	MM102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사116나	MM103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사119	MM190	압박치료[1일당]
	사120	MM20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전문재활	사122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나	MM112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사123다	MM113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사124	MM11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사126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사130가	MM301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사130나	MM30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사130나주2	MM304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사131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서141	MX141	연하장애재활치료
기타재활	사44가	MM440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폐질환 운동재활치료

구분	분류	처방코드	한글명칭
비급여 재활	어4	51040	도수치료
	서122	MX122	도수치료 [1일당] (이학요법)
	소6	MZ006	언어치료 (이학요법)
	소9	MZ009	전산화 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이학요법)
	오6	NZ009	기타 행동치료-신경발달중재치료 (정신요법)
기능검사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나627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나628나(1)(가)	FB011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 I (3~5개)
	나628나(2)(나)	FB022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 II (4개 이상)
	나628나(3)	FB030	신경인지기능검사-개별검사-유형 III -시지각 발달검사
	나661-1	E6613	버그 균형검사
	나661가	E6611	도수근력검사(상지 또는 하지[체간포함])
	나661나	E6612	도수근력검사(전신)
	너771가	EY773	일상생활동작검사-기본적 일상생활능력
	너771가주	EY772	일상생활동작검사-기본적 일상생활능력 (변형된 바델지수등을 이용한 경우)
	너772	EX780	수지기능검사
	너772주2	EY781	수지기능검사(젭슨수부평가검사)
	너773	EX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너775가	EY761	등속성운동기능검사(상지)
	너775나	EY762	등속성운동기능검사(하지)
	너775다	EY763	등속성운동기능검사(척추)
	노772	EZ772	동작분석 운동역학
	노777	EZ777	동적 족저압측정
	너688	FY881	정량적감각기능검사(진동역치)
	노689	FZ689	언어전반진단검사
	노694	FZ694	덴버발달검사
	노731	FZ731	동적체평형검사

※ 기간 내 처방건수가 1건 이상인 처방코드만 포함

나 분석 결과

□ 성남시의료원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는 총 8,094명이었으며 입원환자 26.1%, 외래환자 73.9%였음.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환자가 84.8%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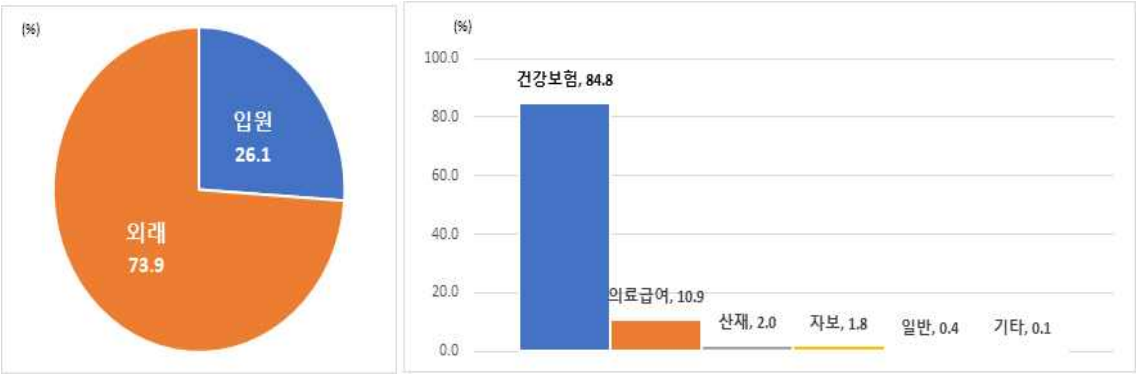

그림 40. 재활치료환자 특성 (전체, `20-`22)

표 66. 환자특성별 재활치료환자수 (`20-`22)

구분		입원		외래		전체	
		명	%	명	%	명	%
보험	건강보험	1,709	81.0	5,156	86.2	6,865	84.8
	의료급여	313	14.8	567	9.5	880	10.9
	산재	48	2.3	112	1.9	160	2.0
	자보	38	1.8	110	1.8	148	1.8
	일반	3	0.1	29	0.5	32	0.4
	기타	-	0.0	9	0.2	9	0.1
합계		2,111 (26.1)	100.0	5,983 (73.9)	100.0	8,094 (100.0)	100.0

□ 재활치료건수는 총 102,289건이었으며 진료형태별로 입원 24.9% 외래 75.1%로 외래치료 건이 많았음. 환자당 평균치료건수는 12.6건이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36.4건, 외래 4.2건으로 입원환자의 환자당 치료건이 많았음.

표 67. 환자특성별 재활치료건수 (`20-`22)

구분		입원		외래		전체	
		건	%	건	%	건	%
보험	건강보험	21,209	83.4	62,082	80.8	83,291	81.4
	의료급여	2,982	11.7	10,985	14.3	13,967	13.7
	산재	825	3.2	2,753	3.6	3,578	3.5
	자보	382	1.5	1,000	1.3	1,382	1.4
	일반	21	0.1	40	0.1	61	0.1
	기타*	-	0.0	10	0.0	10	0.0
합계		25,419 (24.9)	100.0	76,870 (75.1)	100.0	102,289 (100.0)	100.0

표 68. 환자특성별 환자당 재활치료건수 (`20-`22)

단위 : 건

구분		입원	외래	전체
보험	건강보험	36.3	4.1	12.1
	의료급여	35.1	5.3	15.9
	산재	57.4	7.4	22.4
	자보	26.3	3.5	9.3
	일반	13.3	0.7	1.9
	기타*	-	0.0	1.1
합계		36.4	4.2	`12.6

□ 치료실별 재활환자 구성비는 열전기치료실, 성인운동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순으로 많았음. 진료형태별로 보면 외래 재활환자의 치료실별 구성비는 열전기치료실, 성인운동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순으로 많았고, 입원 재활환자의 치료실별 구성비는 성인운동치료실, 열전기치료실이 절반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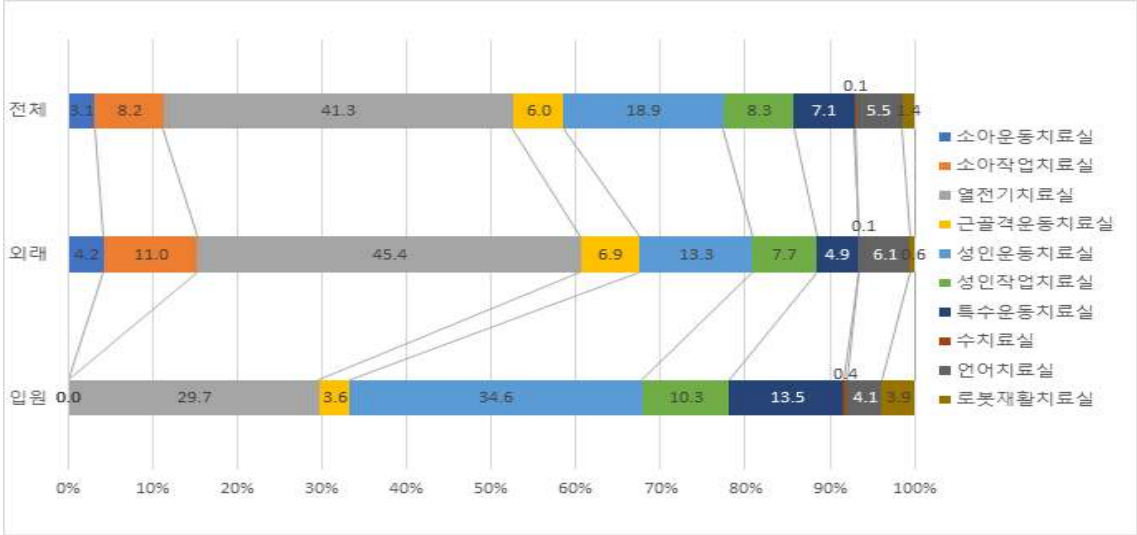

그림 41. 치료실별 재활환자 구성비 (`20-`22)

표 69. 치료실별 재활환자수 (`20-`22)

구분	입원		외래		전체	
	명	%	명	%	명	%
소아운동치료실	-	0.0	253	4.2	253	3.1
소아작업치료실	-	0.0	660	11.0	660	8.2
열전기치료실	627	29.7	2,714	45.4	3,341	41.3
근골격운동치료실	75	3.6	412	6.9	487	6.0
성인운동치료실	730	34.6	796	13.3	1,526	18.9
성인작업치료실	217	10.3	458	7.7	675	8.3
특수운동치료실	285	13.5	291	4.9	576	7.1
수치료실	8	0.4	4	0.1	12	0.1
언어치료실	87	4.1	362	6.1	449	5.5
로봇재활치료실	82	3.9	33	0.6	115	1.4
합계	2,111	100.0	5,983	100.0	8,094	100.0

□ 치료실별 재활치료건수 구성비는 열전기치료실, 성인운동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소아운동치료실 및 특수운동치료실 순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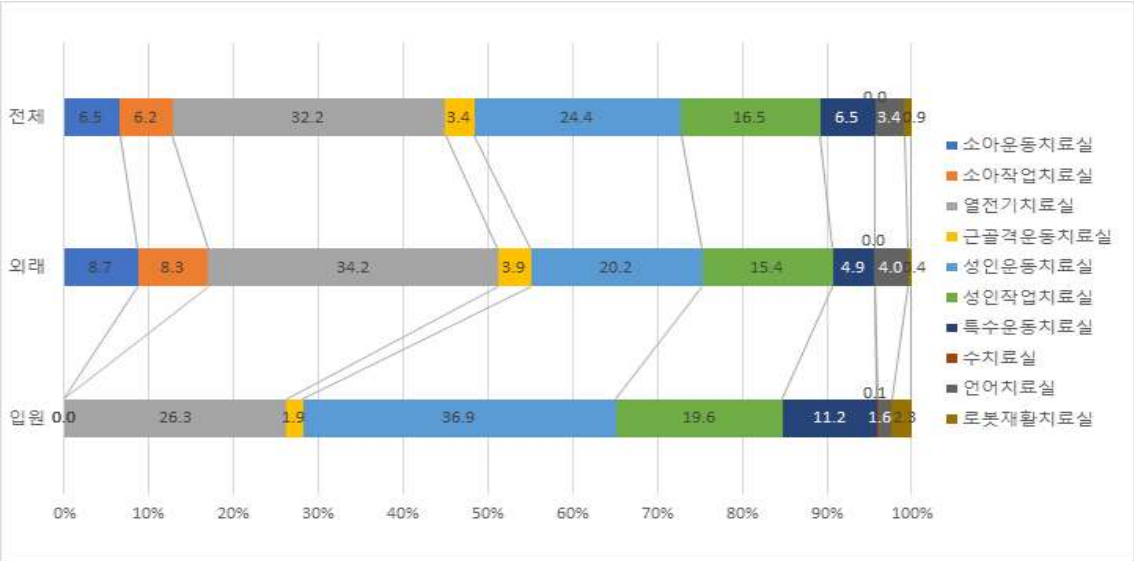

그림 42. 치료실별 재활치료건수 구성비 (`20-`22)

표 70. 치료실별 재활치료건수 (`20-`22)

구분	입원		외래		전체	
	건	%	건	%	건	%
소아운동치료실	-	0.0	6,677	8.7	6,677	6.5
소아작업치료실	-	0.0	6,387	8.3	6,387	6.2
열전기치료실	6,674	26.3	26,259	34.2	32,933	32.2
근골격운동치료실	480	1.9	3,012	3.9	3,492	3.4
성인운동치료실	9,386	36.9	15,561	20.2	24,947	24.4
성인작업치료실	4,993	19.6	11,838	15.4	16,831	16.5
특수운동치료실	2,849	11.2	3,755	4.9	6,604	6.5
수치료실	35	0.1	15	0.0	50	0.0
언어치료실	414	1.6	3,059	4.0	3,473	3.4
로봇재활치료실	588	2.3	307	0.4	895	0.9
합계	25,419	100.0	76,870	100.0	102,289	100.0

□ 치료실별 환자당 평균재활치료건수 소아운동치료실이 평균 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작업치료실 24.9건, 성인운동치료실 16.3건, 특수운동치료실 11.5건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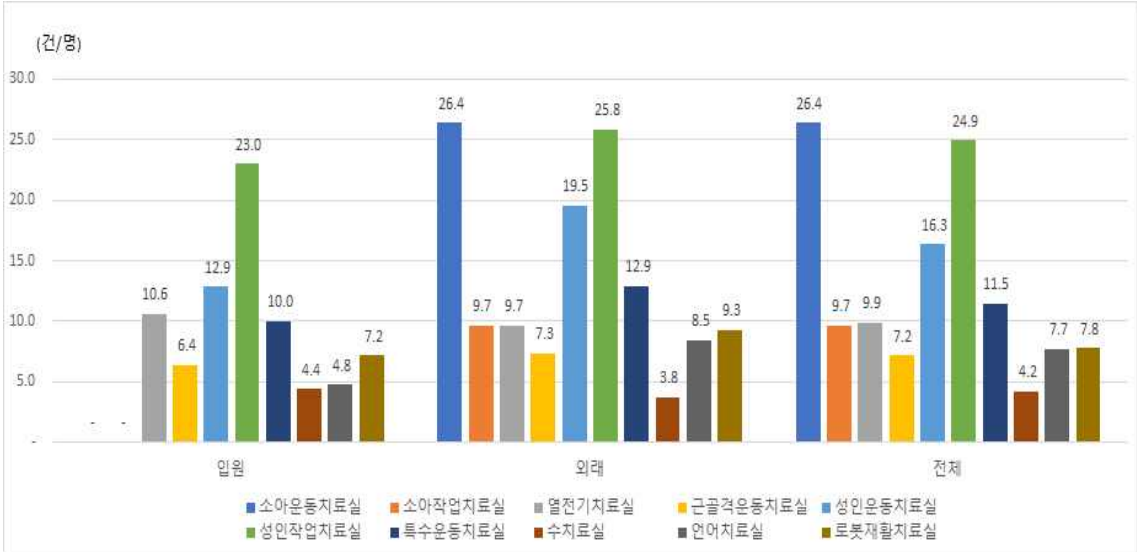

그림 43. 치료실별 환자당 평균 치료건수 (`20-`22)

표 71. 치료실별 환자당 평균 치료건수 (`20-`22)

단위 : 건

구분	입원	외래	전체
소아운동치료실	-	26.4	26.4
소아작업치료실	-	9.7	9.7
열전기치료실	10.6	9.7	9.9
근골격운동치료실	6.4	7.3	7.2
성인운동치료실	12.9	19.5	16.3
성인작업치료실	23.0	25.8	24.9
특수운동치료실	10.0	12.9	11.5
수치료실	4.4	3.8	4.2
언어치료실	4.8	8.5	7.7
로봇재활치료실	7.2	9.3	7.8
합계	12.0	12.7	12.5

□ 치료실별 환자당 대기현황은 2022년 11월 4째 주 기준으로 328명이었으며 치료대기가 가장 많은 치료실은 언어치료실이었음. 전체 대기환자 중 1년의 최초 재활치료 종료 후 재대기하는 환자는 59명(18%)이었음.

□ 평균 대기기간이 6개월 이상 긴 치료실은 언어치료실과 소아작업치료실이었고, 그 외 치료실도 평균 대기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음.

- 입원환자는 처방에 따라 재활치료를 바로 시행하므로 치료 대기는 외래환자에 한하여 적용됨.

표 72. 치료실별 환자 대기현황 (2022.11월 4째 주 기준)

단위 : 명

구분	대기	재대기*	평가	합계	평균 대기기간
소아운동치료실	20	4	1	25	1개월
소아작업치료실	52	4	5	61	6개월~1년
열전기치료실	0	0	0	0	바로
근골격운동치료실	0	0	0	0	1주일 이내
성인운동치료실	15	17	6	38	1개월
성인작업치료실	25	14	5	44	4개월
로봇치료실	6	0	0	6	1개월
언어치료실	122	20	12	154	6개월~1년
합계	240	59	29	328	
(%)	(73.2)	(18.0)	(8.8)	(100.0)	

*재대기 : 치료시작 후 1년 경과되면 재대기로 전환, 기존 대기환자 흡수 후 치료시작

□ 재활치료 구분에 따른 처방건수 구성비는 전문재활 39.4%, 일반재활 51.8%로 재활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급여재활(도수치료, 언어치료 등)이 5.5%, 기능검사가 3.3%였음.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치료 시 전문재활비율이 외래치료 시 전문재활비율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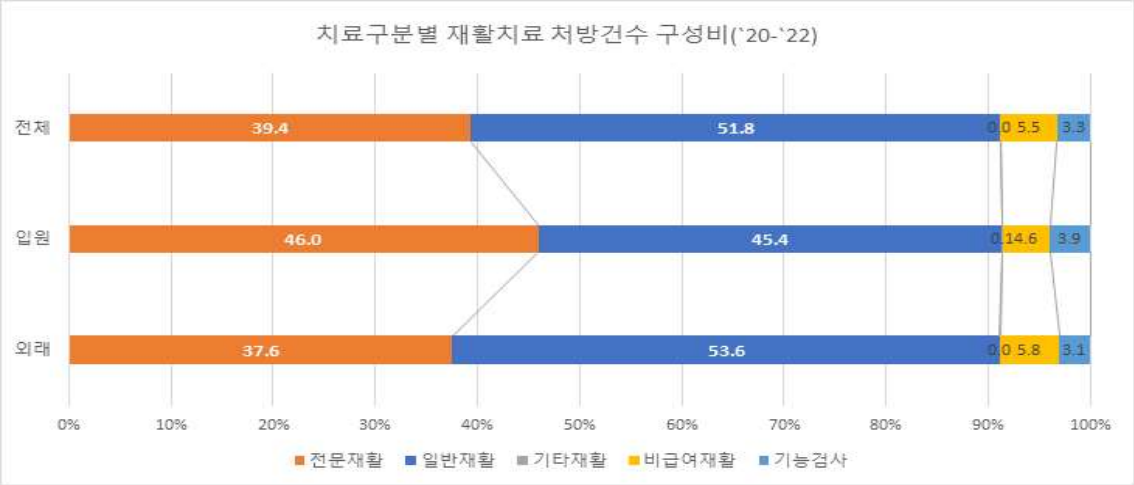

그림 44. 원내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표 73.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20~`22)

구분	입원		외래		전체	
	건	%	건	%	건	%
전문재활	20,444	46.0	61,208	37.6	81,652	39.4
일반재활	20,197	45.4	87,298	53.6	107,495	51.8
기타재활	33	0.1	25	0.0	58	0.0
비급여재활	2,064	4.6	9,399	5.8	11,463	5.5
기능검사	1,748	3.9	5,027	3.1	6,775	3.3
합계	44,486	100.0	162,957	100.0	207,443	100.0

□ 치료실별 재활치료 구분에 따른 처방건수 구성비는 치료실에 따라 차이가 컸음. 전문재활치료 비중이 높은 치료실은 소아운동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성인운동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특수운동치료실, 로봇재활치료실이었고, 일반재활치료 비중이 높은 치료실은 열전기치료실, 수치료실 이었음. 근골격운동치료실 및 언어치료실은 도수치료 및 언어치료가 비급여 재활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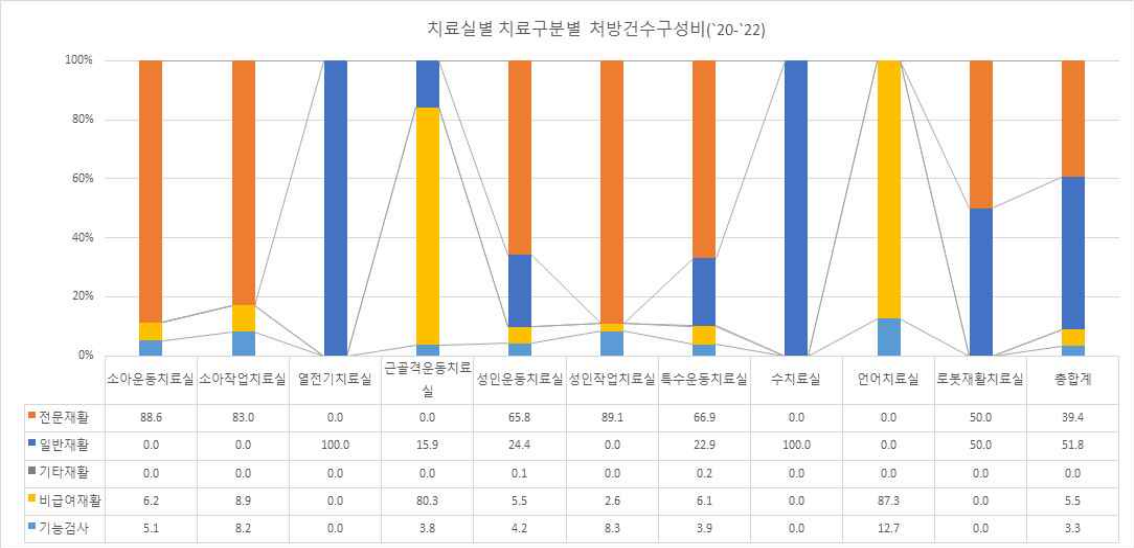

	소아운동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열전기치료실	근골격운동치료실	성인운동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특수운동치료실	수치료실	언어치료실	로봇재활치료실	총합계
전문재활	88.6	83.0	0.0	0.0	65.8	89.1	66.9	0.0	0.0	50.0	39.4
일반재활	0.0	0.0	100.0	15.9	24.4	0.0	22.9	100.0	0.0	50.0	51.8
기타재활	0.0	0.0	0.0	0.0	0.1	0.0	0.2	0.0	0.0	0.0	0.0
비급여재활	6.2	8.9	0.0	80.3	5.5	2.6	6.1	0.0	87.3	0.0	5.5
기능검사	5.1	8.2	0.0	3.8	4.2	8.3	3.9	0.0	12.7	0.0	3.3

그림 45. 원내 치료실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표 74. 치료실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20~`22)

단위 : 건, %

구분	전문재활	일반재활	기타재활	비급여재활	기능검사	전 체
소아운동치료실	11,037	-	-	776	639	12,452
(%)	(88.6)	(0.0)	(0.0)	(6.2)	(5.1)	(100.0)
소아작업치료실	10,014	-	-	1069	984	12,067
(%)	(83.0)	(0.0)	(0.0)	(8.9)	(8.2)	(100.0)
열전기치료실	-	93,928	-	-	2	93,930
(%)	(0.0)	(100.0)	(0.0)	(0.0)	(0.0)	(100.0)
근골격운동치료실	-	571	-	2,886	135	3,592
(%)	(0.0)	(15.9)	(0.0)	(80.3)	(3.8)	(100.0)
성인운동치료실	26,686	9,892	31	2,239	1,722	40,570
(%)	(65.8)	(24.4)	(0.1)	(5.5)	(4.2)	(100.0)
성인작업치료실	25,859	-	-	765	2,411	29,035
(%)	(89.1)	(0.0)	(0.0)	(2.6)	(8.3)	(100.0)
특수운동치료실	7,604	2,598	27	693	442	11,364
(%)	(66.9)	(22.9)	(0.2)	(6.1)	(3.9)	(100.0)
수치료실	-	54	-	-	-	54
(%)	(0.0)	(100.0)	(0.0)	(0.0)	(0.0)	(100.0)
언어치료실	-	-	-	3,035	440	3,475
(%)	(0.0)	(0.0)	(0.0)	(87.3)	(12.7)	(100.0)

구분	전문재활	일반재활	기타재활	비급여재활	기능검사	전 체
로봇재활치료실	452	452	-	-	-	904
(%)	(50.0)	(50.0)	(0.0)	(0.0)	(0.0)	(100.0)
합계	81,652	107,495	58	11,463	6,775	207,443
(%)	(39.4)	(51.8)	(0.0)	(5.5)	(3.3)	(100.0)

□ 보험종별 재활치료 구분에 따른 처방건수 구성비를 보면 대부분 일반 및 전문 재활치료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음.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환자는 전문재활치료가 약 40%수준, 일반재활치료는 50% 이상을 차지하여 비슷한 비율을 보임. 자동차보험 환자는 일반재활치료비중이 높았고, 일반환자는 비급여재활 처방 비율이 다른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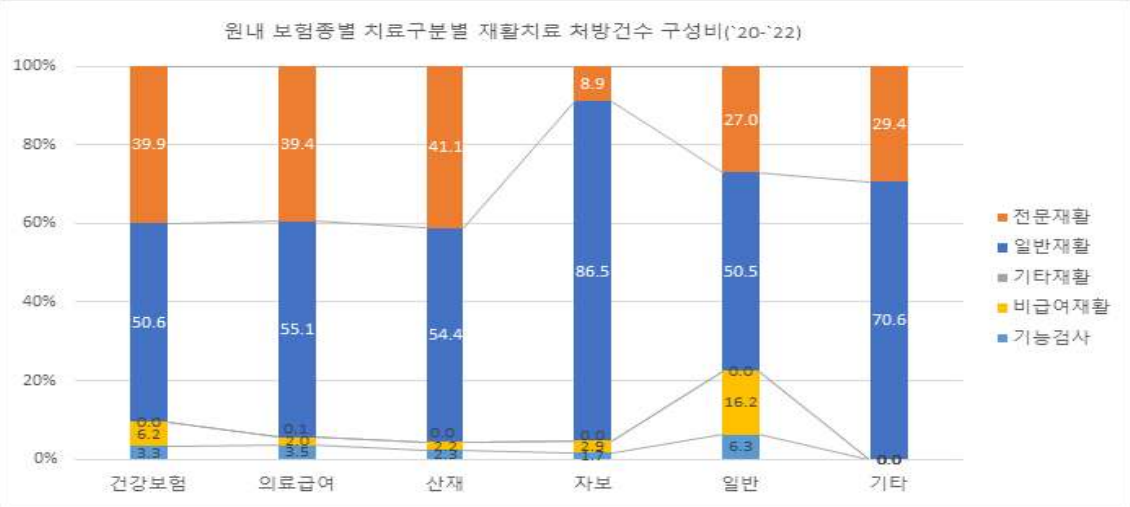

그림 46. 원내 보험종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표 75. 보험유형별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20~`22)

단위 : 건, %

	전문재활	일반재활	기타재활	비급여재활	기능검사	전 체
건강보험	68,307	86,681	37	10,683	5,650	171,358
(%)	(39.9)	(50.6)	(0.0)	(6.2)	(3.3)	(100.0)
의료급여	10,278	14,374	21	522	913	26,108
(%)	(39.4)	(55.1)	(0.1)	(2.0)	(3.5)	(100.0)
산업재해(산재)	2,752	3,640	-	147	151	6,690
(%)	(41.1)	(54.4)	(0.0)	(2.2)	(2.3)	(100.0)
자동차보험(자보)	280	2,732	-	93	54	3,159
(%)	(8.9)	(86.5)	(0.0)	(2.9)	(1.7)	(100.0)
일반	30	56	-	18	7	111
(%)	(27.0)	(50.5)	(0.0)	(16.2)	(6.3)	(100.0)
기타	5	12	-	-	-	17
(%)	(29.4)	(70.6)	(0.0)	(0.0)	(0.0)	(100.0)
합계	81,652	107,495	58	11,463	6,775	207,443
(%)	(39.4)	(51.8)	(0.0)	(5.5)	(3.3)	(100.0)

□ 재활치료 처방코드별로 봤을 때 처방건수가 많았던 치료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입원 재활치료에서 처방건이 가장 많았던 치료항목은 MM105(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2(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MM112(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01(단순운동치료[1일당]), MM190(압박치료[1일당]) 순이었음.
- 외래 재활치료에서 처방건이 가장 많았던 치료항목은 MM202(심층열치료[1일당]), MM015(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MM105(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080(간섭파전류치료[ICT]), MM112(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순이었음.

표 76. 처방코드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상위10위 현황 ('20-'22)

구분		처방코드	한글명	건	구성비	순위
입원	전문재활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4,960	11.1	1
	일반재활	MM102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4,314	9.7	2
	전문재활	MM112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3,689	8.3	3
	일반재활	MM101	단순운동치료[1일당]	2,680	6.0	4
	일반재활	MM190	압박치료[1일당]	2,647	6.0	5
	전문재활	MM30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2,614	5.9	6
	전문재활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2,532	5.7	7
	일반재활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2,524	5.7	8
	일반재활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2,449	5.5	9
	일반재활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2,378	5.3	10
외래	일반재활	MM020	심층열치료[1일당]	23,591	14.5	1
	일반재활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23,453	14.4	2
	전문재활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6,973	10.4	3
	일반재활	MM080	간섭파전류치료[ICT]	16,850	10.3	4
	전문재활	MM112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13,391	8.2	5
	전문재활	MM11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10,931	6.7	6
	일반재활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6,812	4.2	7
	전문재활	MM301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6,795	4.2	8
	전문재활	MM30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6,436	3.9	9
	일반재활	MM102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6,020	3.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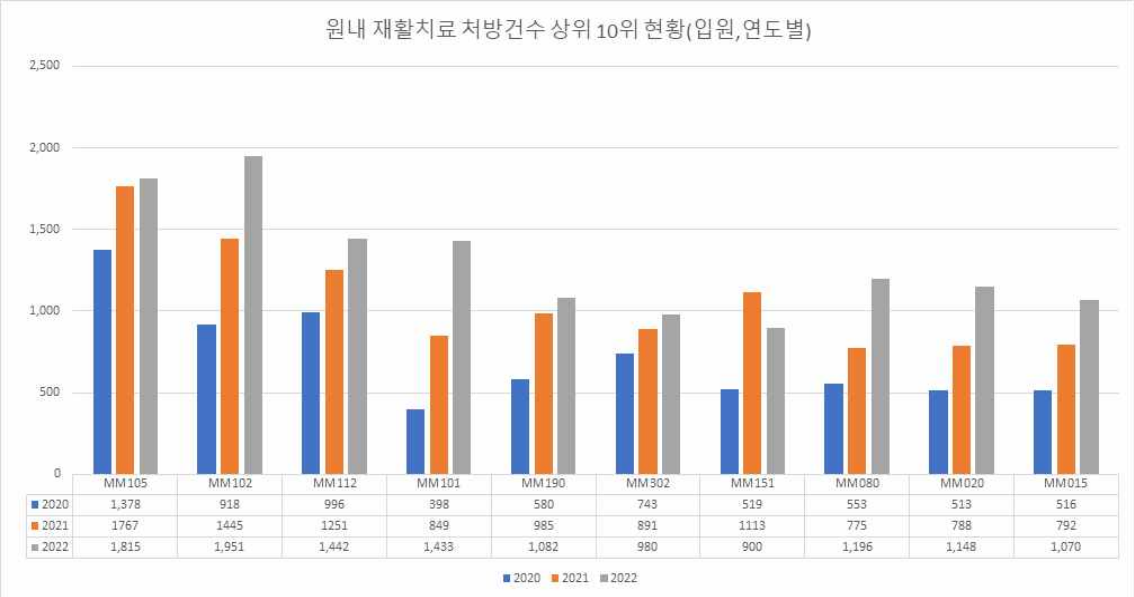

	MM105	MM102	MM112	MM101	MM190	MM302	MM151	MM080	MM020	MM015
2020	1,378	918	996	398	580	743	519	553	513	516
2021	1767	1445	1251	849	985	891	1113	775	788	792
2022	1,815	1,951	1,442	1,433	1,082	980	900	1,196	1,148	1,070

그림 47. 연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상위 10위 현황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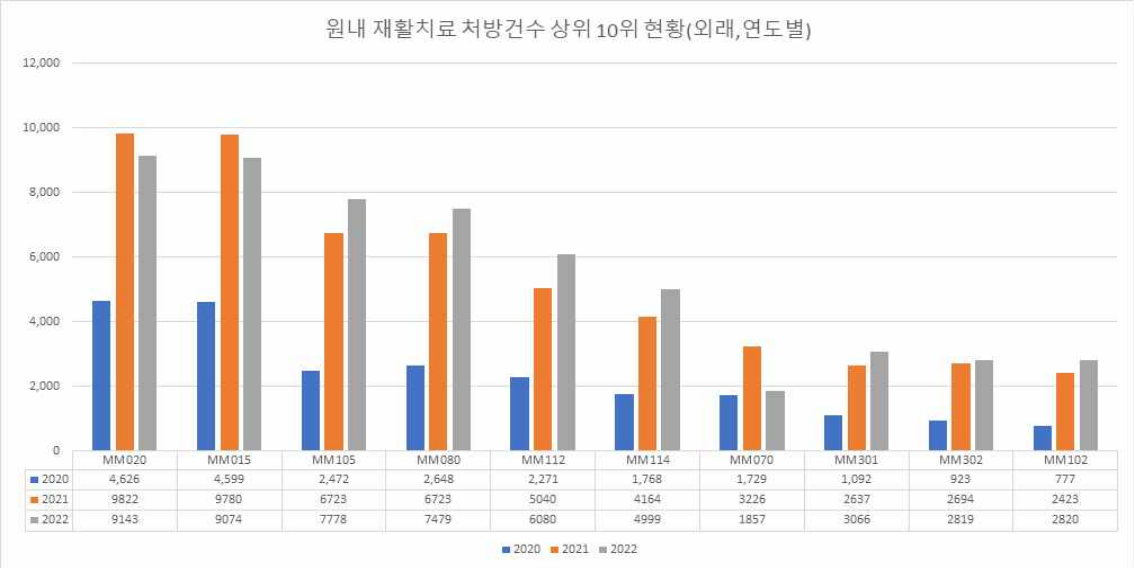

	MM020	MM015	MM105	MM080	MM112	MM114	MM070	MM301	MM302	MM102
2020	4,626	4,599	2,472	2,648	2,271	1,768	1,729	1,092	923	777
2021	9822	9780	6723	6723	5040	4164	3226	2637	2694	2423
2022	9143	9074	7778	7479	6080	4999	1857	3066	2819	2820

그림 48. 연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상위 10위 현황 (외래)

□ 재활치료센터 환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매년 환자 및 치료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 재활환자수는 3,534명, 재활치료건수는 44,604건, 환자당 평균 재활건수는 12.6건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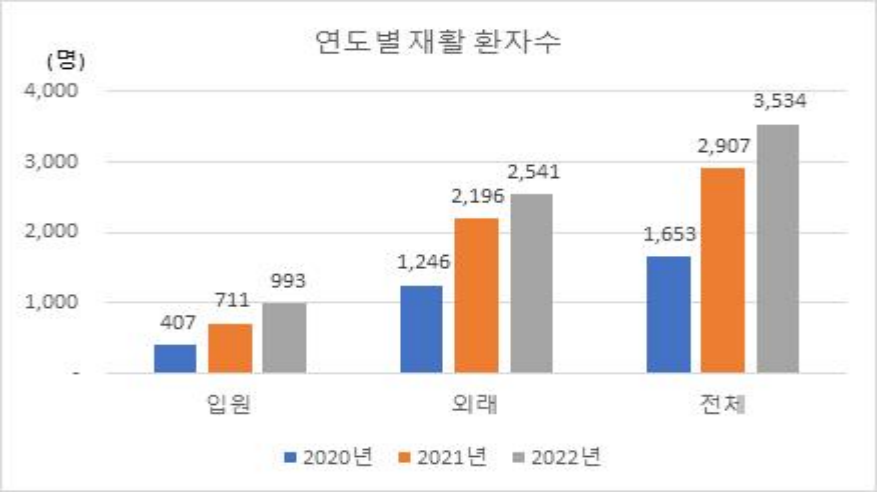

그림 49. 연도별 재활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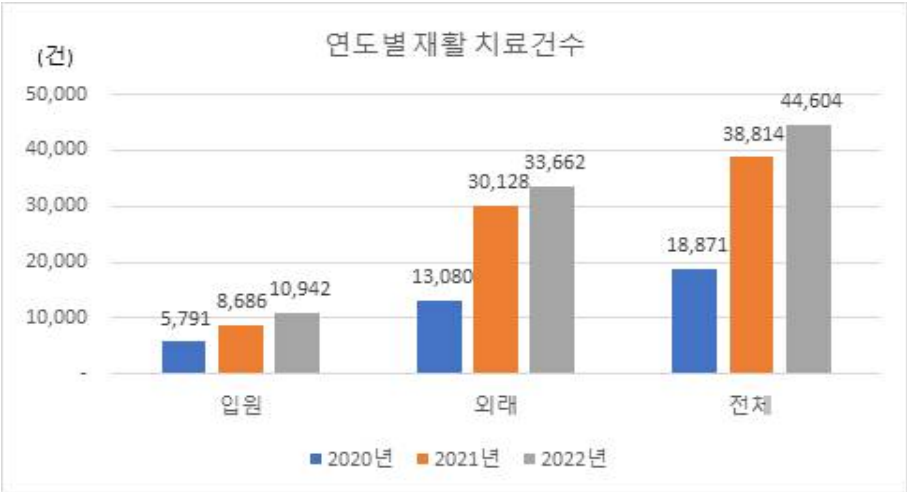

그림 50. 연도별 재활치료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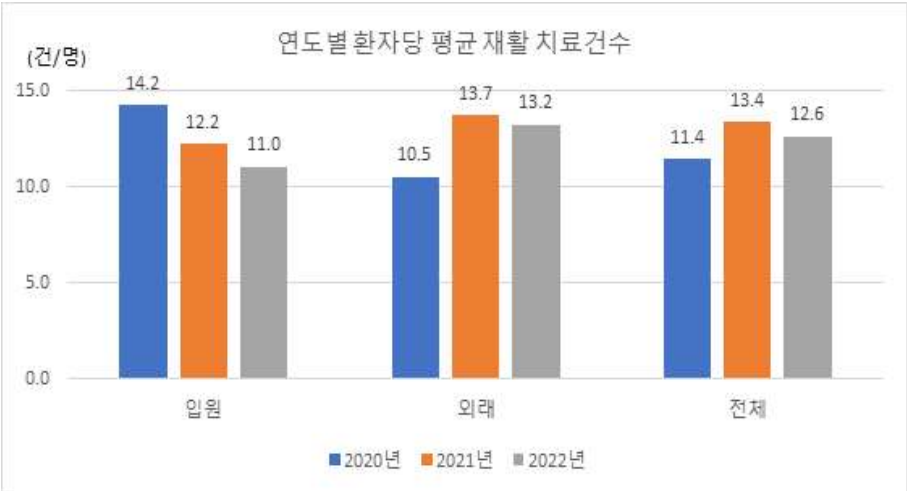

그림 51. 연도별 환자당 평균 재활치료건수

0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대상 현황

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요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입원환자 퇴원 시 적절한 케어플랜 수립 및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연속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임.

□ 사업대상은 지역책임의료기관별로 지역 현황에 따라 설정하는 방식이며 성남시의료원은 65세 이상 노인 중 고관절골절 환자, 뇌졸중 환자로 사업대상군을 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사업 참여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2022년부터는 뇌졸중 환자에서 해당 질환군을 포함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로 대상군을 확대하였음.

□ 서비스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사업 참여 동의를 획득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평가를 시행하여 퇴원 전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의 자원 연계기관을 선정함.
- 퇴원 후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례관리 실시하고 서비스 만족도, 지역사회 연계자원 이용여부,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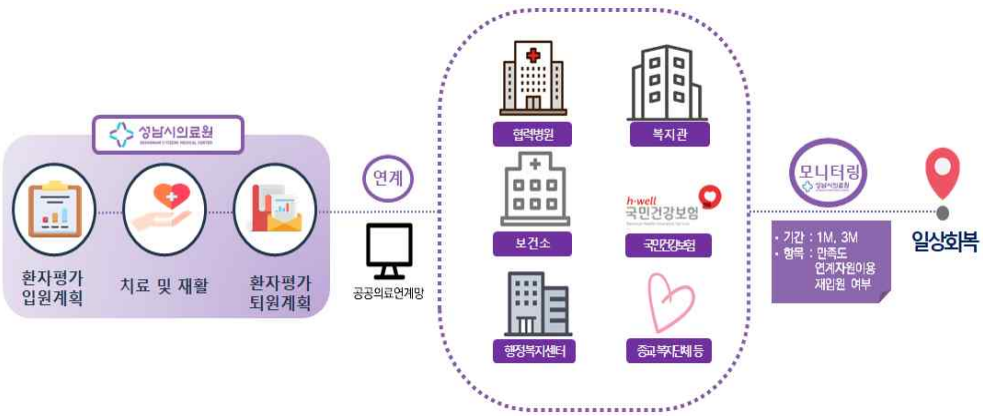

그림 5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념도

나 분석 대상 및 방법

□ 성남시의료원에서 입원한 환자 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참여 대상자의 특성, 지역연계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분석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연계망에 업로드 된 서비스 연계서식을 활용한 환자 평가자료를 활용하였음.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에서는 케어플랜수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발한 서비스 연계 서식을 활용하여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가 영역별로 환자의 의료·사회경제적 현황을 다각도로 평가함.

□ 분석 대상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임. 2021년은 사업수행 초기 단계로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 자료를 통합 분석하였음.

- 사업참여 대상자는 총 49명으로 2021년 18명(36.7%), 2022년 31명(63.3%)으로 구성됨.

□ 분석 결과는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등 환자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환자유형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음.

표 77.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내용)
환자유형	환자유형	노인고관절(65세이상 노인 중 고관절골절을 주진단으로 입원한 환자) / 재활 (재활의학과 진료과로 입원한 환자, 2021년 뇌졸중 유형 포함)
인구사회	성별	남 / 여
	연령대	50대 이하 / 60대 / 70대 / 80대 이상
	의료보장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월가구소득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가구형태	1인가구(독거노인가구포함)/ 노인부부가구/ 일반가구/ 기타가구(3대 거주)

구분		변수명(내용)
	결혼상태	미혼 / 기혼 / 기타(이혼, 사별 등)
	주소지	성남시(실거주지 주소가 성남시 주소인 자)/ 성남권(실거주지 주소가 성남권(성남시 제외)인 자/ 그 외 지역(실거주지 주소가 성남권 외 지역인 자)
보건의료	진료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수술경험률	입원기간 또는 입원 전 최근 1년 이내 수술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
	평균재원일수	평균 입원기간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결핵/ 골다공증/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간질환/ 뇌혈관질환/ 암/ 기타
	흡연율	대상자 중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음주율	대상자 중 현재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
	비만율	대상자 중 BMI가 25.0 이상인 사람의 비율
	퇴원 처방약	1~5개 미만/ 5~10개 미만/ 10개 이상/ 없음
	환자 활동상태	스스로 능동적으로 운동/ 부분적 도움이나 보조구 이용/ 침상 내 부분적 도움으로 수동적 운동
사회복지	돌봄제공자	가족(가족+유급간병인 포함)/ 유급간병인 / 없음
	장애등록	장애등록/ 신청예정/ 해당없음
	장애구분	뇌병변/ 시각/ 지체/ 청각/ 복합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수급/ 신청예정/ 해당없음
	퇴원후거주지	자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	대상자 중 입원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경험자의 비율

다 분석 결과

□ 사업참여대상의 환자유형은 노인고관절골절 65.3%, 재활 34.7%였고,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음.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고, 70대 30.6%, 60대 14.3%로 60대 이상 노령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평균연령은 73.9세였음.

□ 의료보장유형은 건강보험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가 22.4%, 차상위가 2.0%였음. 결혼상태는 기혼이 34.7%로 미혼, 이혼 또는 사별 등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60% 이상이었음. 환자 주소지는 성남시 89.8%, 성남권 4.1%, 기타 지역이 6.1%로 성남시민이 대부분이었음.

표 78. 사업대상자 기본 특성

구분		명	%
환자유형	노인고관절골절	32	65.3
	재활	17	34.7
성별	남	17	34.7
	여	32	65.3
연령대	50대 이하	7	14.3
	60대	7	14.3
	70대	15	30.6
	80대 이상	20	40.8
	평균	73.9±12.5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	37	75.5
	차상위	1	2.0
	의료급여	11	22.4
혼인상태	기혼	17	34.7
	미혼	4	8.2
	기타(이혼,사별 등)	28	57.1
주소지	성남시	44	89.8
	성남권	2	4.1
	그 외 지역	3	6.1
합계		49	100.0

3.1 인구사회적 특성

□ 전체 대상자의 성별 현황은 여성 65.3%, 남성 34.7%였음. 환자유형별로 성별 현황을 보면 노인고관절골절은 여성 비율이 90.6%로 높았고, 재활은 남성 비율이 82.4%로 높았음.

표 79.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남	3	14	17
	(9.4)	(82.4)	(34.7)
여	29	3	32
	(90.6)	(17.6)	(65.3)
전체	32	17	49
	(100.0)	(100.0)	(100.0)

□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9세로 80대 이상 연령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은 평균 연령 79.5세로 80대 이상 연령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음. 재활은 평균연령이 63.3세로 50대 이하 연령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음.

표 80.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50대 이하	0	7	7
	(0.0)	(41.2)	(14.3)
60대	4	3	7
	(12.5)	(17.6)	(14.3)
70대	11	4	15
	(34.4)	(23.5)	(30.6)
80대 이상	17	3	20
	(53.1)	(17.6)	(40.8)
평균연령(세)	79.5	63.3	73.9

□ 전체 대상자의 의료보장 유형별 현황은 건강보험이 75.5%로 가장 높았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은 건강보험 75.0%, 의료급여 25.0%였고, 재활은 건강보험 76.5%, 의료급여 17.6%, 차상위 5.9%였음.

표 81. 의료보장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건강보험	24	13	37
	(75.0)	(76.5)	(75.5)
차상위	0	1	1
	(0.0)	(5.9)	(2.0)
의료급여	8	3	11
	(25.0)	(17.6)	(22.4)

□ 전체 대상자의 월 가구소득 수준별 현황은 50~100만원 미만이 49.0%, 50만원 미만 34.7%, 200만원 이상 12.2% 순이었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은 50~100만원미만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고, 재활은 50만원 미만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음.

표 82. 월 가구소득 수준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50만원 미만	10	7	17
	(31.3)	(41.2)	(34.7)
50~100만원 미만	18	6	24
	(56.3)	(35.3)	(49.0)
100~200만원 미만	2	0	2
	(6.3)	(0.0)	(4.1)
200만원이상	2	4	6
	(6.3)	(23.5)	(12.2)

□ 의료보장유형별로 월가구소득수준을 보면 50만원미만 가구비율이 건강보험은 37.8%, 의료급여는 27.3%로 건강보험에서 50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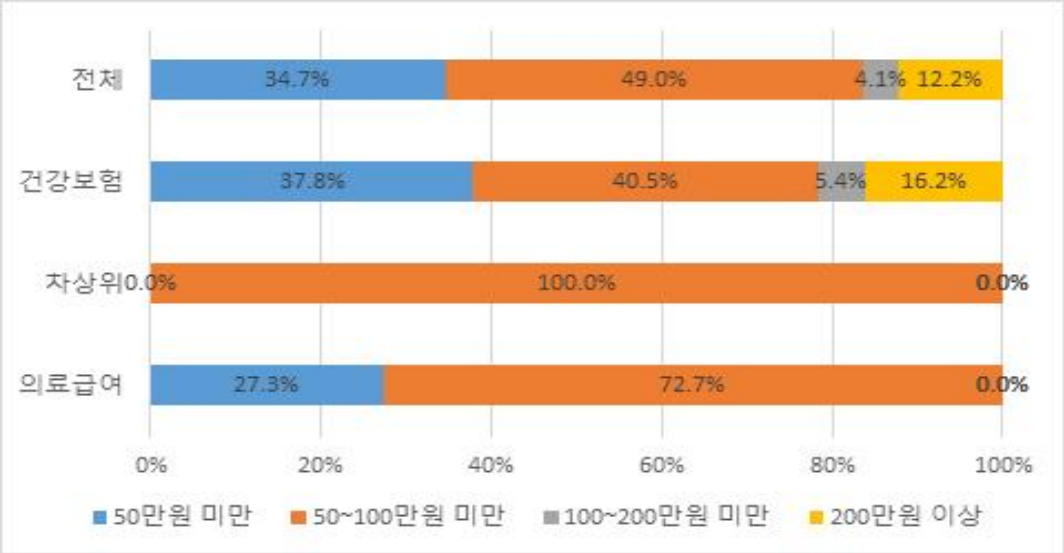

그림 53. 보험유형별 월가구소득수준별 현황 (%)

표 83. 보험유형별 월가구소득수준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전체
50만원미만	14	0	3	17
	(37.8)	(0.0)	(27.3)	(34.7)
50~100만원미만	15	1	8	24
	(40.5)	(100.0)	(72.7)	(49.0)
100~200만원미만	2	0	0	2
	(5.4)	(0.0)	(0.0)	(4.1)
200만원이상	6	0	0	6
	(16.2)	(0.0)	(0.0)	(12.2)

□ 전체 대상자의 가구형태별 현황은 1인가구 비율이 59.2%로 가장 높았고, 일반가구 22.4%, 노인부부가구 16.3% 순이었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은 1인가구 비율이 65.6%, 일반가구 18.8%, 노인부부가구 15.6% 순이었고, 재활은 1인가구 47.1%, 일반가구 29.4%, 노인부부가구 17.6% 순이었음.

표 84. 가구형태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1인가구	21	8	29
	(65.6)	(47.1)	(59.2)
노인부부가구	5	3	8
	(15.6)	(17.6)	(16.3)
일반가구	6	5	11
	(18.8)	(29.4)	(22.4)
기타가구(3대 거주)	0	1	1
	(0.0)	(5.9)	(2.0)

3.2 보건의료적 특성

□ 전체 대상자의 입원진료과는 정형외과 65.3%, 재활의학과 34.7%였고, 수술경험률은 77.6%, 평균재원일수는 26.4일이었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 환자는 전체 정형외과 입원환자였고, 재활환자는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였음. 수술 경험률은 고관절골절환자에서 높았고, 평균재원일수는 재활환자에서 높았음.

표 85. 입원 현황

단위 : 명, %, 일/명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진료과	정형외과	32 (100.0)	0 (0.0)	32 (65.3)
	재활의학과	0 (0.0)	17 (100.0)	17 (34.7)
수술경험률		30 (93.8)	8 (47.1)	38 (77.6)
평균재원일수		20.0	38.3	26.4

□ 전체 대상자의 기저질환 현황은 단일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고지혈증 순으로 많았고 환자1인당 평균 2.1개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음. 기타 질환은 다양하게 분포하였는데 치매(6)가 가장 많았고, 통풍(2), 전립선비대증(2), 신장질환(2), 파킨슨,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이 있었음.

□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순으로 기저질환수가 많았고 재활환자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순으로 기저질환 수가 많았는데, 환자군 평균 연령이 더 낮았던 재활환자(평균 63.3세)가 노인고관절골절 환자(평균 79.5세)보다 평균 기저질환수가 더 많게 나타났음.

표 86. 기저질환 현황

단위 : 개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고혈압	22	12	34
당뇨	9	7	16
고지혈증	8	1	9
결핵	-	-	-
골다공증	-	-	-
심장질환	3	1	4
호흡기질환	1	1	2
간질환	-	1	1
뇌혈관질환	1	13	14
암	3	1	4
기타	13	5	18
평균 기저질환개수	1.9	2.5	2.1

□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수준을 보기 위해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을 확인하였음. 전체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현황은 흡연율은 16.3%, 음주율 10.2%, 비만율 16.3%였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보다 재활환자 유형에서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모두 높았음.

표 87. 건강생활습관 현황

단위 :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흡연율	12.5	23.5	16.3
음주율	6.3	17.6	10.2
비만율	15.6	17.6	16.3

□ 퇴원 시 처방약 현황은 5~10개 미만이 59.2%, 1~5개 미만이 30.6% 순이었으며 처방약이 없는 사람은 10.2%로 많은 수가 1개 이상의 퇴원후 복용약을 처방받았음. 환자유형별로도 퇴원약을 5~10개 미만 처방받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88. 퇴원 시 처방약 현황

단위 :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1~5개 미만	12	3	15
	(37.5)	(17.6)	(30.6)
5~10개 미만	16	13	29
	(50.0)	(76.5)	(59.2)
없음	4	1	5
	(12.5)	(5.9)	(10.2)

□ 환자의 활동상태 현황은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구를 이용하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70% 이상 높았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은 거동 불편자가 90% 이상이었고, 재활환자는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70.6%로 가장 높았음.

표 89. 환자 활동상태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스스로 능동적으로 운동	1	12	13
	(3.1)	(70.6)	(26.5)
부분적 도움이나 보조구 이용	29	4	33
	(90.6)	(23.5)	(67.3)
침상 내 부분적 도움으로 수동적 운동	2	1	3
	(6.3)	(5.9)	(6.1)

3.3 사회복지적 특성

□ 퇴원 시 돌봄 제공자 현황은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55.1%로 가장 높았고,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도 34.7%였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은 가족 돌봄 제공이 62.5%로 높았고, 재활환자는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52.9%로 높았음.

표 90. 돌봄제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없음	8	9	17
	(25.0)	(52.9)	(34.7)
가족(가족+유급간병인)	20	7	27
	(62.5)	(41.2)	(55.1)
유급간병인	4	1	5
	(12.5)	(5.9)	(10.2)

□ 돌봄 제공자 현황을 환자 활동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침상 내에서 수동적 움직임만 가능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100%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였고,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가 없거나, 유급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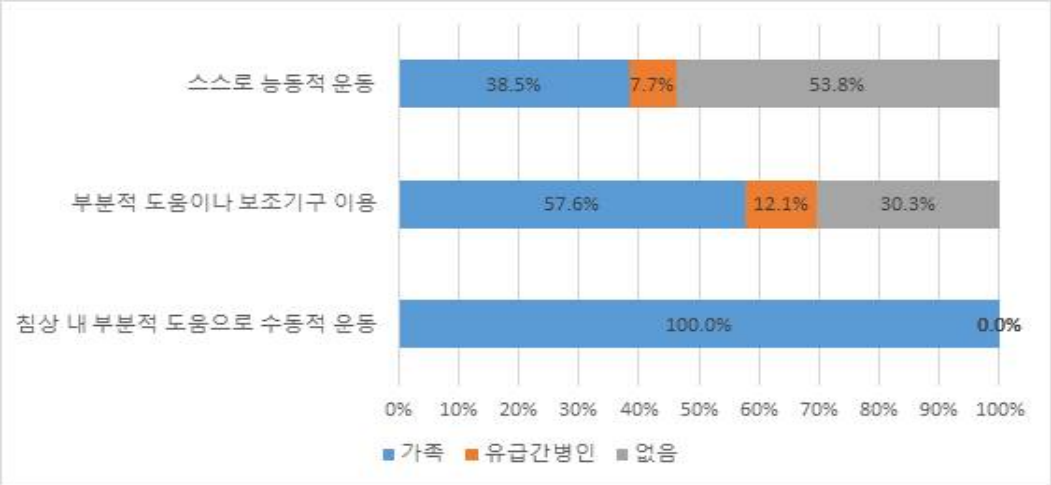

그림 54. 활동수준별 퇴원 후 돌봄제공자 현황 (%)

□ 전체 대상자의 장애등록 현황은 24.5%였고, 신청 예정인 경우는 10.2%로 전체의 35% 정도만 장애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장애 등록을 준비 중이었음. 장애등록자의 장애수준을 모두 경증이었으며 장애구분별로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많았음.

표 91. 장애등록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장애등록*	9	3	12
	(28.1)	(17.6)	(24.5)
신청예정	2	3	5
	(6.3)	(17.6)	(10.2)
해당없음	21	11	32
	(65.6)	(64.7)	(65.3)

*장애등록자 장애 중증도는 모두 경증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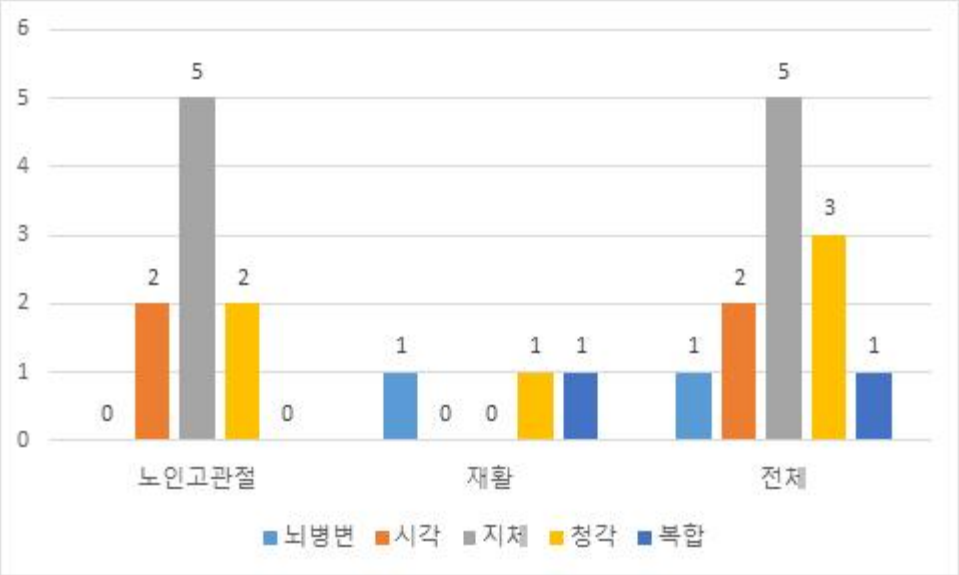

* 복합: 청각, 뇌병변

그림 55. 등록장애인 중 장애구분별 현황 (명)

□ 전체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등록 현황은 20.4%였고, 신청 예정인 경우는 40.8%로 전체의 60% 정도가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등록을 준비 중이었음. 환자유형별로는 노인고관절골절 환자는 장기요양보험 미등록자가 28.1%였고, 재활환자는 58.8%로 고관절골절 환자의 장기요양보험 등록비율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 장기요양보험 등록 현황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 등록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92. 장기요양보험 등록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장기요양보험수급	8	2	10
	(25.0)	(11.8)	(20.4)
신청예정	15	5	20
	(46.9)	(29.4)	(40.8)
해당없음	9	10	19
	(28.1)	(58.8)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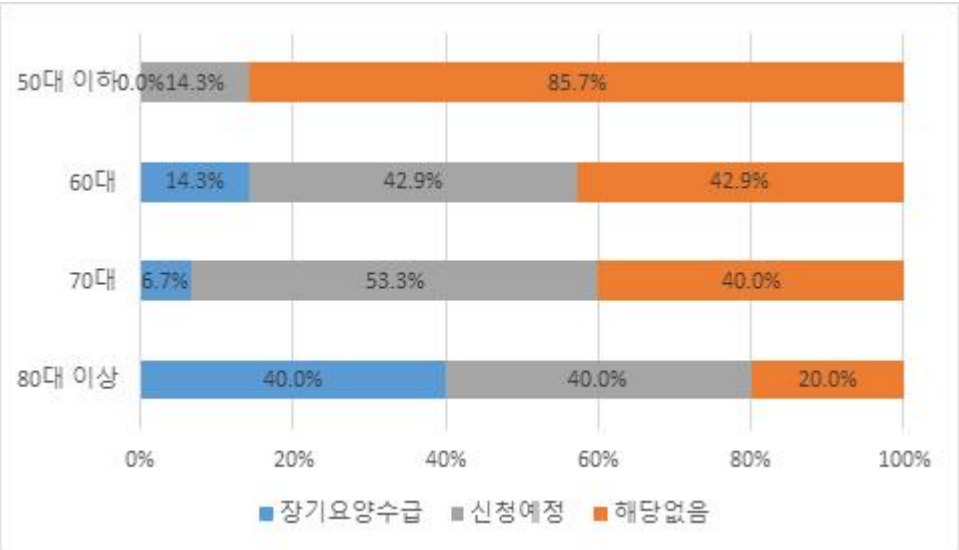

그림 56. 연령대별 장기요양보험 등록 현황 (%)

□ 전체 대상자의 퇴원 후 거주지 현황은 자택 75.5%, 의료기관 24.5%로 자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음. 자택 퇴원률을 환자유형별로 보면 노인고관절골절 환자는 71.9%, 재활환자는 82.4%로 재활환자가 집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표 93. 퇴원 후 거주지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자택	23	14	37
	(71.9)	(82.4)	(75.5)
의료기관	9	3	12
	(28.1)	(17.6)	(24.5)

□ 전체 대상자의 입원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은 18.4%였고, 노인고관절골절은 21.9%, 재활은 11.8%였음.

- 사회복지서비스 경험자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은 재가서비스(3), 복지관 반찬지원서비스(2),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긴급복지지원(의료비), 근로장려금 등이었음.

표 94.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

단위 : %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	21.9	11.8	18.4

□ 의료보장 유형별로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을 보면 건강보험대상의 13.5%, 의료급여 대상자의 36.4%만 사회복지서비스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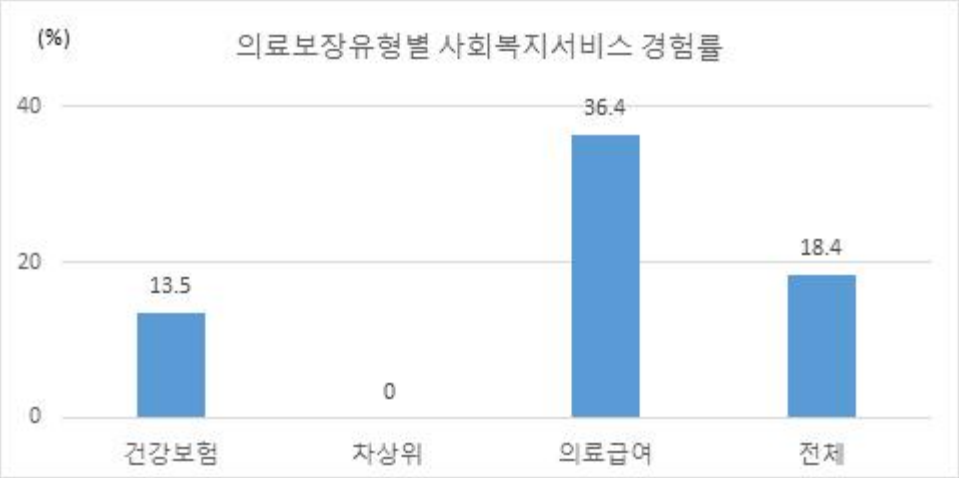

그림 57. 의료보장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 (%)

□ 전체 대상자의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현황을 보면 보호·돌봄요양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가사지원 등),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의약품 및 보장구 지원, 재활치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비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으며 환자 1명당 평균 1.8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자유형별로 보면 노인고관절골절은 보호·돌봄요양 수요가 가장 많았고, 재활은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았음.

표 95.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현황

단위 : 건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일자리	0	2	2
주거	2	1	3
일상생활	10	5	15
신체건강 · 보건의료	5	9	14
정신건강 · 심리정서	1	3	4
보호·돌봄요양	30	5	35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안전 및 권역보장	0	0	0
재정적 지원(의료비)	5	4	9
재정적 지원(의료비 외)	1	1	2
보호·교육	0	0	0
문화·여가	0	2	2
전체	54	32	86
환자당 평균 서비스수요	1.7	1.9	1.8

주 1) 영역별 1개 이상 서비스 수요 현황
주 2) 중복응답 가능

□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계한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재활치료센터, 의료원 의료사회복지파트 등), 복지기관, 소방서, 보건소 순으로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음. 환자 1명당 평균 기관연계건수는 1.7건이었음.

□ 환자유형별로 보면 노인고관절골절은 보호·돌봄요양 수요가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가 많았고, 재활은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 시위탁센터 등), 의료기관(요양병원, 재활의료센터 등)으로 연계가 많았음.

표 96. 기관별 케어플랜 연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노인고관절골절	재활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30	3	33
시군구청 (위탁센터포함)	11	12	23
의료기관	4	11	15
복지기관	3	4	7
소방서	5	1	6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4	2	6
전체	57	33	90
환자당 평균 기관연계건수	1.8	1.9	1.8

03 원내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가 재활의료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 성남시의료원 재활의료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목적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및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등에 관한 인식도를 확인함으로써 원활한 자원연계를 위한 개선과제를 파악하고자 함임. 이를 통하여 재활의료 연계에 필요한 지역자원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자 함.

□ 의견조사 대상자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환자 대상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로 원내 재활치료센터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함. 의견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법, 응답기한에 대한 설명을 수행함.

□ 원내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수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수행일정	수행내용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 개발	• 의견조사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병원의 재활의료서비스 및 의료행정 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 (2010) • 의견조사지 개발 - 5개 영역, 16개 문항, 총 35개 세부문항 개발
▼	
원내 재활치료센터 자문회의	•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협조 요청 • 의견조사지 문항 자문 및 수정·보완
▼	
전자 의견조사지 개발	• 웹기반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 의견조사지 개발
▼	
전자 의견조사지 모바일 배포 및 회수	• 설문방법 : 전자의견조사지 URL 주소 문자발송 • 설문기한 : 2022.11.30.(수) ~ 2022.12.7.(수)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	• 의견조사 응답결과 요약보고

1.2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재활의료의 중요성,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 재활환자 지역연계 현황 및 자유의견으로 구성함.

표 97.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내용

연 번	영 역	세부항목	
1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 유형	• 담당 재활환자수 적절여부
		• 담당 재활환자 질환군	• 1인당 적정 재활환자수
		• 담당 재활환자 평균인원 수	• 1인당 적정 치료횟수 및 시간
2	재활의료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재활환자 기능회복을 위한 중요성 우선순위	
		• 재활환자 재택복귀를 위한 중요성 우선순위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항목 우선순위	
3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에 사항	•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충분정도	
		• 지역내 재활인프라 확충시설 필요도	
		• 지역서비스 필요정도	
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 지역연계 업무 경험여부	• 지역연계 장애요인
		• 기관연계 종류	• CBR 사업 인지 여부
		• 기관연계 원활여부	
5	자유의견		

□ 의견조사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 성남시의료원 재활의료 관련 치료제공자(전문의, 치료사 등)와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조사방법은 전자의견 설문지 URL 링크를 발송하여 이루어졌으며,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됨.

□ 조사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명이 응답하였으며(응답률 90.6%), 최종 분석에 이를 활용함.

나 재활의료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1 응답자 특성

□ 의견조사는 원내 재활의료 관련 치료제공자, 영양사, 사회복지사 3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29명임.

□ 조사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5.2%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40대가 13명(44.8%)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직종은 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총 22명이 응답해 75.9%로 가장 비율이 높았음. 경력기간도 10년 미만인 경우가 72.4%로 가장 높았음.

표 98. 의견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범주	명	비율(%)
성별	남성	13	44.8
	여성	16	55.2
연령	30대 이하	11	37.9
	30대 ~ 40대	13	44.8
	40대 이상	5	17.2
직종	의사	1	3.4
	간호사	4	13.8
	물리치료사	14	48.3
	작업치료사	6	20.7
	언어치료사	2	6.9
	의료사회복지사	1	3.4
	임상영양사	1	3.4
경력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7	24.1
	5년 이상 ~ 10년 미만	14	48.3
	10년 이상	6	20.7
	기타	2	6.9
계		29	100.0

1.2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조사응답자의 재활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유형(업무특성)은 재활치료(물리, 작업, 언어) 영역의 서비스 제공이 과반수 이상(6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담당하는 환자의 질환군은 뇌졸중인 경우가 약 80%로 가장 많았음.

□ 하루 평균 담당하는 재활환자 수는 10명~20명 이내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하고 있는 환자수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효과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2~3회, 30분 내외의 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함.

표 99. 의견조사 응답결과_(1)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구분	범주	명	비율(%)
서비스 제공 유형	환자 진단·처방·치료, 재활치료 계획수립 등	1	3.4
	재활환자 대상 간호(예방·관리 등)	3	10.3
	운동치료 (성인·소아)	10	34.5
	작업치료 (성인·소아)	6	20.7
	언어치료	2	6.9
	특수운동치료 (수치료)	0	0.0
	열전기치료	3	10.3
	퇴원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의 상담	1	3.4
	영양평가 및 영양계획 수립, 영양상담 등	1	3.4
	기타	2	6.9
담당 재활환자 질환군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23	79.3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0	0.0
	퇴행성 질환 (파킨슨 등)	0	0.0
	고관절, 골반, 대퇴, 무릎의 골절 및 치환술	2	6.9
	기타	4	13.8
담당 재활환자 인원수 (하루 평균)	10명 이내	7	24.1
	10명 ~ 20명 이내	13	44.8
	20명 이상	3	10.3
	무응답	6	20.7

구분	범주	명	비율(%)
담당 재활환자 인원 적정여부	적정하다	18	62.1
	적정하지 않다	5	17.2
	무응답	6	20.7
재활치료 주당 적정 제공횟수	주 2회	15	51.7
	주 3회	6	20.7
	주 5회	1	3.4
	무응답	7	24.1
재활치료 1회당 적정 제공시간	1회당 30분	20	69.0
	1회당 35분	2	6.9
	1회당 45분	1	3.4
	무응답	6	20.7
계		29	100.0

1.3 재활의료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재활환자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통합적 치료계획 수립, 초기 집중재활 시행, 단계별 지속적 재활 시행,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 환자의 인식 및 의지로 범주화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우선순위 항목을 기입함.

- 종합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입장에서는 초기 집중재활을 시행하는 것과 재활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 의지가 기능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응답함. 그 외 통합적 치료계획 수립, 단계별 지속적 재활 시행, 주기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뒤를 이음.

□ 재활환자의 재택복귀를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을 독립활동 가능여부·기능회복 정도, 재활에 대한 환자의 지식, 퇴원 후 돌봄제공자 여부, 주거환경 개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여부로 범주화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우선순위를 기입함.

- 종합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입장에서는 독립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기능회복 정도와 재활에 대한 환자의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 외 퇴원 후 돌봄제공자의 유무, 주거환경 개선, 정부 사업 등의 대상여부가 그 뒤를 이음.

표 100. 의견조사 응답결과_(2) 재활의료 중요성에 관한 사항 (계속)

구분	범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종합 순위
재활환자 기능회복을 위한 중요성 우선순위	통합적 치료계획 수립	5 (17.2)	11 (37.9)	9 (31.0)	3 (10.3)	1 (3.4)	3
	초기 집중재활 시행	10 (34.5)	10 (34.5)	8 (27.6)	1 (3.4)	0 (0.0)	1
	단계별 지속적 재활 시행	1 (3.4)	0 (0.0)	6 (20.7)	17 (58.6)	5 (17.2)	4
	주기적인 환자 모니터링	0 (0.0)	0 (0.0)	2 (6.9)	6 (20.7)	21 (72.4)	5
	환자의 인식 및 의지	13 (44.8)	8 (27.6)	4 (13.8)	2 (6.9)	2 (6.9)	2
재활환자 재택복귀를 위한 중요성 우선순위	독립활동 가능여부/ 기능회복 정도	20 (69.0)	7 (24.1)	2 (6.9)	0 (0.0)	0 (0.0)	1
	재활에 대한 환자의 지식	5 (17.2)	8 (27.6)	8 (27.6)	4 (13.8)	4 (13.8)	2
	퇴원 후 돌봄제공자 여부	3 (10.3)	8 (27.6)	12 (41.4)	2 (6.9)	4 (13.8)	3
	주거환경 개선	1 (3.4)	6 (20.7)	3 (10.3)	17 (58.6)	2 (6.9)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여부	0 (0.0)	0 (0.0)	4 (13.8)	6 (20.7)	19 (65.5)	5
계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 다음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서비스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질의한 결과임.

- 10가지 범주에 대한 종합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대부분이 재활의료 평가 및 진단을 가장 중요한 서비스 항목으로 응답함. 재활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향후 재활치료 계획수립과 치료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그 외 가장 많은 재활환자 질환군이었던 뇌신경 등의 재활과 소아재활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응답함. 그 외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업에 대한 순위는 7위로 상당히 낮은 중요항목으로 응답함.

표 101. 의견조사 응답결과_(2) 재활의료 중요성에 관한 사항

구분	범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종합 순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재활의료서비스 항목	재활의료 평가 및 진단	20 (69.0)	2 (6.9)	1 (3.4)	3 (10.3)	1 (3.4)	2 (6.9)	0 (0.0)	0 (0.0)	0 (0.0)	0 (0.0)	1
	뇌신경 및 척수재활	4 (13.8)	13 (44.8)	6 (20.7)	3 (10.3)	0 (0.0)	2 (6.9)	1 (3.4)	0 (0.0)	0 (0.0)	0 (0.0)	2
	근골격재활 및 통증치료	0 (0.0)	2 (6.9)	5 (17.2)	6 (20.7)	4 (13.8)	4 (13.8)	1 (3.4)	2 (6.9)	3 (10.3)	2 (6.9)	5
	심장 및 호흡기 재활	0 (0.0)	5 (17.2)	6 (20.7)	5 (17.2)	9 (31.0)	1 (3.4)	1 (3.4)	1 (3.4)	0 (0.0)	1 (3.4)	4
	소아재활	4 (13.8)	2 (6.9)	8 (27.6)	7 (24.1)	5 (17.2)	2 (6.9)	1 (3.4)	0 (0.0)	0 (0.0)	0 (0.0)	3
	재활 심리평가와 치료	0 (0.0)	3 (10.3)	1 (3.4)	4 (13.8)	3 (10.3)	9 (31.0)	4 (13.8)	4 (13.8)	1 (3.4)	0 (0.0)	6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업	0 (0.0)	0 (0.0)	2 (6.9)	0 (0.0)	3 (10.3)	4 (13.8)	8 (27.6)	6 (20.7)	3 (10.3)	3 (10.3)	7
	가족력 및 가옥구조 평가	0 (0.0)	1 (3.4)	0 (0.0)	1 (3.4)	0 (0.0)	1 (3.4)	1 (3.4)	6 (20.7)	6 (20.7)	12 (41.4)	10
	의지 및 보조기, 보장구	0 (0.0)	1 (3.4)	0 (0.0)	0 (0.0)	1 (3.4)	2 (6.9)	4 (13.8)	9 (31.0)	12 (41.4)	1 (3.4)	8
	재활임상연구	1 (3.4)	0 (0.0)	0 (0.0)	0 (0.0)	3 (10.3)	2 (6.9)	8 (27.6)	1 (3.4)	4 (13.8)	10 (34.5)	9
계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1.4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 현재 성남권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의 충분정도를 질의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조사응답자가 24명(8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확충이 필요한 자원으로 급성기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 전문재활치료센터와 재활의료기관을 응답함.

표 102. 의견조사 응답결과_(3)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계속)

구분	범주	명	비율(%)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충분정도	매우 충분하다	1	3.4
	충분하다	4	13.8
	충분하지 않다	23	79.3
	매우 충분하지 않다	1	3.4
지역 내 재활 인프라 중 확충이 필요한 자원	급성기병원 내 전문재활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11	37.9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10	34.5
	외래 재활의료기관 (병·의원)	4	13.8
	요양병원	1	3.4
	요양원	0	0.0
	보건소	0	0.0
	사회복지관	1	3.4
	민간 재활서비스 기관	2	6.9
계		29	100.0

□ 현재 지역 내 필요로 되는 서비스에 대해 제공기관 및 제공항목별로 범주화하여 질의한 결과임.

- 대부분의 지역서비스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특히 보건소 연계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재가서비스 및 장애보조기 등의 제공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15명(51.7%)으로 높았음.

표 103. 의견조사 응답결과_(3) 재활의료 인프라 및 지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구분	범주	명	비율(%)
지역서비스 필요도	1) 보건소 연계 재활프로그램	매우 필요하다	14	48.3
		필요하다	15	51.7
		필요하지 않다	0	0.0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2) 사회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매우 필요하다	12	41.4
		필요하다	15	51.7
		필요하지 않다	2	6.9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3) 요양시설 내 재활프로그램	매우 필요하다	12	41.4
		필요하다	14	48.3
		필요하지 않다	1	3.4
		매우 필요하지 않다	2	6.9
	4) 재택의료 등 재가서비스	매우 필요하다	15	51.7
		필요하다	13	44.8
		필요하지 않다	1	3.4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5) 장애 보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매우 필요하다	15	51.7
		필요하다	12	41.4
		필요하지 않다	2	6.9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6) 주거환경 개선지원 협력 기관과의 연계	매우 필요하다	13	44.8
		필요하다	15	51.7
		필요하지 않다	1	3.4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7) 상병수당 등 경제적 지원	매우 필요하다	11	37.9
		필요하다	17	58.6
		필요하지 않다	1	3.4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계			29	100.0

1.5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 원내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지역자원의 연계 경험유무에 대한 질의한 결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로 대부분 연계 업무는 수행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로 연계한 것으로 응답함.

표 104. 의견조사 응답결과_(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계속)

구분	범주	명	비율(%)
지역자원 연계 관련 업무 경험 유무	경험해본 적이 있다	6	20.7
	경험해본 적이 없다	23	79.3
계		29	100.0

표 105. 의견조사 응답결과_(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연계경험 있는 경우) (계속)

구분	범주	명	비율(%)
(경험이 있는 경우) 연계한 기관의 유형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또는 권역재활병원	2	33.3
	지역 내 보건소	1	16.7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관	2	33.3
	지역 내 재활의학과 병·의원	1	16.7
	시·군·구 행정기관	0	0.0
(경험이 있는 경우) 연계 원활여부	매우 원활했다	0	0.0
	원활했다	4	66.7
	원활하지 않았다	2	33.3
	매우 원활하지 않았다	0	0.0
계		6	100.0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그렇다' 이상, 89.7%)과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그렇다' 이상, 82.7%)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비슷한 맥락으로 보건소 연계 재활프로그램인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

(CBR)' 사업을 모르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16명, 55.2%)임. 이에 더해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인력의 부족도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명(82.8%)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6. 의견조사 응답결과_(4) 재활환자 지역연계에 관한 사항

	구분	범주	명	비율(%)
지역사회 자원연계 장애요인	1)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매우 그렇다	3	10.3
		대체로 그렇다	21	7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17.2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2)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매우 그렇다	4	13.8
		대체로 그렇다	22	75.9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10.3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 자원연계를 위한 지역적, 지리적 조건의 불리	매우 그렇다	6	20.7
		대체로 그렇다	12	41.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	37.9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4) 기관장 및 담당자의 연계에 대한 인식 부족	매우 그렇다	5	17.2
		대체로 그렇다	12	41.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41.4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5)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인력의 부족	매우 그렇다	8	27.6
		대체로 그렇다	16	55.2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13.8
		전혀 그렇지 않다	1	3.4
	6) 사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기회 부족	매우 그렇다	4	13.8
		대체로 그렇다	19	6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20.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3	44.8
		모르고 있다	16	55.2
계			29	100.0

/05/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1. 성남권 재활의료 현황 종합결과
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3.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 선행과제
4. 결론 및 제언

01 성남권 재활의료 현황 종합결과

가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 및 이용 현황

□ 성남권 내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9개소로 종합병원급 이상 8.5%(11개소), 병원급 24.8%(32개소), 한방병원 10.1%(13개소), 요양병원 32.6%(42개소), 재활의학과 의원 24.0%(31개소)로 요양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김윤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기준을 적용하여 재활형 및 요양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기준을 활용하여 성남권 내 병원급 재활의료기관을 분류한 결과 기준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병원은 18.8%(6개소), 요양병원은 4.8%(2개소)로 일부 기관만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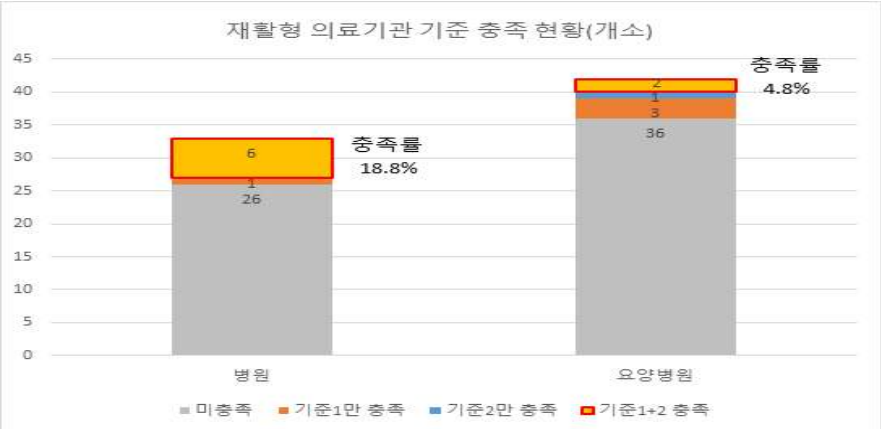

그림 58. 재활형 의료기관 기준 충족 현황 (개소)

※ 재활형 재활의료기관 분류 기준

	기준 1	기준 2
시 설	60병상 이상	85병상
인 력	재활의학과 의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수: 17명
진 료 량	중추신경계 환자 기준 입원 시 운동치료 일당 2회 처방 40% 이상	-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 현황 공개자료에서는 진료량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시설, 인력 기준만 활용함
(자료출처: 김윤 등.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 또한 정부 및 공단 등에서는 재활의료의 전문성 확보 및 보상체계 마련 검토 등을 위해 재활의료 관련 시범사업 및 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수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동일 의료기관이 중복 지정된 경우가 있어 실제 재활관련 전문 의료기관은 몇 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지역 내 재활관련 보건 자원으로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는데 시 단위 또는 권역 단위 설치 기관으로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CBR사업은 목표 대상자가 장애인의 5%로 성남권을 다 합해도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권역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환자 상담 등 직접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곤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지역 복지 자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들 수 있음.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이 포함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성남권 내 39개소가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거의 시 단위로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돌봄·요양적 성격의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각각 이용자가 7천명, 5천명 정도로 그 수를 다 합하여도 전체 노인인구의 3% 정도 만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재활의료 관련 지역 내 의료, 보건복지 자원은 배경수요인구*에 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수요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활배경수요인구(2021년) : 성남권 노인인구 38만 명, 장애인 10만 명, 장기요양수급자 4만 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행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국내 재활의료이용 환자수는 2021년 기준 약 1,112만 명으로 이 중 9%가 전문재활의료를 이용한 환자였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19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추세임.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여파로 인한 감소일 것으로 추정함.

□ 전문재활의료 이용환자수는 전체 재활의료 이용자 중 일부이나 전문재활의료 총 사용량은 전체의 42.1%, 전문재활의료 청구진료금액은 전체의 80.7%로 전문재활의료환자가 고비용의 다빈도 집중치료를 이용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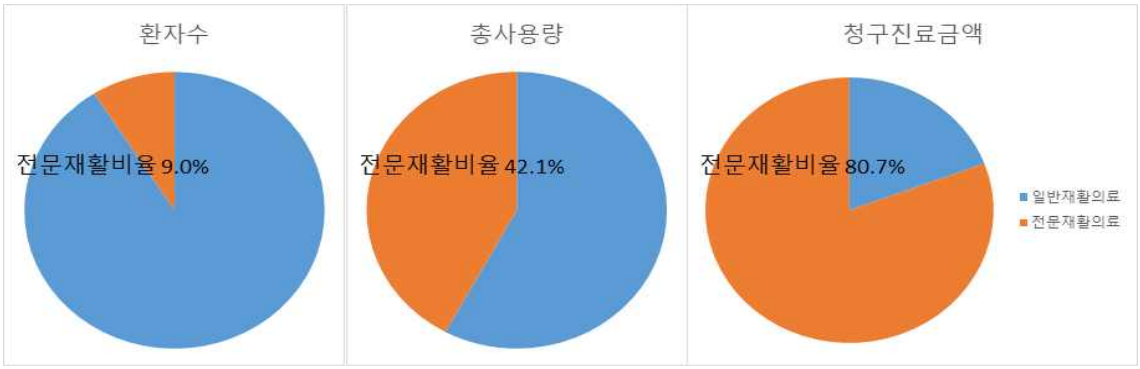

그림 59. 재활의료 청구현황 중 전문재활 구성비 (2021)

□ 국립중앙의료원이 분석한 2020년 기준 성남권 재활환자수는 성남권이 인구천명당 80.5명으로 추정 재활환자수는 약 21만 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구, 광주시, 용인시 수지구 순으로 많았음.

- 재활환자 중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성남권은 4.1%로 전국평균(4.5%)보다 낮았음. 연령대별로는 18세 이하의 전문재활 치료비율이 높았고, 장애여부별로는 장애인의 전문재활 치료비율이 높았음.
- 성남권 재활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요양병원이 52.7%로 가장 높았고, 의원 19.8%, 병원 16.8%, 종합병원 6.2%, 상급종합병원 4.5% 순으로 급성기 재활치료보다는 많은 수가 요양병원, 의원 등에서 유지기(만성기)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음.

나 성남시의료원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 성남시의료원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는 입원환자 26.1%, 외래환자 73.9%였음. 재활치료 구분에 따른 처방건수 구성비는 전문재활 39.4%, 일반재활 51.8%로 재활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급여재활(도수치료, 언어치료 등)이 5.5%, 기능검사가 3.3%였음.

□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치료 시 전문재활비율이 외래치료 시 전문재활비율보다 높았음. 외래 재활치료실은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 대기환자가 있었는데, 치료대기가 많은 치료실은 언어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이었고, 대기 기간이 긴 치료실은 평균 6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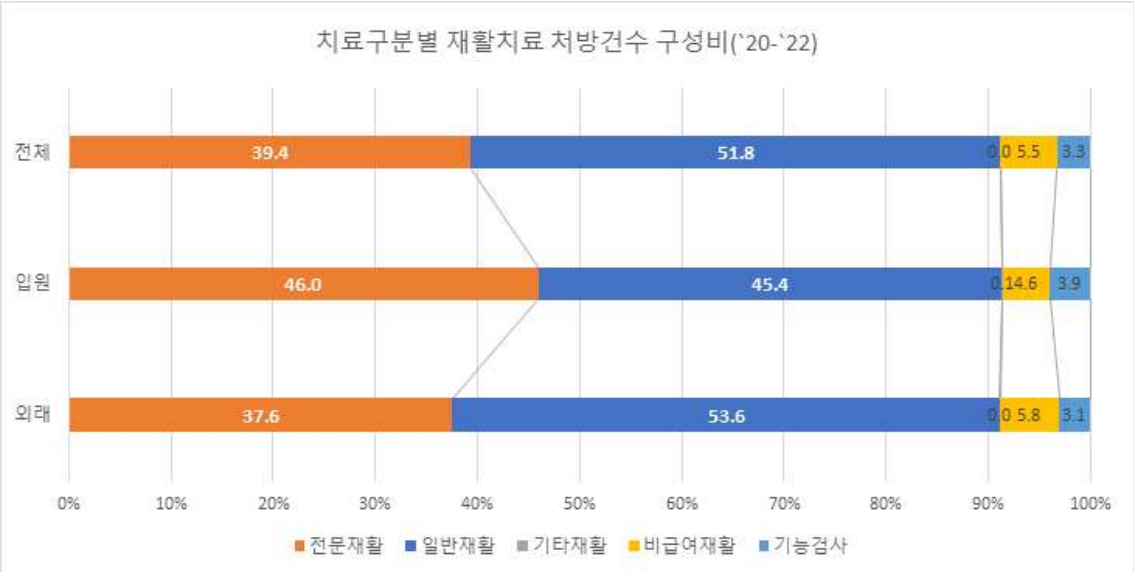

그림 60. 원내 치료구분별 재활치료 처방건수 구성비 (`20-`22)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대상자는 고관절골절 상병 및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로 60대 이상 노령 인구가 대부분이었고, 기저질환 갯수는 평균 2.1개였음.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구를 이용하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70% 이상으로 높아 지속적인 재활 및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음.

□ 가구 유형 중에는 1인 가구 비율이 59.2%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55.1%였는데 환자 활동 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가 없거나, 유급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가족의 돌봄 부담율이 더 커졌음.

□ 입원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은 18.4%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서비스 이용이 낮을 가능성과 기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낮을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 연계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체 대상자의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현황을 보면 평균 1.8건으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기관연계건수는 1.7건이었음.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보호·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 의료비지원 순으로 많았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계한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의료기관, 복지기관, 소방서, 보건소 순으로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음.

□ 종합해보면 의료원의 재활의료서비스는 이용량의 40%가 전문재활의료였고, 외래환자보다 입원환자의 전문재활의료 이용비율이 더 높았음. 외래 재활치료실은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 300명 이상의 대기환자가 있었음. 대기기간이 긴 곳은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참여대상은 노령 인구 비중이 높았는데,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평균 2개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복합적인 자원 연계 수요가 있었음.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률은 낮게 나타나 정보 제공 및 교육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대상자 중 많은 수는 의료원 퇴원 후 병원으로 전원하기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았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재활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다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현황

□ 재활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재활환자의 기능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적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재활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 의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환자가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그러나 성남권 지역내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성기 병원 내 재활치료센터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응답함.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성남권 내에 3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회복기 의료기관의 확충과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보건소 연계 재활프로그램인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CBR)' 사업을 모르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음. 따라서 제공자 측면에서 자원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이 공유되어야 함.

라 결과요약

□ 성남권 재활의료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남권 내 재활필요도가 높은 노인, 장애인 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재활의료인력이나 시설·장비가 충족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부족함. 특히 돌봄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성남권 노인인구 대비 3% 비율로 매우 적음.
- 요양병원, 의원 등 유지기(만성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급성기 및 회복기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확충과 연계시스템이 필요함.
- 다양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돌봄 및 재활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0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가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형태

□ 지역사회 재활자원의 연계는 환자가 가진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기관 단위의 서비스를 기관 간 연계하여 환자에게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자택복귀 예정자인 환자에게 지역사회 자원(의료, 복지)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안정된 생활유지, 재입원 차단, 잔존장애 관리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일반적으로 연계(Linkag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하며, 협력(Cooperation)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으로 정의함. 즉, 연계 및 협력은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해 관계를 맺고 힘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기업, 지역, 개인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모든 사회주체 상호간에 광범위하게 발생함.[50)]

□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주체가 재활환자에게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등을 배치하고 참여 주체 간 정보교환을 통해 적절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계 및 협력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돌봄 등을 위한 개인적 자원, 시설·장비·인력 등의 인적 및 물적자원, 일반적인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의료-복지정책 및 재정지원과 같은 공적 사회제도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자원별로 상호적인 유기적 협조체계가 실현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활자원의 연계 및 협력 형태는 재활의료전달체계 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로, 통합적인 측면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미함. 이에 앞서 고찰 및 검토한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 및 이용 현황,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원내 제공자 설문조사 등의 근거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함.

50) 차미숙·이원섭·김창현 등.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표 107. 지역자원의 구분 및 유형

구분	자원예시
개인적 자원	• 가족, 친구, 이웃, 돌봄종사자 등 자원
인적 및 물적 자원	• 재활관련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 등 • 재활관련 치료서비스 제공 시설·장비 등 • 재활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장비 등
지역사회 자원	• 의료기관 •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스포츠, 여가시설 등 • 학교, 직장 • 종교기관 등
공적 사회제도 자원	•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제도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사업 • 보건의료·복지 시범사업 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복지시책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등

자료출처 : 김진희. 재활의료기관에서의 자원연계. 2020년 재활의료기관 교육 발표자료 발췌 및 재구성. 2020.8.21.

□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효율적인 재활의료체계가 정착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유용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해당 권고안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가 수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정보를 담고 있음.

- 권고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에 따라 체계적인 근거수집 및 평가, 폭넓은 동료검토를 거쳐 전문가 합의과정으로 도출된 내용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재활의료체계라는 프레임에서 ‘강하게(Strong)’ 준용 또는 적용하여 실천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첫 째, 전달체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둘 째, 다학제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셋 째, 의료기관-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제공, 넷 째, 전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다섯 째, 재활관련 예산 및 자원할당 기전 마련이 있음.

□ 앞으로 제시할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의 형태는 해당 권고안 내용과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기능을 재정립 및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보고자 함. 이에 따라 중심주체를 설정하고 재활의료 공급측면, 이용측면, 관리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남권의 자원과 제도적 지원을 연결한 구체적인 자원연계 맵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자 함.

표 108.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체계에서 재활 관련 권고사항

구분	권고강도 (Strength) 근거수준 (Quality of evidence)	권고안
	Conditional (조건부) Very Low (매우낮음)	***"재활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통합되어 제공되어야 함"*** • 보건의료체계에서 재활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 노동과 같은 다른 관련 분야와 연계가 필요하고 보건부가 가장 적절한 관리기관임.
	Strong (강함) Very Low (매우낮음)	***"재활의료체계는 1차, 2차, 3차 전달체계로 통합되어야 함"*** • 많은 국가에서 재활의료를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거나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재활은 연속적인 치료개념으로 모든 수준에서 필요함. • 표준화된 전달시스템과 진료수준별 조정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됨.
	Strong (강함) High (높음)	***"다양한 분야의 재활인력을 확보해야 함"*** • 다양한 분야의 인력은 다양한 재활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줌. • 다학제 재활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성 또는 복합 질환이거나 심각한 상태인 경우에 효과적이며 여러 분야의 인력이 치료의 질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보고됨.
	Strong (강함) Moderate (중간)	***"지역사회 및 병원 재활의료서비스 모두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시기적절한 개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 환경 모두에서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병원에서는 조기 재활을 통해 회복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퇴원할 수 있게함. 퇴원 이후에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발달, 감각기능 이상,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만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장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구분	권고강도 (Strength) 근거수준 (Quality of evidence)	권고안
	Strong (강함) Very High (매우높음)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병원 내 전문재활병동(unit)이 있어야 함"* • 복잡한 재활요구(하지절단, 척수부상, 뇌졸중, 노인)가 있는 환자들에게 기능 회복을 위한 고도로 전문화된 재활병동이 제공되어야 함.
	Strong (강함) Very Low (매우낮음)	*"재활의료전달체계에서 해당 권고안 구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 • 재활에 대한 자원 및 예산을 할당한다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벽이 되는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Conditional (조건부) Very Low (매우낮음)	*"건강보험에서 재활서비스를 보장해야 함"* •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장벽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구조 매커니즘임. • 건강보험에서 재활서비스를 보장한다면 접근성 및 이용이 증가할 수 있음. 건강보험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함.

자료출처 : World Health Organization. Rehabilitation in health system. 2017.

나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기관 유형

□ 지역단위에서 재활연계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급성치료 단계, 기능회복 단계, 사회복귀 단계별로 시군구의 보건-의료-복지자원을 탐색하여 연속·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지역사회 기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성남권 재활자원 인프라를 고찰 및 검토하여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 지역 내 재활환자가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09. 성남권 보건-의료-복지영역 재활 관련 자원

영역	기관유형	개소	기관내용
의료 영역	1) 성남권 재활 관련 의료기관※	160	•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입원 및 외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환경, 지역 보건의료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의·논의체계 구축 ※ (성남권 재활 관련 의료기관) 한 기관이 여러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집계되었음
	- 종합병원, 병·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29	
	- 재활의료기관	3	
	- 재활인증의료기관	6	
	- 장애인건강주치의병원	22	
	2) 지역의사회(성남,광주,용인,하남)	4	
보건 영역	1)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역 장애인의 재활 등 서비스 제공, 복합사례환자 유형의 통합관리, 지역사회 연계 업무 관련 교육, 기관 간 협력활동 지원 등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 및 지역연계 서비스 제공, 6가지 영역별 세부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상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사업 및 신체활동 지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운영	1	
	2) 성남권 CBR 사업수행 보건소	8	
	-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1	
	-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1	
	-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1	
	- 하남시 보건소	1	
	-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1	
	-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1	
	-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1	
	- 광주시 보건소	1	
	3) 성남권 건강생활지원센터	1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경기도 광주)	1	

영역	기관유형	개소	기관내용
복지 영역	1) 성남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15	•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장애인 등록 및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창구 • 돌봄 및 요양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 시설입소 지원 및 제공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지역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노인 일상생활 지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및 심신장애의 경우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활동 지원 • 장기요양수급자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성남시 수정구	17	
	- 성남시 중원구	11	
	- 성남시 분당구	22	
	- 하남시	14	
	- 용인시 기흥구	15	
	- 용인시 처인구	12	
	- 용인시 수지구	11	
	- 광주시	13	
	2) 성남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9	
	- 장애인복지관	6	
	- 주간보호시설	25	
	- 생활이동지원센터	4	
	- 수어통역센터	4	
	3) 성남권 노인복지생활시설	2,169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15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7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1,695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42	

□ 지역단위의 보건-의료-복지체계에서 재활 관련 자원(시설 및 서비스)은 각기 영역별로 집중, 중점을 두는 내용이 상이하고 차별화되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활환자는 치료, 회복, 기능유지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기관 및 서비스 연계가 고민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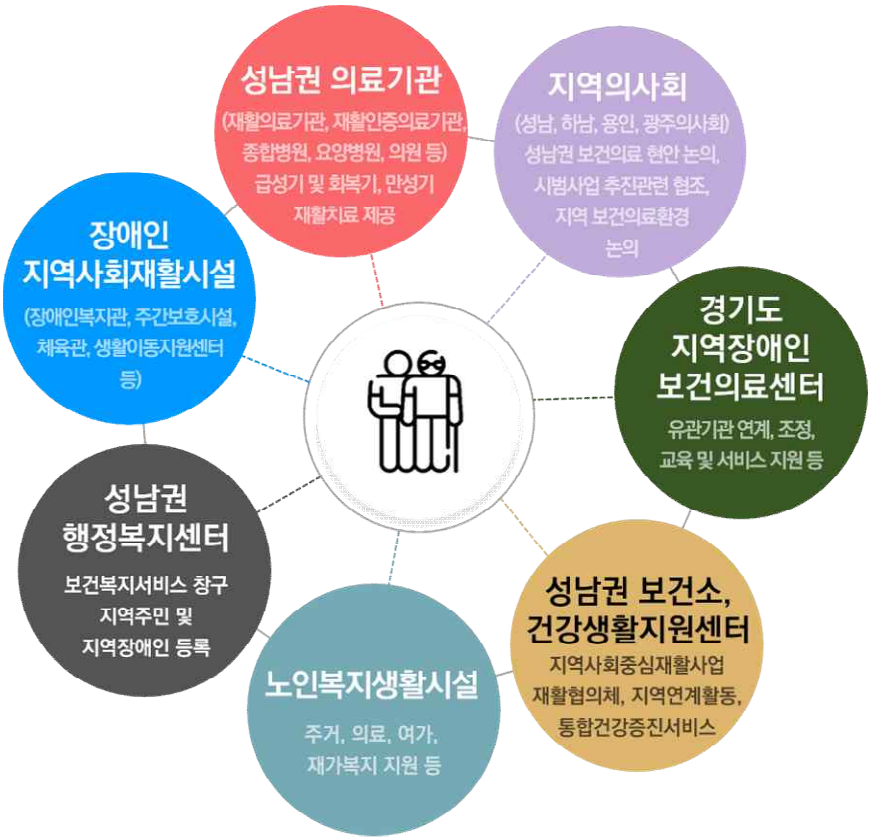

그림 61. 성남권 재활의료 연계 및 협력기관 유형

다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1.1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방향

□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은 공급, 이용, 관리측면에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제도, 방법 등을 연결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인 모형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 째, 급성기-회복기-요양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재정립을 통해 단계별 재활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함.
- 둘 째, 재활의료기관 확대와 자원연계 중심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집중재활치료와 지속적 서비스 이용기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함.
- 셋 째,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로 재활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넷 째,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재활관련 다직종·다학제 팀 구성을 통해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다섯 째, 기관간 연계 및 협력 촉진수단으로써 보건복지부 재활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제안하고자 함.

표 110.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제시방향

구분	핵심과제	내용	모형방향
공급 측면	재활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재활환자의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단계별 재활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급성기-회복기-요양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제안
	재활의료제공기관 확충 및 개편	집중 및 지속적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충, 자원연계중심기관의 기능 확대	재활의료기관 확대 지정, 자원연계중심기관 인프라 확충 제안
이용 측면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 마련	집중치료, 기능회복, 일상생활 복귀로 재활서비스 연속성 확보	재활치료-보존치료 및 재발방지-돌봄 및 요양까지 이어지는 연계 제안
관리 측면	다직종·다학제 팀 접근방식	재활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직종·다학제 팀 접근	지역책임의료기관 재활 관련 다직종·다학제 팀 구성 제안
	기관간 연계 및 협력 촉진수단 마련	효율적 재활환자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인센티브 유인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재활 관련 시범사업 참여 제안

1.2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개요

□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기관으로 설정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단계에 따라 재활치료, 기능향상 및 회복, 기능유지 및 적응을 위해 지역자원을 연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모델로 제안하고자 함.

□ 급성기 재활치료 단계는 질병이 생긴 후 진행을 멈추게 되는 시점까지를 가리킴. 이 단계는 신속,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전문적 치료를 통해 환자 안정 및 합병증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조기 재활개입으로 기능회복을 시작하여 기능을 호전시키는 것이 목적임.

□ 회복기 재활치료 단계는 질환,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면서 일상생활동작(ADL)의 개선을 중심으로 능동적 다양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임. 이 단계는 가정복귀를 목표로 함.

□ 유지기 요양치료 단계는 급성기-회복기재활이 종료된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유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로 기능유지, 사회적응을 목표로 함.

표 111.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개요

연번	모형단계	주요기관	주요역할 및 업무
1	급성기 재활치료	상급종합병원, 권역재활병원	• 급성기 치료 - 응급환자의 처치, 질병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 합병증 치료, 시술 위주의 진료 등 • 중증·고난이도 의료 및 특수분야 재활치료 제공
		1) 지역책임의료기관 다직종·다학제 팀, 2)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지원협력센터	• 급성기 치료 - 응급환자의 처치, 질병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 합병증 치료, 시술 위주의 진료 등 • 조기재활서비스 제공 - 통합치료계획 수립, 다직종·다학제 협업을 통한 체계적 치료제공 • 재활 환자 대상 지역연계 사업 • 지역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업무 수행
2	회복기 재활치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 기능회복을 위한 입원재활치료 • 재활치료 팀 접근방식으로 통합재활치료 제공

연번	모형단계	주요기관	주요역할 및 업무
3	유지기 요양치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 지역사회 연계, 방문재활 등을 통한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재활의학과 병·의원 요양병원 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	• 만성기 환자 대상 기능유지를 위한 보존적 재활치료, 외래재활 치료 제공 등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일반건강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
		성남권 보건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노인복지생활시설	• 기능 및 건강상태 유지 또는 증진 노력 • 가정생활 및 사회에서의 적극적 참여 지원 • 시설입원 및 재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 돌봄-요양 제공

1.3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기관별 역할

1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다직종·다학제 팀

□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재활 관련 전문의(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직종·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환자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각 분야 전문가들은 환자진단, 평가, 간호, 관리, 기관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다직종·다학제 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표 112.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다직종·다학제 팀 역할

연번	업무	업무내용	업무기준
1	급성기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응급처치, 수술, 합병증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통합재활계획수립을 통한 조기재활치료 제공	• 중증·고난이도 환자의 경우 진료지원협력센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 진료분야별 특수전문재활치료 필요시 권역재활병원으로 의뢰
2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퇴원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환자 대상 심층평가, 케어플랜 수립, 의료-복지 연계 및 건강모니터링 (※퇴원환자지역사회연계서식 작성)	• 대상기관 : 지역책임의료기관 • 대상환자 : 입원환자 중 재활연계가 필요한 자
3	(가칭) 지역장애인 재활복귀 사업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보건소 CBR 사업지원, 지역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참여	• 권역책임의료기관(분당서울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행업무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이관·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
4	시범사업 ㅣ 「재활환자 재택의료 사업」	퇴원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 대상으로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이상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대상환자 : 하지주요 3대관절치환술, 하지골절수술

연번	업무	업무내용	업무기준
5	시범사업 Ⅱ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사업	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적, 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관리	• 대상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 대상환자 :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혈관 환자(질병코드 I60~I69)
6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진료지원협력센터 업무협력	• 재활이 필요한 환자 대상 의료기관 의뢰-회송이 필요한 경우 진료지원협력센터에 환자연계	
7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권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조, 지원체계 구축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권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상향조정) • 보건소 CBR 사업 일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참여 •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참여 논의체계 확립	
8	환자 모니터링	• 자택으로 복귀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추적관찰 등 모니터링	

2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진료지원협력센터

□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진료지원협력센터는 '다직종·다학제 팀'와 협력관계를 맺고 해당 팀에서 연계된 환자에 대해 재활의료 필요도가 있는 경우 상급의료기관 또는 권역재활병원으로의 의뢰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회송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표 113.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진료지원협력센터 역할

구분	업무	업무내용	업무기준
1	시범사업 Ⅲ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사업	의뢰기관, 회송기관 간 협력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서비스 연속성 확보	• 의뢰담당, 회송담당 의료기관으로 연계 • 전문병원과 협력진료 협약을 통해 재활 관련 의료기관 의뢰

3 재활서비스 제공 협력기관

□ 상급종합병원은 급성기 치료환자 중 중증인 상태거나 고난이도 수술, 시술,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의뢰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를 연계할 수 있음. 권역재활병원은 포괄적·집중적 입원 및 외래 재활서비스가 필요로 되거나 특수 재활치료 등

이 필요한 경우 환자를 의뢰하여 연계할 수 있음.

□ ‘(가칭)권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단위 자원연계기관 관리 및 감독
- 재활 관련 종사자들의 연계교육 및 지원
- 재활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기관 간 정보제공, 논의 등

□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CBR(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내용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을 필수업무로 규정함.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대상으로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등 포괄적인 기관으로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참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방향 논의
-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강화
-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 지역의사회와 협력 및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협조, 기관 간 정보공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1.2 회복기 재활치료

1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 성남권 재활의료기관은 총 3개소로 성남시 2개소(분당러스크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용인시 1개소(용인린병원)가 유일함. 성남권 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급성기 치료 후 기능회복, 가정으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현재 전국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총 병상수는 약 7,000병상으로 병상추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약 18,000병상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함.
- 2018년 보건보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재활의료기관을 150개소로 증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51] 이에 따라 성남권 인구 고령화 수준을 고려한 회복기 재활의료 필요도를 추계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함.

□ 현재 본사업으로 진입한 재활의료기관 수가사업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표 114.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역할 (회복기 단계)

구분	업무	업무내용
1	입원재활치료 제공	•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등 질환자 입원서비스 제공 • 통합계획관리, 통합재활기능평가, 재활치료 제공
2	통합계획관리, 통합치료계획 수립 (통합계획관리료, 재활치료료)	• 입원 중 다직종 팀접근 통합서비스로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 입원 중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 재활치료 항목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집중재활 치료 실시
3	통합재활기능평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환자평가 시행 •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51)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1.3 유지기 요양치료

□ 유지기 요양치료의 목적은 회복기를 거쳐 어느 정도 회복한 환자의 활동성을 높임으로써 기능 및 건강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 가정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52)]

- 이를 위해서는 재가 또는 시설 입소 생활 중에도 전문적인 재활 상담이나 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유지기 초기에는 재가 생활로의 정착,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신체적 기능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

1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계사업

□ 성남권 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확대 지정된다면 회복기-유지기에 걸쳐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표 115.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역할 (유지기 단계)

구분	업무	업무내용
1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료)	• 집중 재활치료 후 장애관리 등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기관내 활동 : 기관내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기관 연계 - 현장방문활동 : 환자(보호자)와 함께 거주지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 방문하여 연계
2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 환자 퇴원 후 자택을 방문하여 주거 및 생활(돌봄) 환경평가 등 자택복귀를 지원 -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전문가 2인 이상 방문
3	시범사업 Ⅳ 「방문재활수가」 사업 (2023년 도입)	•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자택방문해 재활치료 시행 • 매체를 통해 환자상태 공유 및 기능평가 등

52) 정현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제보고서. 2019.

2 성남권 재활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 재활환자 상태별로 병·의원, 요양병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등의 연계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일반진료 및 검사 제공
- 진찰, 처방, 만성질환 및 합병증, 급성·아급성 질환관리
-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 장애인 대상 주장애관리, 장애인 건강검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 등

□ 성남권 보건소 총 8개소는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에 참여 중이나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재활서비스 연계 및 제공이 가능할 것임.

표 116. 보건소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역할

구분	업무	업무내용
1	건강관리서비스	• 배뇨·배변관리, 욕창·피부관리, 영양관리, 구강관리, 통증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2	재활훈련서비스	• 재활운동교육, 일상생활동작훈련, 관절구축예방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3	사회참여서비스	• 외출/나들이/체험, 가족소모임 등
4	자원연계서비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활센터, 보조기기센터, 행정기관 등과 연계
5	자기역량서비스	•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제공 등
6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 나를 이해하기,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우리지역 자원 활용하기 등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지역의사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 • 사업 운영방향, 재활관련 자원발굴, 의사소통 및 상호연계 등의 논의

3 취약계층 돌봄·요양서비스 제공기관 및 재가서비스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시설과 기관을 확보하고, 지역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연결해 방문 또는 자택에서 돌봄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지역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 또는 방문한 경우 체력증진, 신체기능 회복활동 지원 및 차량 운행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의 심신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는 노인성 질환, 심신쇠약 등으로 입소한 경우 주거여건, 급식, 그 밖에 일상편의를 제공함.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와 장애인 건강관리 및 검진 등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함.

표 117. 취약계층 돌봄·요양 제공기관 및 재가서비스

구분	업무	내용	
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센터	• 한국수어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	노인복지생활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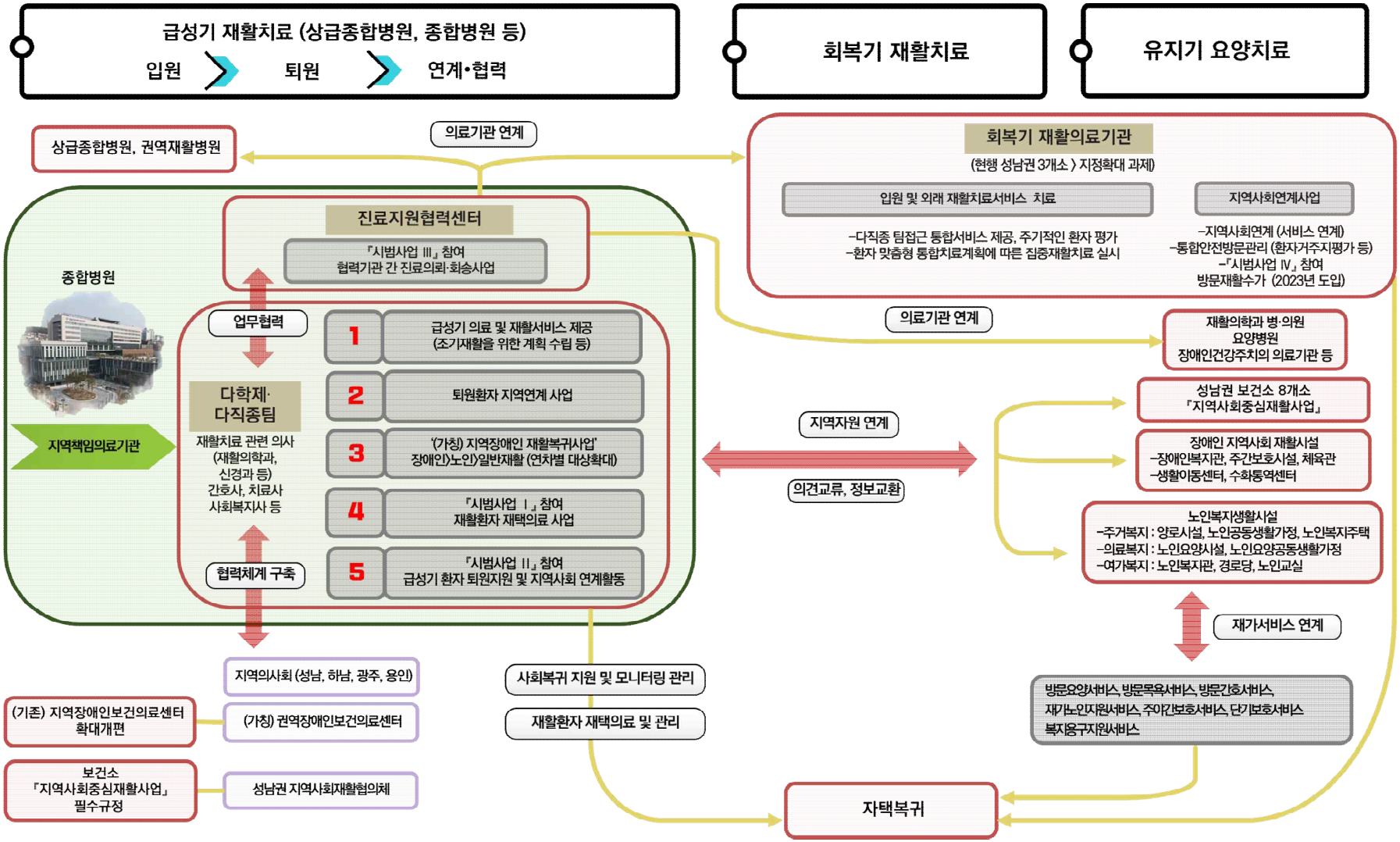

그림 62.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

03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 선행과제

가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및 연계인프라 확충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본 사업 궤도에 진입한 이후 현재 45개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이나 향후 100~150개소(약 15,000~25,000병상)로 확대가 필요할 것임.[53] 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기능회복 단계에서 충분히 시의적절한 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성남권 3개소 외에도 추가적인 지정 및 운영이 요구됨.

□ 더불어 조기재활-집중재활-지속재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 분야 병상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고려해야 함.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 재활분야 병상은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높고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추정함.

표 118. 재활분야 병상수급 분석결과

구분	공급량 (2018, A)	수요량					수급차 (B-A)
		2020	2021	2022	2023	2024(B)	
전국	13,118	15,007	15,127	15,275	15,429	15,586	2,468
서울	2,909	2,763	2,769	2,781	2,795	2,809	-100
경기	3,382	3,752	3,820	3,891	3,955	4,019	637

자료출처 : 박수경 등.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19.
주 1) 수급차가(+)면 부족, (-)면 과잉공급임.

□ 원활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시군구 수준에서 재활의료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 논의체계를 만들어 기관 간 기능을 정립해야 함. 더불어 재활의료기관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친화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권역단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해야 함.

53)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함. 지역 접점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소화하고 권역에서 이를 총괄관리하는 모델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 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갖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성의 기능, 인력 및 인프라, 실제 의료 및 치료와 복지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임.

나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 마련

□ 성남권 내에 재활서비스를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은 다양하지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분절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한 촉진수단도 없음. 이에 따라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활 관련 정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함.

표 119. 보건복지부 재활 관련 시범사업 정책

구분	시범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준
1	시범사업 Ⅰ 「재활환자 재택의료」 사업	• 퇴원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 대상으로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이상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 대상환자 : 하지주요 3대관절치환술, 하지골절수술
2	시범사업 Ⅱ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사업	• 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적, 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관리	• 대상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 대상환자 :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혈관 환자(질병코드 I60~I69)
3	시범사업 Ⅲ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사업	• 의뢰기관, 회송기관 간 협력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서비스 연속성 확보	• 대상기관 : 의뢰·회송 시범기관 • 대상환자 : 의뢰 또는 회송을 필요로 하는 환자

구분	시범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준
4	시범사업 Ⅳ 「방문재활수가」 사업 (2023년 도입)	•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자택방문해 재활치료 시행 • 매체를 통해 환자상태 공유 및 기능평가 등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 대상환자 :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한 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직종·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집중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사업가, 환자와 환자가족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다 환자·기관 정보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성남권 내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고 해당 근거에 기반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수행이 활성화되어야 함.

- 중진료권 내에 재활청구 현황 등을 통해 일반 및 전문재활치료 환자 규모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생산해야 함. 특히 고령화 등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전에 반영하여 필요로 되는 재활서비스 수요도를 측정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함.

□ 지역사회 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자원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지역별로 중점을 두는 재활 관련 자원을 파악하고 편차를 분석해야 하며 시군구 단위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등록해 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보건소 CBR 필수업무인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단위 기관들 간의 정례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의체에 포괄적인 기관을 참여시켜 지역 공공 및 민간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모니터링 루트를 점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해야 함.

양적 확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성남권 재활의료기관 추가 지정 및 운영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진료권 내 추가 지정·운영 (※ 전체 45개 재활의료기관 중 성남권은 3개소 (분당구 2개소, 용인시 1개소))
	연계 중심기관의 인프라 확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을 지역 시군구 단위로 확충 (※현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단위로 기능변경)	재활서비스 연계 중심기관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확충하여 운영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가칭) 지역장애인 재활복귀사업' (기존 지·장·보 역할)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기존 지·장·보 역할은 기능을 권역단위로 상향조정
질적 개선	재활의료 관련 시범사업의 적극 참여	시범사업 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범사업 Ⅱ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시범사업 Ⅲ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시범사업 Ⅳ 『방문재활수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시행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 후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협조를 통해 사업참여 여부 결정 -재택의료 시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지역사회연계활동 : 국공립병원 등 대상 -진료의뢰·회송사업 : 의뢰·회송하는 협력 요양기관 -방문재활수가 :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해당
	다직종·다학제 팀접근 통합관리 체계로 개선	다직종·다학제 재활인력 팀 구성	다직종·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환자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
환자·기관 정보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활 관련 연구 활성화 및 지원	중진료권 내 재활환자 추계 및 서비스 수요도 측정	중진료권 내 재활청구 현황 등을 통한 일반 및 전문재활치료 환자수 추계, 인구기반 조사, 행정자료 등 건강상태 기반으로 재활서비스 필요도 추정 연구 활성화 및 지원
	재활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진료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자원의 분포 (지역별 제공자원의 편차 확인), 시군구별 연계 가능한 공공 및 민간자원 정보 등록 및 모니터링, 장애인등록통계·주민등록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자료원을 통한 DB 구축
	지역사회재활의료협의체 활성화 (보건소 CBR 사업)	보건소 단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수)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지침서 20쪽)	지역 공공 및 민간단체들과의 정보공유, 자원관리, 연계 모니터링 등

그림 63.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

04 결론 및 제언

1.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성남권 재활 관련 지역자원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기관 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재활환자가 단계별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부족, 지역사회에 연결되는 체계의 결여, 사회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

- 첫 째, 성남권 내 재활관련 지역자원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단계별로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배치하여 제시하였음.
- 둘 째, 성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재활자원의 연계 및 협력모델의 중심기관으로 설정하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복귀 연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함.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연계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역량과 권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유용한 활용자원으로 제시함.
- 셋 째, 지역기관들의 연계 및 협력수단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간 연계·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공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음.

- 첫 째, 노인 및 장애인 등 재활이 필요로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모형으로 소아 재활환자와 같은 특정 환자군이나 뇌졸중 등의 질환중심별 연계 및 협력모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기 어려웠음.
- 둘 째, 재활자원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 재정적 지원 대책과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기 어려웠음.

□ 향후 재활자원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자(환자) 중심 관점을 견지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여부를 고려한 더 발전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2 제언

가 지역단위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 필요

□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는 노인의 건강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 쇠퇴와 동시에 의료적 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노인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분절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 형태가 아닌 보건-의료-복지영역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될 것임.

-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지역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이후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까지 해결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재활은 신체를 집으로만 옮기는 과정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삶의 방식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거주지 지자체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 재활의료 수가체계 개편 필요

□ 현행 재활의료 수가구조의 문제점은 재활보다는 물리치료 중심의 수가체계인 것과 영상검사나 수술처치 등 수입보전이 어려운 재활분야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54)]

54) 정현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제보고서. 2019.

□ 특히 사회복귀에 필요한 활동적 치료, 언어재활 등의 수가가 불충분하고 직접 치료사가 수행해야 하는 고난이도 재활은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에 대증요법적 물리치료 항목에 치중하는 등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쪽에 집중되고 있음.[55]

□ 이에 따라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세분화 및 다양화로 수가를 개편하고 환자의 요구도와 이용 빈도수가 높은 전문재활서비스의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함. 또한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재활환자는 일반적인 이학요법료 이용자보다 본인부담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더불어 지역사회연계료 등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지원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다 재활의료전달체계 참여기관 간 충분한 합의 도출

□ 재활의료전달체계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부터 요양병원, 소규모 의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관이 포괄되어 있음. 이에 따라 환자의 신체기능과 상태별로 적정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분담에 대한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함.
- 예로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재활치료가 포함되어 있어 상급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음. 이로 인해 재활의료기관-요양병원 간 기능 개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기-유지기 단계에서 치료받을 기관에 혼선을 빚고 있음.

□ 더불어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모형에서 기관 간 협력 촉진수단으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선행적으로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함. 환자의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역량과 자산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함.

55) 정현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제보고서. 2019.

라 지역자원 정보공유 및 홍보체계 활성화

□ 성남시의료원 재활의료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의료제공자들이 공유할 수 있고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보고됨. 특히 지자체 별로 지역자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자원을 통합적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더불어 지자체 별로 중점을 두는 재활 관련 지역사회 사업, 프로그램, 건강강좌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홍보체계가 미흡하고 전달채널이 제한적이어서 제공자 및 이용자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경우가 존재함.

□ 이에 따라 활용가능한 지역자원 팜플렛, 교육자료, 영상자료 등을 개발하고 홍보채널을 적극 개발하여 환자 및 제공자들이 다각도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또한 자원연계 및 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6/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 및 재활환자 평가 발표자료. 2022.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의 이해 발표자료.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설명회 자료 재구성.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 자료. 2022.8.
경기도청. 2020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통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지역연계활동 교육자료. 2020.8.2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INSIGHT. 2021년 겨울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2022.12.13. 수집).
권범선. 재활의료 공급체계와 전달시스템.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60-863.
김수연·김소중·신용일. 해외 재활의료전달·공급체계. 대한의사협회지 2017;60(11):875-884.
김원석·정윤선·백남종 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재활치료 현황 및 사회복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기초조사 - 중간분석 주요결과 -. 주간 건강과 질병 2020;13(42):3009-3026.
김윤 등.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김준성 등. 장애인의 조기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김태연·이강식.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에서의 의료사회복지업무 현황 : 사례연구. 재활복지 2021;25(2):57-78.
김태진, 주희진, 이효주 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박수경 등.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II.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19.
백남종. 권역거점병원-지역병원-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ICT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 지속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편익분석. 질병관리청 학술연구 용역보고서. 2021. 재구성.
보건복지부 등.「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보건의료〉 의료기관정책.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현황.
보건복지부.「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문. 2022.8.30.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2021.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선정 계획. 2022.6.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침. 2017.10.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22.

삼육대학교. 지역사회중심 포괄개발을 위한 「WHO CBR 가이드라인」 번역본. 2010.
서제희, 최지희, 이나경 등.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모형-재활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신명희. 현행 재활의료전달체계와 개선방향. HIRA 정책동향 2017;11(5):7-11.
신용일 등. 권역재활병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보고서. 2018.
신용일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보고서. 2018.
신지영, 유명순.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분석. 보건사회연구 2022;42(1):106-124.
신형익 등.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이얼 등.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체계 에 관한 연구 -온타리오주 법령을 중심으로-. 2020.04.
이해인, 박정선, 최수향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인식도와 중요도 연구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2020;12(2):25-35.
이호승·정민예.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이용현황과 재활서비스 개선방안.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21;29(2):1-14.
전진아, 전민경, 홍선미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정현선.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제보고서. 2019.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차미숙·이원섭·김창현 등.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한영숙.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활용. HIRA 정책동향 2017;11(5):37-48.
헬스코리아뉴스.「복지부,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신규 공모」. 2021.4.12.
호승희 등. 재활서비스 수가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1.
호승희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Gutenbrunner C, Nugraha B. Chapter 2:Rehabilitation-2.1 Rehabilitation as health strate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2019;2(5):15-18.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rehabilitation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Rehabilitation.

/07/

부록

1.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 성남권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현황
3. 성남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4. 성남권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5. 성남권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6. 성남권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7. 성남권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01 성남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1	성남시 수정구	순천의료재단 성남정병원	종합병원	245	2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6	031-757-8900
2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307	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031-738-7000
3	성남시 수정구	위례재활의학과병원	병원	134	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6 6층~9층 (창곡동)	031-751-0660
4	성남시 수정구	연세스타병원	병원	58	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 5층 일부, 6층 (신흥동)	1670-7088
5	성남시 수정구	지우병원	병원	60	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83(태평동)	031-756-8355
6	성남시 수정구	성모월병원	병원	116	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층일부, 2~9층 (수진동)	031-751-2075
7	성남시 수정구	우리효사랑요양병원	요양병원	170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71(신흥동)	031-735-7500
8	성남시 수정구	파티마 요양병원	요양병원	160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31(신흥동)	031-721-1004
9	성남시 수정구	서울위례바이오요양병원	요양병원	111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99 센트럴메디타운 2층,3층,4층 일부 (창곡동)	031-758-8575
10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요양병원	요양병원	316	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99 5~10층 (창곡동)	031-758-7000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11	성남시 수정구	위례스마트요양병원	요양병원	244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93 더퍼스트메디타워 4층,~ 8층 (창곡동)	031-8039-7676
12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울닥터스요양병원	요양병원	199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9-9 3층 일부, 4층 (창곡동)	031-759-5005
13	성남시 수정구	서울마디튼튼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91 산성역포레스티아아파트 401~404호 (신흥동)	031-778-7177
14	성남시 수정구	마디휴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3 에이플타워 8층 801, 803호 (창곡동)	031-752-1004
15	성남시 수정구	삼성힐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 위례중앙타워 601호,613호~617호 (창곡동)	031-625-3375
16	성남시 중원구	성남중앙병원	종합병원	200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금광동)	031-743-3000
17	성남시 중원구	바른마디병원	병원	82	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0 (금광동)	031-735-9110
18	성남시 중원구	으뜸병원	병원	38	1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성남 메트로칸 3,4층 (성남동)	031-759-1700
19	성남시 중원구	성남요양병원	요양병원	191	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99 행림빌딩 지하1층,3~8층 (금광동)	031-731-8899
20	성남시 중원구	라온힐요양병원	요양병원	197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3 지하3층.2~10층 (여수동)	031-709-9119
21	성남시 중원구	성남제일한방병원	한방병원	56	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15 모란시티 301~308호,501~504호 (성남동)	031-758-1071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22	성남시 중원구	서울재활의학과의원	의원	12	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27 2.3.5.6층 (금광동)	031-732-9810
23	성남시 중원구	강남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99 행림빌딩 2층 202~205호 (금광동)	031-733-7588
24	성남시 중원구	아산유재활의학과의원 유한의원	의원	-	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9 어반스퀘어 7층 701~706호 (여수동)	-
25	성남시 중원구	삼성바른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4 5층 (성남동)	031-751-7585
26	성남시 중원구	현대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4 605호~608호 (성남동)	031-745-0275
27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317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구미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2114
28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종합병원	660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율동)	031-725-6075
29	성남시 분당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종합병원	882	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000
30	성남시 분당구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종합병원	494	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서현동)	031-779-0114
31	성남시 분당구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병원	189	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6 701,801호 (야탑동, 야탑대덕프라자)	1899-0175
32	성남시 분당구	분당베스트병원	병원	149	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32, 1~9층	031-788-5050
33	성남시 분당구	분당척병원	병원	81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75번길 5 중앙빌딩 지1~5층 (야탑동)	031-703-5575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34	성남시 분당구	바른세상병원	병원	179	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3 나우빌딩 5~11층,12일부층 (서현동)	031-1588-2691
35	성남시 분당구	서울나우병원	병원	64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수내동 다운타운 1004~1005호, 1101호, 1104호 (수내동)	02-1577-5975
36	성남시 분당구	의료법인 신창의료재단 분당에이치병원	병원	39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801,704호 (정자동, 월드비터)	031-714-0141
37	성남시 분당구	의료법인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	병원	31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3~8층 (정자동, 뉴본타워)	031-716-0007
38	성남시 분당구	성모요양병원	요양병원	69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13 (야탑동)	031-707-9100
39	성남시 분당구	카리스요양병원	요양병원	114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8 1층 일부~4층 (서현동)	031-709-1234
40	성남시 분당구	분당센트럴요양병원	요양병원	164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17 지1층~5층 (이매동)	031-706-9090
41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요양병원	요양병원	96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3 2,3,4,6층 (야탑동, ROOKIE 1129)	031-703-7500
42	성남시 분당구	분당연세요양병원	요양병원	256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375번길 31 지하1층,1,2,3층 (야탑동)	031-703-0888
43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	요양병원	527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금곡동, 보바스기념병원)	1877-5661
44	성남시 분당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한방병원	75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수내동, 동국대한방병원)	031-710-3700
45	성남시 분당구	분당자생한방병원	한방병원	70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13 1~6층 (서현동)	031-789-0711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46	성남시 분당구	분당나로한방병원	한방병원	95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산젬월드 6, 8층 (금곡동)	031-701-3000
47	성남시 분당구	메트로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 501호 502호 (야탑동, 메트로빌딩)	031-781-6543
48	성남시 분당구	서울방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 분당아미고타워 412,413호 (야탑동)	031-778-6151
49	성남시 분당구	본탑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35번길 5 앤 타운빌딩 5층 501호 (서현동)	031-718-8800
50	성남시 분당구	분당참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88 성심빌딩 2층 일부호 (정자동)	031-716-7579
51	성남시 분당구	서울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8 401호,401-1호,402호,410호,501호,511호 (구미동)	031-786-1666
52	성남시 분당구	서울믿음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607호 (정자동, 젤존타워3)	031-718-5955
53	성남시 분당구	분당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 301호 (정자동, 정자역플라자)	031-711-7595
54	성남시 분당구	서울휴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15 402호 (정자동, 제나프라자)	031-717-7375
55	성남시 분당구	판교우리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311,312호 (삼평동)	031-724-2585
56	성남시 분당구	한빛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33 501호 (판교동, 한솔프라자)	031-8016-7170
57	하남시	금병원	병원	30	12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39번길 74 (신장동)	031-796-0126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58	하남시	더 바른병원	병원	46	17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93-1 (신장동)	031-796-9500
59	하남시	청봉병원	병원	53	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2번길 5-4 청봉기념병원 (신장동)	1661-5727
60	하남시	햇살병원	병원	62	10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51 (신장동)	031-791-7330
61	하남시	하남S병원	병원	128	12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41 (덕풍동)	1644-0025
62	하남시	미사튼튼병원	병원	44	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3 미사강변 노블레스 7~8층 (망월동)	1588-7562
63	하남시	유나이티드병원	병원	38	17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48 해든마루빌딩 3, 4층일부, 5층 (풍산동)	1833-2275
64	하남시	미사바른병원	병원	82	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90 하남미사롯데캐슬스타 3층	1544-8297
65	하남시	하남요양병원	요양병원	103	5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로 94-5 (하산곡동)	031-795-3805
66	하남시	하남샬롬요양병원	요양병원	127	5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77 (신장동)	031-796-1616
67	하남시	강동서울대효요양병원	요양병원	184	23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72 SR광장프라자 204~208호,3층,4층,5층호 (망월동)	031-8026-2222
68	하남시	미사강변요양병원	요양병원	243	24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24 트레비타워 4~8층 (망월동)	031-8028-5577
69	하남시	강동스마일요양병원	요양병원	273	1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70 산우빌딩 지3, 지1, 1층일부, 2~5층호 (풍산동)	031-794-9939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70	하남시	라이프요양병원	요양병원	286	1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42 DK골드타워 3~7층 (풍산동)	031-795-4900
71	하남시	미사경희한방병원	한방병원	52	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80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11-1BL) 3층 3005~24호, 3026~28호, 3038~50호 (망월동)	031-699-1588
72	하남시	미사다나음한방병원	한방병원	42	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60 THE060 4, 5층 (풍산동)	031-792-7579
73	하남시	청우한방병원	한방병원	100	15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8 위너스프라자(307~312,4층전체, 502-1~505, 507~512, 610~612) 3~6층 (풍산동)	031-753-1075
74	하남시	예스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2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현대베스코아 8층 804,808,809호 (신장동)	031-8027-2669
75	하남시	하남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4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57 2층 (신장동)	031-792-7975
76	하남시	미사바른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0 더 오페라 5층 503~507호 (망월동)	031-8027-6996
77	하남시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1 미사역 큐브앤 타워 7~8층 (망월동)	031-791-7533
78	용인시 기흥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종합병원	658	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1899-1004
79	용인시 기흥구	강남병원	종합병원	360	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강남병원 (신갈동)	031-300-0114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80	용인시 기흥구	엠플러스병원	병원	30	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5 (중동, 더엠프라자 8,9층)	031-285-6900
81	용인시 기흥구	용인연세병원	병원	99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85 (상하동)	031-281-7071
82	용인시 기흥구	김상수병원	병원	36	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11 채러티디벨로퍼(주) 2-4층 (언남동)	031-285-1212
83	용인시 기흥구	연세프라임병원	병원	77	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5 (마북동, 용인프라임병원)	1588-7542
84	용인시 기흥구	동백요양병원	요양병원	181	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동백벤포스타 5~9층 (중동)	031-284-7577
85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요양병원	204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상하동)	031-288-0400
86	용인시 기흥구	효자병원	요양병원	376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874번길 1-30 (상하동)	031-288-0500
87	용인시 기흥구	용인효요양병원	요양병원	187	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6-2 지하1~5층 (마북동)	031-282-9114
88	용인시 기흥구	강동요양병원	요양병원	140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70 (구갈동, 구갈메가타운 8,9층)	031-282-6262
89	용인시 기흥구	더원요양병원	요양병원	295	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52 더원병원 (신갈동)	031-282-8123
90	용인시 기흥구	케어스힐요양병원	요양병원	173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28 (보라동)	031-285-2000
91	용인시 기흥구	베스트안요양병원	요양병원	187	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05번길 6 6~9층 (영덕동, 흥덕U프라자)	031-216-2279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92	용인시 기흥구	흥덕우리요양병원	요양병원	199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9 용인메디컬센터 지하3층,지하1층,1층,3~7층 (영덕동)	031-8001-8000
93	용인시 기흥구	의료법인광화의료재단 하워드힐병원	요양병원	383	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23 (영덕동)	031-217-0303
94	용인시 기흥구	경희나로한방병원	한방병원	51	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B동 3,6,7층 (중동)	031-360-7579
95	용인시 기흥구	라현한방병원	한방병원	50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쥬네브,5003~5006호 5층 (중동)	031-274-7572
96	용인시 기흥구	대한통합한방병원	한방병원	45	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1 채움프라자 2,3층 (영덕동)	031-217-1072
97	용인시 기흥구	굿모닝한방병원	한방병원	254	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79번길 24 3~9층 (영덕동)	031-547-0800
98	용인시 기흥구	용인마디튼튼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80 2,4층 (언남동)	031-286-1100
99	용인시 기흥구	뉴밸런스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5 401.402호 (보라동, 보라메가타운)	031-8005-9000
100	용인시 처인구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종합병원	250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 다보스종합병원 (김량장동)	031-8021-2114
101	용인시 처인구	명주병원	종합병원	229	1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39번길 8-6 (김량장동)	1522-8119
102	용인시 처인구	용인제일메디병원	병원	200	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1-11	031-322-7582
103	용인시 처인구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병원	200	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81 (고림동)	031-337-0114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104	용인시 처인구	조은손병원	병원	72	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 지하1, 자상3~6층 (김량장동)	031-321-8275
105	용인시 처인구	에제르 요양병원	요양병원	99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165	031-338-3687
106	용인시 처인구	용인목토요양병원	요양병원	70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762번길 31	1811 - 6631
107	용인시 처인구	온누리요양병원	요양병원	63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39 (마평동)	031-321-6262
108	용인시 처인구	포브스요양병원	요양병원	176	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32 (마평동)	031-338-0911
109	용인시 처인구	(의)유일재단 하나애요양병원	요양병원	219	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16번길 48 (남동)	031-339-1000
110	용인시 처인구	용인서울요양병원	요양병원	174	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13번길 49 (유방동)	031-335-5000
111	용인시 처인구	로하스용인요양병원	요양병원	182	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21 메디타워 2층일부(201호) 및 3~10층 (김량장동)	031-333-7585
112	용인시 처인구	용인한방병원	한방병원	43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1번길 3 4~7층 (김량장동)	031-336-1070
113	용인시 처인구	용인이안한방병원	한방병원	47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60번길 8-12 5~7층 (역북동)	031-333-0051
114	용인시 처인구	연세솔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9 2층 (김량장동)	031-339-2111
115	용인시 수지구	서울예스병원	병원	99	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36 영일죽전빌딩 (죽전동)	031-1899-7580
116	용인시 수지구	우리호병원	병원	120	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15 4~7층 (풍덕천동, 평은프라자)	031-272-0000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117	용인시 수지구	린병원	병원	320	4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5 (상현동, 광교복합의료센터)	031-8005-1300
118	용인시 수지구	메디하임효요양병원	요양병원	158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64 신주프라자 306호,4층,603호~608호 (죽전동)	031-889-8700
119	용인시 수지구	의료법인광화의료재단러스크병원	요양병원	95	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13번길 2-8 (풍덕천동)	031-898-0007
120	용인시 수지구	(의)수지의료재단수지요양병원	요양병원	129	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22번길 15 (풍덕천동, 수지요양병원)	031-262-0050
121	용인시 수지구	광교참좋은요양병원	요양병원	180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우리상가 3층~9층 (상현동)	031-216-9888
122	용인시 수지구	(의)현당의료재단 늘봄요양병원	요양병원	279	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7 광교복합의료센터,지하1층,1층일부,2층~4층 ,6층 (상현동)	031-659-7800
123	용인시 수지구	리셋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5 203,204,206,207 일부호 (동천동)	031-263-2520
124	용인시 수지구	남다른재활의학과의원	의원	1	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2층 (성복동)	031-262-7585
125	용인시 수지구	신통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1 306~307호 (성복동, 데이파크)	031-889-4647
126	용인시 수지구	바른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 301호 (상현동, 킴앤코시티하임) (상현동)	031-265-7411
127	용인시 수지구	이지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2 401, 402, 403호 (상현동)	031-548-1095
128	광주시	에스알씨(SRC)재활병원	병원	238	6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	031-760-3636

연번	지역	기관명	종별	병상수	물리치료실	주소	전화번호
129	광주시	연세와이재활의학과의원	의원	-	20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64 1,3,4층 (경안동)	031-763-0012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찾기, 2022, 3/4기준

02 성남권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현황

연번	지역	기관명	장애인건강주치의 내역			주소	전화번호
			전문과목	주치의수	서비스유형		
1	성남시 수정구	위례재활의학과병원	재활의학과	1	주장애관리(뇌병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6 6층~9층 (창곡동)	031-751-0660
2	성남시 중원구	우리희망내과의원	내과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 벽산프라자 5층 (중앙동)	031-757-1717
3	성남시 분당구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재활의학과	2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6 3~8층 (정자동, 뉴본타워)	031-716-0007
4	성남시 분당구	분당연세의원	가정의학과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75 미금프라자 302호 (금곡동)	031-719-8400
5	성남시 분당구	한양내과의원	내과, TPI	1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8 404호 (구미동, 분당프라자)	031-718-8875
6	성남시 분당구	연세가정의학과의원	가정의학과, TPI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356번길 3 317호 (수내동, 그랜드프라자)	031-711-4568
7	성남시 분당구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3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000
8	성남시 분당구	서울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TPI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1202호 (야탑동, 장미마을 근린상가)	031-705-3395
9	하남시	김경훈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의원	정형외과	1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8-8 (신장동)	031-793-1246

연번	지역	기관명	장애인건강주치의 내역			주소	전화번호
			전문과목	주치의수	서비스유형		
10	하남시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	1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1 미사역 큐브앤 타워 7~8층 (망월동)	031-791-7533
11	하남시	하남으랏차마취통증의학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 TPI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36번길 7 1층 (덕풍동)	031-792-7501
12	하남시	청봉병원	신경외과, TPI	1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2번길 5-4 청봉기념병원 (신장동)	1661-5727
13	하남시	베스트성모의원	재활의학과	1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50 4층 (덕풍동)	031-792-9454
14	용인시기흥구	보바스어린이의원	재활의학과	1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중동, 쥬네브스타월드3,5층)	031-785-0200
15	용인시기흥구	연세의원	TPI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47번길 2 (보정동, 보정프라자)	031-265-0901
16	용인시기흥구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소아청소년과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98-2 (중동)	031-693-9811
17	용인시처인구	범세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09	031-322-1219
18	용인시처인구	미래내과의원	내과, TPI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포로 106 2층	031-8078-8275
19	용인시수지구	린병원	재활의학과	3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5 (상현동, 광교복합의료센터)	031-8005-1300
20	용인시수지구	으뜸가정의학과의원	가정의학과, TPI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4 3층 (동천동)	031-272-8275

연번	지역	기관명	장애인건강주치의 내역			주소	전화번호
			전문과목	주치의수	서비스유형		
21	용인시수지구	우리들내과의원	내과	1	일반건강관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4 성진프라자 202호,203호 (상현동)	031-266-5430
22	광주시	SRC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4	주장애관리 (지체,뇌병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031-760-3636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수집 2022.12.13.)

03 성남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가 장애인 복지관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분당우리복지재단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031-725-9500 031-725-9510
2	성남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	031-733-3322 031-733-6166
3	용인시	양지바른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94	031-895-3200 031-895-3203
4	용인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031-320-4800 031-320-4899
5	용인시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복지센터	031-270-0200 031-270-0202
6	하남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	031-794-2266 031-794-2261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북부권)	광주시 사기막길 95번길 59	031-768-9400 031-768-9402
2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40	031-762-8532 031-762-8541
3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재단	할렐루야 광주 주간보호센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17-6	031-768-0420 031-768-0421
4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조이하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92,상가동 103호	070-7793-3791 050-8097-3791
5	성남시	분당우리복지재단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1층	031-725-9544 031-725-9548
6	성남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우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8	031-733-9944 031-733-9669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7	성남시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성남행복누리센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92, 도촌복지관 2층	031-720-8554 031-720-8501
8	성남시	참사람들	판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54	031-702-8101 031-709-8101
9	성남시	할렐루야복지재단	사랑의학교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45 4층	031-698-2040 031-8017-0420
10	성남시	말아톤복지재단	말아톤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8,5005호	031-718-3015 031-604-9456
11	성남시	분당우리복지재단	우리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9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909호	070-4820-2822 070-8280-6110
12	성남시	복)양친사회복지회	서호주간센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09	031-757-0109 031-757-4109
13	성남시	함께웃는재단	마음톡톡센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501(구미동, 그랜드프라자)	031-719-6112 031-179-6110
14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굿패밀리복지재단	은행다온주간센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18번길 30	070-4923-6484 031-743-8300
15	용인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031-320-4880 031-320-4899
16	용인시	양지바른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94	031-895-3200 031-895-3203
17	용인시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031-270-0250 031-270-0202
18	용인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341-23	031-322-0297 031-322-0298
19	용인시	베데스다복지재단	더사랑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69	031-284-7610 031-284-7620
20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	다솜의 집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832번길 56	031-321-4170 031-321-2947
21	용인시	말아톤복지재단	향상행복한센터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40	031-8009-0823 031-8009-0824
22	용인시	개인	두나미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19, 죽전메디뷰 601호	031-265-9442
23	하남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	031-794-2266 031-794-2261
24	하남시	하울회	하늘아래주간보호시설(하남)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507호	070-8802-4404 0504-240-4404
25	하남시	하남교회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031-796-0455 031-796-0440

다 수어통역센터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광주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지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	광주시 행정타운로 6-5, 4층(송정동, 태종빌딩)	031-768-3293 031-768-3294
2	성남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성남시지회	성남시 수어통역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306호 (수진동, 제일프라자)	031-747-8572 031-748-2737
3	용인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용인시지회	용인시 수어통역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48 3층	031-337-0991 031-337-0995
4	하남시	사)한국농아인협회	하남시 수어통역센터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 2층	031-791-5513 031-791-5514

라 생활이동지원센터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광주시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시지회	광주시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29	031-765-4598 031-765-4569
2	성남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회	성남시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307호	031-749-1444 031-732-5762
3	용인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76, 종합운동장 내 19호	031-338-2232 031-338-2215
4	하남시	사)하남시각장애인연합회	하남시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031-791-4733 031-791-4739

마 점자도서관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분당우리복지재단	한마음점자도서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031-725-9570 031-725-9510

바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일련번호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용인시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 5-14	031-333-7275 031-333-7257
2	용인시	개인	예지원 가족발달연구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6-53	031-322-8485 031-335-8485
3	용인시	개인	이화자람 아동발달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58-12	031-283-5242 031-283-5242
4	용인시	개인	그린나래 발달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2호	031-679-0297
5	용인시	사)용인CYA 부설 마음드림 심리상담센터	마음드림 심리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8, 우성메디피아 301호 / 501호	031-286-4231 031-286-4237

04 성남권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가 양로시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85	031-768-0064 031-768-0814
2	광주시	재단법인	프란치스꼬의집	광주시 고불로211번길29	031-766-3062 031-766-3061
3	성남시	개인	호크마하우스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40	031-723-9560
4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삼성노블카운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031-208-8229 031-208-8239
5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경로원	하남시 안터로 55-1	031-792-2155 031-792-9365

나 노인공동생활가정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광주시	개인	오포시온의집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47번길 21-19 104동401호	031-8022-7881 031-8022-7880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인보의집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49	031-751-1937 031-757-4771
3	용인시	재단법인	영보기도의 집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512	031-333-7192 031-334-6252

다 노인복지주택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주식회사	서울시니어스타워(주)분당본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47	031-738-9900 031-712-5847
2	성남시	주식회사	정원속궁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12(정자3동)	031-782-2726 031-7822601
3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 아리움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6	031-721-0723 031-753-0723
4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엔젤아크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6번길 20	031-747-1004 031-757-2007
5	성남시	주식회사	더 헤리티지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031-718-0488 031-719-0488
6	용인시	주식회사	스프링카운티자이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3	031-8067-6017 031-8067-6018
7	하남시	주식회사	블루밍 더클래식	하남시 하남대로 770(신장동)	031-796-8753

05 성남권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가 노인요양시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정성노인의집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146 (석운동)	031-705-3973 031-708-5914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YWCA 은학의 집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41 (야탑동)	031-707-8790 031-704-4626
3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석운노인 전문요양원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133 (석운동)	031-709-2340 031-709-2380
4	성남시	개인	더힐링요양원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16번길 10 (분당동)	031-703-1197 031-781-4316
5	성남시	개인	메디케어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48 (구미동, 오성프라자 5층)	031-719-9949 031-713-9919
6	성남시	주식회사	분당메디케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8 8층 (정자동, 백궁프라자2차)	031-711-9959 031-711-9989
7	성남시	개인	성남 천상의집 1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3 201호 (이매동,오성프라자)	031-709-4992 031-629-6846
8	성남시	개인	성남 천상의집 2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3 (이매동, 오성프라자 301,302,401,404~406)	031-703-4992 031-629-6846
9	성남시	개인	정자메디 케어요양원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8 6층601-604호 (정자동)	031-719-9930 031-711-9957
10	성남시	개인	파크뷰실버홈	성남시 분당구 이매1동[이매동] 146-2번지 중일빌딩 2층	031-702-5407 031-709-5408
11	성남시	의료법인	에이치요양원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수내동, 다운타운빌딩 1101호)	070-4687-0548 070-8677-5975
12	성남시	개인	고운손요양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24 4층 (구미동, 구미동,굿모닝프라자1)	031-714-5047 031-713-5048
13	성남시	주식회사	헤리티지요양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금곡동)	031-8022-0160 031-8022-0200
14	성남시	주식회사	실버릿지판교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80번길 7 (사송동)	031-723-5814 031-723-5816
15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인보의집 소규모요양시설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49 (수진동)	031-751-1937 031-757-4771
16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자광원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 40 (복정동)	031-759-5320 031-759-4209
17	성남시	개인	성남요양원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0 (태평동)	031-722-1155 031-722-1154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8	성남시	개인	양지실버빌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31 (신흥동)	031-733-4080 031-743-8040
19	성남시	개인	성모실버홈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26번길 19 (수진동)	031-721-7772 031-721-7797
20	성남시	개인	로뎀나무 요양원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08-1 (태평동, 혜성빌딩 4층)	-
2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스카이빌요양원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6 (수진동)	031-750-6098 031-721-6066
22	성남시	개인	가천효요양원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4 4층 (태평동)	031-757-7600 031-757-7601
23	성남시	주식회사	위례보아스 요양원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7층 (창곡동)	031-921-9920 031-721-9925
24	성남시	개인	시온의집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9번길 22 (상대원동)	031-734-5401 031-735-5401
25	성남시	주식회사	순효노인요양원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94 (성남동, 정빌딩)	031-754-5008,9 031-754-6008
26	성남시	의료법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 (상대원동)	031-739-3000 031-739-3900
27	성남시	개인	늘푸른요양원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1 4층,5층 (금광동)	031-731-7508 031-731-7509
28	성남시	개인	베스트요양원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33 (도촌동, 601,401,402호 (세일프라자))	031-755-9909 031-755-9959
29	성남시	개인	성남은빛요양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번길 28 5,6,7층 (상대원동)	031-743-2527 031-744-2527
30	성남시	개인	효사랑요양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20 (하대원동)	031-751-6100 031-751-6111
31	성남시	개인	파드마 노인전문요양원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73번길 6 (성남동)	031-752-3885 031-752-3887
32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 소규모요양원	하남시 안터로 29-16 (풍산동)	031-793-9369 031-792-9367
33	하남시	개인	오륜 너싱홈	하남시 감일로15번길 96 (감일동)	02-430-5549 02-430-5512
34	하남시	개인	효덕 노인전문요양원	하남시 하남대로195번길 10 (상산곡동)	031-796-8700 031-796-7900
35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 노인전문요양원	하남시 안터로 55 (풍산동)	031-791-3729 031-791-3745
36	하남시	개인	경복궁 노인전문요양원	하남시 하남대로 218 (상산곡동)	031-795-6005 031-795-6088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37	하남시	개인	노인전문요양원 효덕	하남시 하남대로195번길 8 (상산곡동)	031-796-7999 031-796-7900
38	하남시	개인	서울시니어스타워하남	하남시 덕풍공원로 41 (덕풍동)	031-793-2662 031-795-2621
39	하남시	개인	언약사랑나눔 요양원	하남시 초이로80번길 41 (초이동)	02-471-2002 02-441-7572
40	하남시	개인	해오름요양센터	하남시 검단로 39 (하산곡동)	031-791-0032 031-794-9403
41	하남시	개인	사랑노인 전문요양원	하남시 초일로105번길 72 (초일동)	031-791-3114 031-795-3114
42	하남시	주식회사	아모시니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97 2층,3층 (풍산동)	031-793-8501 031-793-8502
43	하남시	개인	하남관심요양원	하남시 덕풍동로 111-10 A동305~307호 (덕풍동)	031-791-0186 031-791-0186
44	하남시	개인	청담하늘채 요양원	하남시 산곡동로32번길 57 (하산곡동)	031-795-7919 031-791-7919
45	하남시	개인	으뜸요양원	하남시 검단산로 36 (하산곡동)	031-793-8899 031-793-8900
46	용인시	개인	무지개너싱홈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7 801호 (보정동, 엘림프라자)	031-889-9989 031-889-9987
47	용인시	개인	너싱홈예원(구성)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2 (청덕동, 대림프라자 3~5층)	031-286-6772 031-286-6229
48	용인시	개인	동백어르신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73 (중동, 훼미리프라자II 4층)	031-283-3877 031-283-3878
49	용인시	주식회사	동백 사랑마루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중동, 지젤레이크타워 5층)	031-286-3237 031-286-3238
50	용인시	개인	사랑방 노인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7 6층 (중동, MD타운)	031-8005-5858 031-8005-5301
51	용인시	개인	강남실버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18-20 (보정동)	031-276-6969 031-276-0014
52	용인시	주식회사	(주)무지개실버케어스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99 (언남동, 지하1층,2~4층)	031-283-8411 031-283-8416
53	용인시	주식회사	(주)원하트 노인전문 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43번길 11-28 (보정동)	031-265-8899 031-262-8841
54	용인시	개인	노블실버홈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64 (구갈동)	031-274-5470 031-548-2331
55	용인시	개인	새희망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41 6층층 (영덕동, 흥덕웰스프라자)	031-211-7776 031-211-7726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56	용인시	개인	죽전엘림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 A동417호 (보정동, 죽전누리에뜰)	031-897-0002 031-897-0029
57	용인시	개인	꽃향기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71번길 55 (청덕동)	031-283-4321 031-283-8765
58	용인시	개인	흥덕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23 901호 (영덕동, 하워드힐하우스)	031-286-7021 031-213-7022
59	용인시	개인	도손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5-5 (보라동, 보라메가타운 301호)	031-286-0616 031-286-0617
60	용인시	개인	연세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39 A동4층 (중동, 라비스타상가)	031-283-5011 031-283-6011
61	용인시	개인	사랑나무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0 3,4,5층 (청덕동, 주공프라자)	031-287-0075 031-287-1630
62	용인시	개인	구성노인 전문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8 (청덕동)	031-287-6699 031-287-6658
63	용인시	개인	동백마더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03 601호 (중동, 미주타운)	031-283-8500 031-283-8600
64	용인시	개인	효미인 실버케어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9번길 3 204호 (마북동, 리딩프라자)	031-287-7577 031-287-7595
65	용인시	개인	어르신사랑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D동503호 (영덕동)	031-214-7469 031-214-7467
66	용인시	개인	요양원 헤세드하우스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27번길 100-16 (중동)	031-274-5600 031-282-2500
67	용인시	개인	마더링케어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6 6층601호 (구갈동, 그랜드프라자)	031-281-0100 031-275-0123
68	용인시	개인	로얄튼너싱홈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4-2 (동백동, 로얄튼너싱홈)	031-285-2850 031-287-2873
69	용인시	개인	함춘너싱홈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279번길 3-36 (청덕동)	031-284-8479 031-284-8479
70	용인시	개인	다온실버케어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501호 (구갈동, 아카데미프라자)	031-281-7771 031-281-7723
71	용인시	개인	풍산예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12-2 (공세동)	031-274-8300 031-284-7201
72	용인시	개인	하이파이브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2-3 (동백동)	031-8067-7701 031-8067-7703
73	용인시	개인	사랑방호수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3 7,8층 (중동)	031-8005-5688 031-8005-5689
74	용인시	개인	빛사랑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54 (마북동)	031-281-1101 031-281-1102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75	용인시	개인	A+해피누리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5-1 (공세동)	031-275-7774 031-275-7793
76	용인시	개인	동수원노인전문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7, 6,7층 (영덕동, 세림프라자)	031-212-2929 031-212-2924
77	용인시	개인	평강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56 (보라동)	031-274-1211 031-274-7027
78	용인시	개인	행복한동백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4-22 (동백동)	031-282-2300 031-283-0700
79	용인시	개인	그레이스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구성2로23번길 19 (청덕동)	031-287-7764 031-287-7765
80	용인시	개인	행복나무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구성2로23번길 21 (청덕동)	031-283-3333 031-286-8833
81	용인시	개인	동백소중한 사람들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4-20 (동백동)	031-275-2500 031-275-1700
82	용인시	개인	송은요양원(죽전점)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5 (죽전동, 명지프라자 2, 3층)	031-896-8881~2 031-896-8885
83	용인시	개인	성은 실버케어스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114 (죽전동)	031-889-9795 031-889-9794
84	용인시	개인	가족이 행복한 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 (동천동)	031-265-0625 031-265-0627
85	용인시	개인	너싱홈 한솔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7 501호,701호 (죽전동)	031-262-2584 031-261-2584
86	용인시	기타	해피라이프 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3-2 (신봉동, 아트프라자 201, 301호)	031-272-1024 031-272-0547
87	용인시	개인	어르신요양센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90번길 25 (풍덕천동, 신건프라자 4,5층)	031-276-7500 031-276-5701
88	용인시	개인	연화노인 간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132 (풍덕천동)	031-265-2335 031-262-5090
89	용인시	개인	서수지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도마치로 89번길 4-18 (성복동)	031-265-1188 031-261-2848
90	용인시	재단법인	수지성모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163번길 17 (동천동)	031-263-7745 031-265-1903
91	용인시	개인	봄날실버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9 (죽전동, 양지프라자 5,6층)	031-261-6699 031-262-5151
92	용인시	개인	죽전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8 6층 (죽전동, 센타프라자)	031-889-7000 031-898-0100
93	용인시	개인	상현노인전문 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90 (상현동)	031-896-1507 031-896-1508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94	용인시	개인	수지제일노인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87 307호, 311호 (성복동, 수지제일아이조움)	031-272-6622 031-263-8181
95	용인시	개인	수지행복마지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115 201호 (상현동, 상현프라자)	031-896-2077 031-896-2088
96	용인시	개인	아름다운실버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60 5층 (죽전동)	031-897-3237 031-897-3238
97	용인시	개인	명품우리들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95 7층 (죽전동, 현대프라자)	031-272-3900 031-262-4900
98	용인시	개인	성은실버케어스 2관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73 (죽전동)	031-263-9795 031-263-9791
99	용인시	개인	수지열린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27 (상현동)	031-272-8580 031-272-8587
100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441 (양지면)	031-334-9090 031-339-9035
101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용인노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로 159 (백암면)	031-334-3677 031-333-9838
102	용인시	주식회사	샤인빌시니어스(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235번길 140 (양지면)	031-322-0028 031-322-3733
103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76-27 (역북동)	031-333-2266 031-333-3742
104	용인시	개인	제일너싱홈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자로181번길 15 (이동읍)	031-323-3007 031-323-5113
105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인보마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42 (포곡읍)	031-339-9141 031-339-9143
106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집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52 (포곡읍)	031-323-6052 031-323-6054
107	용인시	개인	작은손길공동체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84번길 49 (원삼면)	031-321-7771 031-334-1009
108	용인시	개인	천상의집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88번길 92 (백암면)	031-336-4993 031-629-6846
109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용인효사랑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 31 (백암면)	031-322-1952 031-322-1956
110	용인시	개인	양지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99번길 5-14 (모현면)	031-334-6084 031-334-6083
111	용인시	개인	아리실복지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407 (남사면)	031-332-7521 031-332-7421
112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용인노인전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로 172 (백암면)	031-334-3577 031-334-0877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13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한로 58 (양지면)	031-335-9911 031-335-9910
114	용인시	종교법인	은이너싱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 219-34 (양지면)	031-334-6258 031-339-6258
115	용인시	개인	하나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55-8 (유방동)	031-323-6538 031-321-8191
116	용인시	개인	용인효민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74 4층 (유방동)	031-339-5831 031-339-5832
117	용인시	개인	용인삼성 노인전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62 901호 (김량장동, 위너스파라자)	031-336-6555 031-336-2555
118	용인시	개인	아름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98 (남동)	031-322-0665 031-336-0665
119	용인시	개인	예원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1876번길 26 (양지면)	031-335-6286 031-335-6288
120	용인시	개인	효도나라 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2 4층 (유방동, 인정레포츠센터)	031-339-9113 031-336-9116
121	용인시	개인	힐링하우스 실버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새래로 146 (모현읍)	031-333-9100 031-333-1213
122	용인시	개인	(주)고은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41번길 12 (남동)	031-339-0080 031-339-6868
123	용인시	개인	파인트리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황새울로 133번길 1-2 (백암면)	031-322-4179 031-322-4178
124	용인시	개인	좋은이웃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주로236번길 38-1 (양지면)	031-323-0398 031-323-0470
125	용인시	개인	용인종합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2 3층 (유방동)	031-321-2662 031-321-2663
126	용인시	개인	상아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21 (유방동)	031-334-1357 031-336-1357
127	용인시	개인	고림풍산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152번길 28-53 (고림동)	031-281-2345 031-336-1600
128	용인시	개인	백만송이실버케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반정로 48 (양지면)	031-332-3117 031-332-3116
129	용인시	개인	자연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587번길 45 (이동읍)	031-339-0093 031-339-0193
130	용인시	개인	해마루실버케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 801번길 26-64 (백암면)	031-334-6070 031-334-7
131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삼성노블카운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하갈동)	031-208-8900 031-208-8909
132	용인시	개인	경기산들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74번길 11 1층 (상하동)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33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묵리 464)	031-323-5705 031-323-5707
134	광주시	주식회사	아이너싱홈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 1289 (퇴촌면)	031-766-0868 031-766-0869
135	광주시	주식회사	너싱홈그린힐	광주시 탄벌길 108 (탄벌동)	031-768-5226 031-768-5230
136	광주시	개인	한마음너싱홈	광주시 경안로 143 (경안동)	031-798-0081 031-798-0091
137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작은안나의집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882-9 (도척면)	031-764-9751 031-764-9750
138	광주시	주식회사	오크힐스 광주요양원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94-60 (오포읍)	031-765-0091 031-765-0053
139	광주시	개인	정훈노인전문요양원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5-5 (곤지암읍)	031-768-4119 031-768-4078
140	광주시	개인	수산나요양원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 71 (초월읍)	031-798-9988 031-798-9989
141	광주시	개인	너싱홈 해원	광주시 초월읍 하오개길 71번길 42-29 (초월읍)	031-797-8895 031-797-8903
142	광주시	개인	위더스요양원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74-57 (초월읍)	031-798-5800 031-761-8630
143	광주시	개인	동인요양원	광주시 목동길46번길 28 (목동)	031-765-5510 031-765-5517
144	광주시	개인	유림노인전문요양원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57-13 (퇴촌면)	031-761-5100 031-761-5140
145	광주시	개인	참사랑너싱홈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11번길 37 (오포읍)	031-711-3997 031-711-3959
146	광주시	주식회사	로뎀요양원	광주시 광남안로 325 (목동)	031-765-8893 031-765-7877
147	광주시	개인	로이스요양원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103-7 (오포읍)	031-764-2566 031-764-2568
148	광주시	개인	남서울너싱홈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324-15 (오포읍)	031-726-9195 031-726-9196
149	광주시	개인	백향목요양원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63-36 (곤지암읍)	031-766-2900 031-766-2999
150	광주시	개인	효성너싱홈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749-5 (퇴촌면)	031-767-1193 031-767-9901
151	광주시	개인	샤론요양원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66(곤지암읍)	031-798-6277 0504-370-1871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52	광주시	개인	효람요양원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1번길 116 (곤지암읍)	031-766-0118 0504-433-7847
153	광주시	개인	천수원요양원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16-10 (퇴촌면)	031-766-7774 031-766-7726
154	광주시	주식회사	행복한요양원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38-6 (오포읍)	031-713-8330 031-713-8331
155	광주시	개인	요양원실버브릿지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51 4-6층 (곤지암읍)	031-798-9111 031-798-9919
156	광주시	개인	소망실버하우스	광주시 고불로186번길 28-11 (태전동)	031-767-2191 070-4253-9191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분당 참사랑 실버홈(1호점)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 (야탑동, 덕인빌딩201호)	031-781-7781 031-781-9278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분당 참사랑 실버홈(2호점)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 (야탑동, 덕인빌딩 201)	031-781-7781 031-781-9278
3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분당 참사랑 실버홈(3호점)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 (야탑동)	031-781-7781 031-781-9278
4	성남시	주식회사	송은 요양원 2호 (분당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610번길 11 2층층 (야탑동)	031-707-6581 031-707-6583
5	성남시	주식회사	메디케어 2호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48 (구미동, 오성프라자 406호)	031-719-9949 031-713-9919
6	성남시	개인	성남어르신 요양센터1호점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4 4층 (수진동)	031-722-6033 031-722-6032
7	성남시	개인	성남어르신 요양센터2호점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4 4층 (수진동)	-
8	성남시	개인	수진실버빌2호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 6층601호 (신흥동, 에드모스)	-
9	성남시	개인	선진요양원 1호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9 (성남동, 4층)	-
10	성남시	개인	벧엘요양센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1 3층 (금광동)	031-722-1020 031-722-1050
11	성남시	개인	한마음실버빌 1호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6 (금광동)	-
12	성남시	개인	한마음실버빌 2호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6 (금광동)	-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3	성남시	개인	송은요양원 도촌점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1 6층 (도촌동, 씨엔프라자)	-
14	성남시	개인	사랑돌봄 실버케어스1호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96 (성남동)	-
15	성남시	개인	사랑돌봄 실버케어스2호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96 5층 (성남동)	-
16	하남시	개인	낮은소리의집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33 (감북동)	02-576-3580 02-578-3587
17	하남시	개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효재너싱홈	하남시 하남대로 214-29 (상산곡동)	031-795-9788 031-795-9785
18	하남시	개인	하남효요양원	하남시 검단산로 24 1층 (하산곡동)	031-795-4341 031-795-4342
19	하남시	개인	진요양원 보배진점	하남시 하남대로 834 4층 (덕풍동)	-
20	하남시	개인	진요양원참진점	하남시 하남대로 834 4층 (덕풍동)	-
21	용인시	개인	남부효요양원 (희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62 304호 (마북동, 마북프라자)	031-284-9491 031-284-8882
22	용인시	개인	남부효요양원 (화평)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62 303호 (마북동)	031-284-9491 031-284-8882
23	용인시	개인	우리어르신 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보정동, 현대프라자)	031-263-8877 031-263-8806
24	용인시	개인	노인공동생활가정 가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84번길 27-8 (신갈동)	031-283-2251 031-283-2240
25	용인시	개인	우리기쁨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01 301호302호 (영덕동, 스타프라자)	031-211-3391 031-211-3395
26	용인시	개인	기흥해피요양원 1호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10층1001호 (구갈동, 소공빌딩)	031-285-1977 031-285-1904
27	용인시	개인	기흥해피요양원 2호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10층1001호 (구갈동, 소공빌딩)	032-285-1977 031-285-1904
28	용인시	개인	한가족사랑 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9층 (구갈동, 소공빌딩)	031-285-0056 031-283-8070
29	용인시	개인	한가족사랑 요양센터(공생)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9층 (구갈동, 소공빌딩)	031-285-0056 031-283-8070
30	용인시	개인	장현숙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3 3층 (신갈동)	031-281-7487 031-281-7477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31	용인시	개인	늘편한 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4층 403호 (구갈동, 남영프라자)	031-286-3620 031-281-3620
32	용인시	사단법인	헤아림 요양원(가온길)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41 3층B호 (마북동)	031-302-3385 031-302-3384
33	용인시	사단법인	헤아림 요양원(고운길)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41 3층A호 (마북동)	031-302-3385 031-302-3384
34	용인시	개인	한보라요양원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7 3층 (보라동)	031-275-9000 031-275-9997
35	용인시	개인	보림요양원(믿음)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동천동, 윤창빌딩 4층)	031-263-8600 031-263-8906
36	용인시	개인	보림요양원(소망)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4층 (동천동, 윤창빌딩)	031-263-8600 031-263-8906
37	용인시	개인	보림요양원(사랑)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4층 (동천동, 윤창빌딩)	031-263-8600 031-263-8906
38	용인시	개인	실로암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62 (신봉동, LG프라자 501호, 502호)	031-262-2988 031-261-1972
39	용인시	개인	수지실버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3-2 304호 (신봉동)	031-272-0047 031-265-0678
40	용인시	개인	장현숙요양센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수지골드프라자 116호(3층) (성복동)	031-265-3214 031-898-0696
41	용인시	개인	성모어르신 요양센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27번길 26 (고기동)	031-262-5827 031-262-5828
42	용인시	개인	송은요양원 (죽전점)2관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5 (죽전동, 명지프라자 2, 3층)	031-896-8807 031-896-8808
43	용인시	개인	노인요양원 희망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7 6층 (죽전동, 한솔프라자)	031-889-6770 031-889-6768
44	용인시	개인	노인요양원 희망2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7 6층 (죽전동, 한솔프라자)	031-889-6770 031-889-6768
45	용인시	개인	더사랑 효민요양센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95 5층 (죽전동, 현대프라자)	031-266-1774 031-266-1775
46	용인시	개인	로뎀의 집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514-13 (호동)	031-334-1486 031-338-1486
47	용인시	개인	효봉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 108 (원삼면)	031-339-5013 031-339-1849
48	용인시	개인	용인해바라기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439번길 32 (양지면)	031-323-4061 031-323-4061
49	용인시	개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지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58-22 (원삼면)	031-339-8655 031-339-8656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50	용인시	개인	용인평안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 12 (이동읍)	031-339-6234 031-336-5234
51	용인시	개인	가람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해실로 67-6 (해곡동)	031-338-8238 031-322-0966
52	용인시	개인	신경옥 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22 2층 (마평동, 성범프라자)	031-336-7886 031-338-7887
53	용인시	개인	솔향기요양원 A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275번길 28 (이동읍)	031-526-2079 031-322-4335
54	용인시	개인	솔향기요양원 B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275번길 26 (이동읍)	031-526-2079 031-322-4335
55	용인시	개인	성복 그레이스 요양원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249번길 21 (성복동)	-
56	광주시	개인	쉴만한물가	광주시 초월읍 양지길 28-24 (초월읍)	031-797-8967 031-794-8966
57	광주시	개인	글로리아요양원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190번길 38-8 (곤지암읍)	031-798-8026 031-798-8028
58	광주시	개인	마리아의작은집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132-4 (초월읍)	031-768-3080 031-762-3080
59	광주시	개인	효심요양원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6 2층 (초월읍)	031-766-7320 031-766-7610
60	광주시	개인	평강요양원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6 3층 (초월읍)	031-766-7661 031-766-7678
61	광주시	개인	은혜의집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62 1층 (오포읍)	031-726-0767 031-712-5402

06 성남권 노인여가복지시설

가 노인복지관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재단법인	수정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28(산성동)	031-731-3393 031-741-4519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수정중앙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38(복정동)	031-752-3366 031-758-5546
3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중원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길 51(성남동)	031-751-7540 031-751-7448
4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황송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2(상대원동)	031-731-5520 031-731-5514
5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50(정자동)	031-785-9200 031-785-9292
6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9(백현동)	031-620-2810 031-703-5108
7	하남시	기타	하남시노인복지관	하남시 서하남로 488	031-790-5896 031-790-6219
8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처인노인복지관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324-9303 ~5 031-324-9306
9	용인시	학교법인	기흥노인복지관	기흥구 산양로 71	031-284-8852 031-284-9888
10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수지노인복지관	수지구 포은대로 435	031-270-0000 02-270-0001
11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광주시노인복지관	광주시 파발로 202	031-766-9129 031-766-9266

*경로당 및 노인교실 생략

07 성남권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가 방문요양서비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사단법인	다살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13번길 4 401호 (정자동)	031-713-9001 031-713-9052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YWCA은학의집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41 (야탑동)	031-707-8790 031-704-4626
3	성남시	개인	분당 재가노인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수내동, 양지마을 601동 청구상가 171호, 172호)	031-712-6905 031-602-6905
4	성남시	주식회사	웰더스재활 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39 5층 (분당동, 한일빌딩)	1566-6597 031-707-6597
5	성남시	개인	백천사 방문요양센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상가동204호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아파트)	031-707-9368 031-717-9368
6	성남시	개인	분당"힘찬" 실버케어 재가복지센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8 211호 (야탑동, 우당프라자)	031-706-6007 031-706-6007
7	성남시	개인	선한 재가 방문요양센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76번길 31 604동215-2호 (서현동, 효자촌주상복합)	031-701-0755 031-702-0755
8	성남시	개인	'(A)비지팅엔젤스 분당방문요양지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7 205-1호 (야탑동, 숭문상가)	031-708-5667 031-708-5668
9	성남시	개인	금성노인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1 지층1호 (서현동, 분당우성프라자)	031-709-1955 0504-327-2796
10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인보의집 재가복지지원센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49 (수진동)	031-751-1937 031-757-4771
1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위례원마을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902,4~8, 12호 (창곡동, 이너매스우남)	031-722-2022 031-778-6441
1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태평2동 재가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11번길 3 2~3층 (태평동, 태평2동 복지회관)	031-722-5787 031-756-2018
13	성남시	개인	(A)비지팅엔젤스 성남수정 방문요양지점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6번길 12 1층 (신흥동)	031-607-5500 031-607-6600
14	성남시	개인	블레스 재가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8 201호 (태평동, 삼능스페이스향)	031-751-3999 031-751-3998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5	성남시	주식회사	(주)실버스쿨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9 7층 (신흥동)	031-1670-3945 070-4762-0513
16	성남시	개인	THE사랑 재가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0번길 7 1층 (태평동)	02-501-6078 031-602-6700
17	성남시	주식회사	"CHA"차실버케어 5호점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37 602호 (신흥동)	031-778-8247 031-778-7679
18	성남시	개인	후원 재가방문요양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69번길 11 1층 (태평동)	031-756-2334 031-756-2335
19	성남시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5번길 9 4층 (단대동)	031-745-5119 031-745-5120
20	성남시	개인	가나재가센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1 4층 (수진동)	031-722-0066 031-722-0076
21	성남시	개인	위례노인 재가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913호 (창곡동)	031-752-2088 031-752-2081
2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성남서로사랑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1 4층404호 (도촌동, 씨엔씨프라자)	031-744-9544 031-778-6544
23	성남시	사단법인	성남 재가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80번길 10 (상대원동)	031-747-2886 031-731-0371
24	성남시	재단법인	YMCA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57번길 26 (은행동)	031-736-4176 031-712-9590
25	성남시	개인	브니엘 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56-6 3층 (하대원동)	031-752-3969 031-754-3969
26	성남시	사단법인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2호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206-1호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031-735-9605 031-735-9606
27	성남시	개인	다원재가센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41번길 24-1 (상대원동)	031-747-7434 031-747-7435
28	하남시	개인	낮은소리의 집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33 (감북동)	02-576-3580 02-578-3587
29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소규모요양원	하남시 안터로 29-16 (풍산동)	031-793-9369 031-792-9367
30	하남시	개인	검단 재가노인복지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67 (창우동)	031-796-3263 031-796-3264
31	하남시	개인	+하남 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604호 (덕풍동, KN몰)	031-796-9400 031-796-9422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32	하남시	개인	하남세빛노인복지센터	하남시 신장1로21번길 9 102호 (신장동)	02-441-5005 050-4136-6326
33	하남시	개인	미사사랑어르신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덕풍북로 26-3 1층 (덕풍동)	031-794-9960 031-792-9960
34	하남시	개인	성은재가노인복지센터	하남시 신장로48번길 38 지층 (천현동)	070-4046-3214 0505-070-7323
35	하남시	개인	백세만세방문요양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34번길 90 501호 (풍산동)	031-791-7606 031-791-1031
36	하남시	개인	가온효복지센터	하남시 신평로 81-1 상가동203호 (덕풍동, 진모루현대아파트)	031-794-3104 031-794-3105
37	하남시	주식회사	아모시니어병설 재가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97 2~3층 (풍산동, 한강프라자2)	031-793-8501 031-793-8502
38	하남시	개인	참사랑주간보호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103-12 2층 (하산곡동)	031-791-5887 031-791-6887
39	하남시	개인	공감재가노인복지센터	하남시 하남대로861번안길 24 1층 (덕풍동)	031-792-0318 031-792-0317
40	하남시	개인	어부바시니어하남본점	하남시 미사강변대로226번안길 25 110호 (망월동, 디럭스프라자)	031-791-3459 031-791-3490
41	하남시	개인	"복덩이"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8 601~606호 (풍산동)	031-699-8853 031-699-8851
42	용인시	학교법인	루터대학교용인노인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82번길 20 (상갈동)	031-283-6336 031-283-1733
43	용인시	기타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0 2층 (마북동)	031-284-5678 031-283-9485
44	용인시	개인	사랑나무데이케어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0 103호, 201호 (청덕동)	031-287-0027 031-287-0086
45	용인시	개인	A+수피아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7 401호 (중동, MD타운)	031-282-9979 031-281-9979
46	용인시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용인도우누리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603호,604호 (중동, 씨티프라자)	031-8005-8033 031-8005-8020
47	용인시	개인	참나눔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1 502-1호 (구갈동, 삼성프라자)	031-693-7944 031-693-7945
48	용인시	개인	정담재활주야간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5-5 501호 (보라동, 보라메가타운)	031-286-7000 031-286-7737
49	용인시	개인	한가족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68번길 3 1층 (신갈동)	031-285-1480 031-284-1480
50	용인시	개인	다원재가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52 (마북동)	031-548-2277 031-548-2377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51	용인시	개인	늘푸른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8 202호 (보정동, 용인보정대림아파트상가)	031-261-7977 031-261-7978
52	용인시	개인	어울림 시니어홈케어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B동8층836호 (영덕동)	031-284-1314 031-284-1315
53	용인시	개인	효돌봄 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2번길 13-2 302호(상갈동)	070-7543-7417 070-7543-6722
54	용인시	개인	늘푸른 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1 6층606호 (보정동, 미래씨티)	031-265-5011 031-265-5022
55	용인시	개인	최고다 재가방문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16 309호 (공세동, 대주피오레상가)	031-7566-7569 031-7566-7569
56	용인시	개인	예닮 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 202호 (구갈동)	031-287-5752 031-287-5755
57	용인시	개인	고운마음 방문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7 403호 (보정동, 풍산프라자)	031-265-3666 031-265-7666
58	용인시	개인	효사랑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55 302호 (신갈동, 정훈빌딩)	031-8061-8515 031-8061-8516
59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0 404호 (죽전동, 단대프라자Ⅲ)	031-898-1425 070-4681-6556
60	용인시	개인	(One+)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75-10 지하1층 (동천동)	031-896-1477 031-896-1487
61	용인시	개인	153효 재가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5 C동307호 (상현동)	031-214-1530 031-216-1530
62	용인시	개인	가족사랑재활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55 3층 (죽전동, 유토피아)	031-897-7788 031-897-7797
63	용인시	개인	해와달 재가요양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7번길 5 2층 (풍덕천동)	031-264-3544 031-265-3543
64	용인시	개인	(A)비지팅엔젤스 용인수지풍덕천 방문요양지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0번길 19 404호 (풍덕천동)	031 261 9931 031 272 6769
65	용인시	개인	효나눔 재가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76 5층 502호 (죽전동, 죽전프라자)	031-264-4377 031-264-4378
66	용인시	개인	까미노 방문재가 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36 201-2호 (죽전동, 현대프라자)	031-262-0207 031-262-0207
67	용인시	기타	이동농협 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95 (이동읍)	031-336-4418 031-336-4411
68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인보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50 (포곡읍)	031-339-9146 031-339-9169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69	용인시	학교법인	온석대학원대학교 부설 온석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로 96번길 79 3층 (남사면, 중앙관)	031-332-3845~6 031-326-0847
70	용인시	개인	"하늘사이"재활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6 404,405호 (역북동, 파스텔시티)	031-334-1142 031-337-1142
71	용인시	개인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4 2층 (김량장동, 주석빌딩)	031-334-6868 031-334-6869
72	용인시	개인	건승재가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로 27-18 101동501호 (삼가동, 힐링하우스)	031-321-9981 0504-312-9981
73	용인시	개인	은천재가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366번길 8 5층 (모현읍, 정숙빌딩)	031-321-5245 0504-001-0129
74	용인시	개인	백세세상 재가방문 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46 3층 (마평동)	031-333-2874 031-333-2874
75	용인시	개인	A+섬김 방문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81 1층101호 (유방동)	031-333-9075 031-332-9075
76	용인시	개인	행복한 방문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48 (마평동)	031-336-2580 031-335-2581
77	용인시	개인	인우케어 재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29 (포곡읍)	031-339-9109 0504-243-7853
78	용인시	개인	더조은 재가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6번길 6 1층101호 (마평동)	031-338-2442 031-338-2552
79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광주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41-15 2층 (초월읍, 구관)	031-766-9615 031-522-0558
80	광주시	개인	가나방문요양센터	광주시 통미로16번길 11 1층 (송정동)	031-797-3555 031-766-3083
81	광주시	개인	경기재가요양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12 2층204호 (오포읍)	031-766-0755 031-766-0756
82	광주시	개인	꽃담 재가복지센터	광주시 문화로 105 2층 (경안동)	031-797-4303 031-798-4303
83	광주시	개인	참재가노인복지센터	광주시 초월읍 도곡안길 53-6 3층 (초월읍)	031-768-6366 031-766-6366
84	광주시	개인	효사랑가득재가복지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796 101호 (오포읍)	
85	광주시	개인	동행재가방문요양복지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27-35 202호 (오포읍, 미켈란)	070-7779-3899 0504-341-3799
86	광주시	개인	참사랑재가복지센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0 104호 (곤지암읍)	031-766-4129 031-767-4129
87	광주시	개인	큰사랑방문요양센터	광주시 통미로64번길 5 201호 (송정동)	031-699-8627 031-699-8637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YWCA은학의집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41 (야탑동)	031-707-8790 031-704-4626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한솔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정자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	031-8022-1155 031-8022-1199
3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판교봉은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9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031-620-2910 031-703-5108
4	성남시	기타	하얀마을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25번길 10 2층 (구미동, 하얀마을복지회관)	031-718-2780 031-718-2781
5	성남시	주식회사	웰더스재활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39 5층 (분당동, 한일빌딩)	1566-6597 031-707-6597
6	성남시	개인	분당사랑데이케어센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58 3층 (이매동, 대진빌딩)	031-702-7026 031-702-7028
7	성남시	개인	사랑더드림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39 2층 (야탑동)	031-717-5848 031-706-5848
8	성남시	개인	나비 데이케어센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3층 (야탑동, 한화빌딩)	031-702-1288 031-702-1289
9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위례원마을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902,4~8,12호 (창곡동, 이너매스우남)	031-722-2022 031-722-2028
10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수정노인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38 (복정동)	031-758-8282 031-758-2221
1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태평2동 재가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11번길 3 2~3층 (태평동, 태평2동 복지회관)	031-722-5787 031-756-2018
12	성남시	개인	위례예사랑 데이케어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2 304,305호 (창곡동, 아이플렉스)	031-759-3045 0303-3444-3045
13	성남시	주식회사	위례보아스 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7층 (창곡동, 우남이타워프라자)	031-721-9920 031-721-9925
14	성남시	개인	반디재활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502~506호 (창곡동)	031-755-5066 031-759-6660
15	성남시	개인	사랑드림 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 205~307호 (창곡동, 라크리움)	031-758-9295 031-758-9296
16	성남시	주식회사	(주)실버스쿨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9 7층 (신흥동)	031-1670-3945 070-4762-0513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7	성남시	개인	위례더행복데이케어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0 301~303호 (창곡동)	031-755-6030 050-42678129
18	성남시	사단법인	새날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25번길 44 (상대원동, 상대원1동복지회관)	031-747-3035 031-736-3035
19	성남시	사단법인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80번길 10 (상대원동)	031-747-7941 031-731-0371
20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굿패밀리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4 (상대원동)	031-745-7510 031-749-4638
2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중원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 (성남동)	031-751-7455 031-751-7448
2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2 (상대원동)	031-731-5564 031-731-5563
23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천사실버케어센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6번길 20 지하~2층 (하대원동)	031-747-1004 031-757-2007
24	성남시	개인	브니엘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56-6 3층 (하대원동)	031-752-3969 031-754-3969
25	하남시	개인	낮은소리의 집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33 (감북동)	02-576-3580 02-578-3587
26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소규모요양원	하남시 안터로 29-16 (풍산동)	031-793-9369 031-792-9367
27	하남시	개인	검단재가노인복지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67 (창우동)	031-796-3263 031-796-3264
28	하남시	개인	'+하남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604호 (덕풍동, KN몰)	031-796-9400 031-796-9422
29	하남시	개인	미사사랑어르신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덕풍북로 26-3 1층 (덕풍동)	031-794-9960 031-792-9960
30	하남시	개인	참사랑주간보호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103-12 2층 (하산곡동)	031-791-5887 031-791-6887
31	하남시	개인	"복덩이"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8 601~606호 (풍산동)	031-699-8853 031-699-8851
32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은빛사랑채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하남시 안터로 29-16 (풍산동)	031-793-9369 031-792-9367
33	하남시	개인	'+하남한마음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미사대로 590-7 3층 (덕풍동, 삼주빌딩)	031-796-2284 031-796-2296
34	하남시	개인	하남효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4 1층 (하산곡동)	031-795-4341 031-795-4342
35	하남시	개인	굿모닝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34번안길 11 5층 (풍산동, 스타프라자)	031-795-4394 031-793-4394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36	하남시	개인	(A+)하모니 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덕풍동로 113 2층 (덕풍동)	031-793-9945 031-793-9993
37	하남시	개인	"미사강변 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34번안길 16 5층 (풍산동, 이치프라자)	031-795-8588 031-795-8088
38	하남시	개인	효디딤돌 주야간보호센터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207호 (덕풍동, 리치플러스 하남센터)	031-796-4255 031-796-4255
39	용인시	학교법인	루터대학교용인 노인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82번길 20 (상갈동)	031-283-6336 031-283-1733
40	용인시	개인	사랑나무 데이케어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0 103호. 201호 (청덕동)	031-287-0027 031-287-0086
41	용인시	개인	어르신사랑주간보호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D동503호 (영덕동)	031-214-7468 031-214-7467
42	용인시	개인	무지개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99 (언남동)	031-8005-9950 031-8005-9970
43	용인시	개인	강남주.야간 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18-20 (보정동)	031-276-6969 031-276-0074
44	용인시	개인	한가족사랑 요양센터(주야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9층 (구갈동, 소공빌딩)	031-285-0056 031-283-8070
45	용인시	개인	어르신사랑요양센터 2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72번길 10 7층701호 (구갈동)	031-281-7469 031-281-7461
46	용인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효담 라이프케어흥덕 데이케어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A동4층 (영덕동, 401호,402호,403호,410호)	031-326-0660 031-326-0659
47	용인시	개인	A+수피아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7 401호 (중동, MD타운)	031-282-9979 031-281-9979
48	용인시	개인	정담재활 주야간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5-5 501호 (보라동, 보라메가타운)	031-286-7000 031-286-7737
49	용인시	개인	가온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79번길 2 405,406호 (영덕동, 가은프라자)	031-217-9987 031-217-9981
50	용인시	개인	반디재활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03 201호 (중동, 미주타운)	031-287-0066 031-287-0061
51	용인시	개인	사랑샘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96번길 11-28 1층 (신갈동)	031-287-4703 031-283-4704
52	용인시	개인	한보라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7 3층 (보라동)	031-275-9000 031-275-9997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53	용인시	개인	더사랑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79번길 24 203,204호 (영덕동, 아이비타워)	031-212-1199 031-211-2299
54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14번길 16 (신봉동, 신봉플라자 206~209호) 지구촌노인복지센터	031-264-9940 031-264-9941
55	용인시	개인	(One+)용인동천 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75-10 지하1층 (동천동)	031-896-1212 031-896-1487
56	용인시	개인	수지늘푸른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 2층204~205호 (신봉동)	031-261-1466 031-262-1466
57	용인시	개인	이화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87 C동313호 (성복동, 수지제일아이조움)	031-272-7090 031-276-7090
58	용인시	개인	굿데이케어센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99번길 3 7층 (동천동, 상록제일프라자)	031-276-1932 031-276-1933
59	용인시	개인	상현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90 (상현동)	031-896-1507 031-896-1508
60	용인시	개인	365송은노인학교 (주야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5 6,7층 (죽전동, 명지프라자)	031-896-8807 031-896-8808
61	용인시	개인	가족사랑재활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55 3층 (죽전동, 유토피아)	031-897-7788 031-897-7797
62	용인시	개인	수지어르신요양센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B122,B218호 (성복동)	031-264-0595 031-264-2480
63	용인시	개인	아들과딸주간보호 센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4 701호 (죽전동, 거풍프라자)	031-889-3324 0504-239-6649
64	용인시	개인	효민재가센터 주간보호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95 5층 (죽전동, 현대프라자)	031-266-1774 031-266-1775
65	용인시	개인	이팔청춘 어르신학교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86 2층	031-305-2888 031-305-2889
66	용인시	개인	The조은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6번길 2 205호 (죽전동, 그린피아)	031-262-9980 031-276-7890
67	용인시	개인	늘봄 주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3 5층505~508호 (죽전동, 건영타운)	031-266-1200 031-266-1205
68	용인시	기타	이동농협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95 (이동읍)	031-336-4418 031-336-4418
69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인보 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32번길 50 (포곡읍)	031-339-9146 031-339-9169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70	용인시	학교법인	온석대학원대학교 부설 온석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로 96번길 79 3층 (남사면, 중앙관)	031-332-3845,6 031-326-0847
71	용인시	개인	"하늘사이"재활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6 404,405호 (역북동, 파스텔시티)	031-334-1142 031-337-1142
72	용인시	개인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4 2층 (김량장동, 주석빌딩)	031-334-6868 031-334-6869
73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요한나 주간보호센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41-7 (초월읍)	031-766-9139 031-522-0558
74	광주시	개인	돌봄노인주간보호센터	광주시 순암로 256-9 중대동 (중대동)	031-768-0768 031-766-0765
75	광주시	개인	광주도척 주간보호센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699번길 30-43 (도척면)	031-764-9044 031-764-9010
76	광주시	개인	참재가 노인복지센터	광주시 초월읍 도곡안길 53-6 3층 (초월읍)	031-768-6366 031-766-6366

다 방문목욕서비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YWCA은학의집 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41 (야탑동)	031-707-8790 031-704-4626
2	성남시	개인	분당재가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수내동, 양지마을 601동 청구상가 171호, 172호)	031-712-6905 031-602-6905
3	성남시	주식회사	웰더스재활 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39 5층 (분당동, 한일빌딩)	1566-6597 031-707-6597
4	성남시	개인	백천사방문요양센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상가동 204호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아파트)	031-707-9368 031-717-9368
5	성남시	개인	분당"힘찬"실버케어 재가복지센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8 211호 (야탑동, 우당프라자)	031-706-6007 031-706-6007
6	성남시	개인	선한 재가 방문요양센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76번길 31 604동215-2호 (서현동, 효자촌주상복합)	031-701-0755 031-702-0755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7	성남시	개인	'(A)비지팅엔젤스 분당방문요양지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7 205-1호 (야탑동, 숭문상가)	031-708-5667 031-708-5668
8	성남시	개인	금성노인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1 지층1호 (서현동, 분당우성프라자)	031-709-1955 0504-327-2796
9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인보의집 재가복지지원센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49 (수진동)	031-751-1937 031-757-4771
10	성남시	개인	'(A)비지팅엔젤스 성남수정방문요양지점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6번길 12 1층 (신흥동)	031-722-5787 031-756-2018
11	성남시	주식회사	"CHA"차실버케어 5호점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37 602호 (신흥동)	031-778-8247 031-778-7679
12	성남시	개인	후원재가 방문요양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69번길 11 1층 (태평동)	031-756-2334 031-756-2335
13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성남서로사랑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1 4층404호 (도촌동, 씨엔씨프라자)	031-744-9544 031-778-6544
14	성남시	개인	브니엘 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56-6 3층 (하대원동)	031-752-3969 031-754-3969
15	성남시	개인	다원재가센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41번길 24-1 (상대원동)	031-747-7434 031-747-7435
16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소규모요양원	하남시 안터로 29-16 (풍산동)	031-793-9369 031-792-9367
17	하남시	개인	검단재가 노인복지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67 (창우동)	031-796-3263 031-796-3264
18	하남시	개인	+하남주야간 보호센터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604호 (덕풍동, KN몰)	031-796-9400 031-796-9422
19	하남시	개인	하남세빛 노인복지센터	하남시 신장1로21번길 9 102호 (신장동)	02-441-5005 050-4136-6326
20	하남시	개인	미사사랑어르신 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덕풍북로 26-3 1층 (덕풍동)	031-794-9960 031-792-9960
21	하남시	개인	가온효복지센터	하남시 신평로 81-1 상가동203호 (덕풍동, 진모루현대아파트)	031-794-3104 031-794-3105
22	하남시	주식회사	아모시니어 병설 재가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97 2~3층 (풍산동, 한강프라자2)	031-793-8501 031-793-8502
23	하남시	개인	공감재가 노인복지센터	하남시 하남대로861번안길 24 1층 (덕풍동)	031-792-0318 031-792-0317
24	하남시	개인	어부바시니어 하남본점	하남시 사강변대로226번안길 25 110호 (망월동, 디럭스프라자)	031-791-3459 031-791-3490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25	하남시	개인	"복덩이" 데이케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8 601~606호 (풍산동)	031-699-8853 031-699-8851
26	용인시	학교법인	루터대학교용인노인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82번길 20 (상갈동)	031-283-6336 031-283-1733
27	용인시	기타	구성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0 2층 (마북동)	031-284-5678 031-283-9485
28	용인시	개인	사랑나무데이케어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0 103호. 201호 (청덕동)	031-287-0027 031-287-0086
29	용인시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용인도우누리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603호,604호(중동, 씨티프라자)	031-8005-8033 031-8005-8020
30	용인시	개인	참나눔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1 502-1호(구갈동, 삼성프라자)	031-693-7944 031-693-7945
31	용인시	개인	정담재활 주야간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5-5 501호 (보라동, 보라메가타운)	031-286-7000 031-286-7737
32	용인시	개인	어울림시니어홈케어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B동8층836호 (영덕동)	031-284-1314 031-284-1315
33	용인시	개인	효돌봄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2번길 13-2 3층302호 (상갈동, 토우미주택)	070-7543-7417 070-7543-6722
34	용인시	개인	늘푸른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1 6층606호 (보정동, 미래씨티)	031-265-5011 031-265-5022
35	용인시	개인	최고다 재가방문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16 309호 (공세동, 대주피오레상가)	031-7566-7569 031-7566-7569
36	용인시	개인	예닮 재가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 202호 (구갈동)	031-287-5752 031-287-5755
37	용인시	개인	고운마음 방문요양센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7 403호 (보정동, 풍산프라자)	031-265-3666 031-265-7666
38	용인시	개인	효사랑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55 302호 (신갈동, 정훈빌딩)	031-8061-8515 031-8061-8516
39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0 404호 (죽전동, 단대프라자Ⅲ)	031-898-1425 070-4681-6556
40	용인시	개인	(One+)용인동천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75-10 지하1층 (동천동)	031-896-1477 031-896-1487
41	용인시	개인	153효재가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5 C동307호 (상현동)	031-214-1530 031-216-1530
42	용인시	개인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55 3층 (죽전동, 유토피아)	031-897-7788 031-897-7797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43	용인시	개인	해와달 재가요양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97번길 5 2층 (풍덕천동)	031-264-3544 031-265-3543
44	용인시	개인	(A)비지팅엔젤스 용인수지풍덕천 방문요양지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0번길 19 404호 (풍덕천동)	031 261 9931 031 272 6769
45	용인시	개인	효나눔재가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76 5층502호 (죽전동, 죽전프라자)	031-264-4377 031-264-4378
46	용인시	개인	까미노 방문재가 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36 201-2호 (죽전동, 현대프라자)	031-262-0207 031-262-0207
47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인보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32번길 50 (포곡읍)	031-339-9146 031-339-9169
48	용인시	학교법인	온석대학원대학교 부설 온석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로 96번길 79 3층 (남사면, 중앙관)	031-332-3845~6 031-326-0847
49	용인시	개인	"하늘사이"재활주간보호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6 404,405호 (역북동, 파스텔시티)	031-334-1142 031-337-1142
50	용인시	개인	건승재가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로 27-18 101동501호 (삼가동, 힐링하우스)	031-321-9981 0504-312-9981
51	용인시	개인	백세세상 재가방문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46 3층 (마평동)	031-333-2874 031-333-2874
52	용인시	개인	A+섬김방문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81 1층101호 (유방동)	031-333-9075 031-332-9075
53	용인시	개인	행복한방문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48 (마평동)	031-336-2580 031-335-2581
54	용인시	개인	더조은 재가센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576번길 6 1층101호 (마평동)	031-338-2442 031-338-2552
55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광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41-15 2층 (초월읍, 구관)	031-766-9615 031-522-0558
56	광주시	개인	경기재가요양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12 2층204호 (오포읍)	031-766-0755 031-766-0756
57	광주시	개인	꽃담 재가복지센터	광주시 문화로 105 2층 (경안동)	031-797-4303 031-798-4303
58	광주시	개인	효사랑가득재가복지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796 101호 (오포읍)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59	광주시	개인	동행재가방문요양복지센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27-35 202호 (오포읍, 미켈란)	070-7779-3899 0504-341-3799
60	광주시	개인	참사랑재가복지센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0 104호 (곤지암읍)	031-766-4129 031-767-4129
61	광주시	개인	큰사랑방문요양센터	광주시 통미로64번길 5 201호 (송정동)	031-699-8627 031-699-8637

라 방문간호서비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주식회사	웰더스재활주야간보호센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39 5층 (분당동, 한일빌딩)	1566-6597 031-707-6597
2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장기요양센터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76-27 (역북동, 대한간호사협회KNA연수원)	031-333-2266 031-333-3742
3	광주시	개인	서연 방문재활간호재가요양센터	광주시 광남안로 29-34 2층 (태전동)	070-7543-2487 070-7543-2487

마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개인	성남의료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17 1층 (상대원동)	031-743-1114 031-743-1113
2	하남시	주식회사	신일실버케어주식회사	하남시 감초로184번길 44 1층 (초이동)	02-6084-3300 02-6084-3302
3	용인시	주식회사	노블카운티 의료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1층 (하갈동, 리빙프라자)	031-241-2408 031-696-5137
4	용인시	개인	동백의료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1 비112호 (중동)	031-286-8824 031-286-8825
5	용인시	개인	루웰 복지용구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49 101-2호 (죽전동)	031-261-7779 031-262-7772
6	용인시	개인	고수련 의료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21번길 11 (이동읍, 상가동 201호)	031-334-0846 0504-279-0010

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련번호	시군구	운영주체	시설명	시설주소	전화번호(FAX)
1	성남시	사단법인	다살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3번길 4 401호 (정자동)	031-713-9001 031-713-9052
2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성남서로사랑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1 4층404호 (도촌동, 씨엔씨프라자)	031-744-9544 031-778-6544
3	성남시	사단법인	성남재가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80번길 10 (상대원동)	031-747-1886 031-731-0371
4	성남시	재단법인	YMCA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57번길 26 (은행동)	031-736-4176 031-712-9590
5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위례원마을 노인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902, 4~8,12호 (창곡동, 이너매스우남)	031-722-2022 031-778-6441
6	하남시	사회복지법인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하남시 안터로 55-1	031-794-9368 031-794-9367
7	용인시	학교법인	루터대학교용인 노인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82번길 20 (상갈동)	031-283-6336 031-283-1733
8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인보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32번길 50(포곡읍)	031-339-9146 031-339-9169
9	용인시	기타	이동농협 노인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95(이동읍)	031-336-4418 031-336-4411

성남권 재활의료 자원연계 및 협력방안 연구
발 행 처 : 성남시의료원
발 행 인 : 안태영
담당부서 : 공공의료정책연구팀
발 행 일 : 2022.1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홈페이지 : www.scmc.kr